

인권정보자료실

CPh1.22

# 國內外言論關係判例集

第 2 輯

國內外言論關係判例集

第 二 輯

言論  
委員會  
CPh1.22  
인권정보자료실

B3-10

Published by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15F., Korea Press Center Bldg., 25, 1-ga, Taepyung-ro, Joong-gu, Seoul, 100, Korea

言論仲裁委員會

國內外言論關係判例集

第 2 輯

言論仲裁委員會

## 發 刊 辭

言論이 存在하는 한 誤報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報道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迅速과 正確이란 두가지 개념이 現實的으로 일치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屬性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言論이 社会發展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事物이 正機能과 逆機能이란 兩面을 지니고 있듯이 언론도 또한 誤報라는 逆機能的인 面을 지니고 있습니다.

言論이 가지고 있는 誤報라는 이 逆機能的인 面은, 言論의 社会貢獻度가 크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些少한 일로 간과될 수도 있으나, 誤報에 의한 치명적인 被害로 社会生活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被害当事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報道에 의한 紛争은 法廷으로까지 飛火되어 言論自由와 個人에 對한 權益保護란 對立이 점차 深化되어가고 있는 것도 事實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年代 이전에는 이른바 筆禍事件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의미의 言論關係判例가 거의 없었습니다만 本 判例集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늘어나는 趨勢에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言論報道에 의한 紛争이 더욱 심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損害賠償判決때문에 言論社들이 保險会社를 設立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 3월 31일 設立된 言論仲裁委員會는 그동안 총 332건(1987년 2월 28일 현재)의 仲裁申請事件을 처리하면서 言論과 被害者간의 紛争을 仲裁하는 한편, 會報인 季刊「言論仲裁」를 통해서 法理論과 事例를 소개함으로써 건전한 言論報道의 暢達과 誤報에 의한 紛争의 極小化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當委員會는 지난 1982년에 「國內外言論關係判例集」 第1輯을 발간한 바 있으나, 그후 判例의 축적등 여러가지 事情으로 第2輯 發刊을 미루어 오다가 會報「言論仲裁」를 통해 소개된 資料들을 다시 정리해서 이번에 펴내게 되었습니다.

새로 發刊되는 「国内外言論關係判例集」第2輯은 国内判例 23件, 美国判例 5件, 英国判例 5件, 日本判例 13件 그리고 独逸判例 9件 등 총 55件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判例들을 담았으면 하는 것이 当委員會의 바램입니다만, 제한된 紙面때문에 国内判例의 于先収録이란 編輯原則에 의해 外国判例가 부족한 感이 없지 않습니다. 이 점은 다음에 발행되는 「第3輯」에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本判例集이 言論人들과 또 이分野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有用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言論의 逆機能的인 面의 矛盾을 予防 또는 啓導할 수 있는 契機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当委員會의 發展을 위해 判例를 번역해 주시는 서울高法 梁三承 判事, 金正述 判事, 서울刑事地法 權五坤 判事, 朴海成 判事の 勞苦에 이 紙面을 빌어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1987. 3.

言論仲裁委員會 委員長 鄭 喜 澤

## 차 례

### I. 國內判例

1. 공연히 事實을 摘示하여 他人의 名譽를 毀損하였으므로 벌금에 처한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출판물에 의한 名譽毀損事件) ..... 13
2.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이며, 訂正報道請求內容이 虛偽임이 명백하면 訂正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15
3. 事實的 主張의 報道로 被害를 입은 바 없으므로 棄却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19
4. 他기관的 公文을 記事化했다라도 公表한 新聞은 訂正報道請求의 대상이 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20
5. 原稿를 修正·削除해 게재한 경우는 訂正報道請求權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25
6. 他人의 社会的 評價를 低下시키는 公表는 精神的 苦痛을 慰藉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소송) ..... 29
7. 드라마 작가의 동의없이 비디오테이프를 複製販賣하는 行爲는 著作權侵害行爲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손해배상청구소송) ..... 33
8. 報道된 記事內容을 立証할 자료가 없으면 新聞은 訂正報道文을 掲載하라  
(서울고등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37
9. 社会生活上 하나의 單位로서 活動하고 있는 경우에는 訂正報道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41
10. 公共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眞實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없으므로 慰藉料를 支給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위자료청구소송) ..... 45
11. 他人의 名譽를 毀損해도 公共의 利益에 관한 것이고, 眞實이라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不法行爲가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소송) ..... 50
12. 報道事實을 인정할 證據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사건) ..... 53

13. 事件名과 請求趣旨가 다른 法院의 判決을 充實히 報道했다면 이에 대한 訂正報道를 要求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60
14. 著作權이 完全히 成立하기 전인 翻譯原稿라도 他人이 原作을 별도로 翻譯하면서 이를 無斷으로 利用하는 것은 違法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위자료청구소송) .....	64
15. 어머니의 名譽가 毀損된 경우, 子女들에 대하여도 名譽毀損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父母·子女관계라는 事實이 摘示되는 등의 相当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위자료청구소송) .....	68
16. 廣告는 訂正報道請求權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70
17. 廣告는 訂正報道請求權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73
18. 團體의 長인 個人에 關係된 報道的 訂正報道請求는 團體의 名義로 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75

## II. 獨逸判例

1. 競爭紙에 대한 不當한  비판 (聯邦大法院 1981. 10. 30자 判決 - IZR 93/79사건 -) .....	78
2. 사진의 不法使用에 대한 使用料 (Hamburg 高等法院, 1982. 4. 8자 判決 - 3U 36/81사건 -) .....	83
3. 訂正報道請求權을 行使하였다하여 取消請求權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Nürnberg/Fürth 地方法院 1983. 5. 26자 判決 - 4D 2547/83사건 -) .....	87
4. 誹謗禁止에 대한 違反 (Hamburg 高等法院 1983. 10. 10자 決定 - 3W 122/83사건 -) .....	89
5. 議會會議報道에 있어서 「眞實에 부합하는」 것의 意味 (Karlsruhe 高等法院 1984. 2. 3자 決定 - 13W 20/84사건 -) .....	91
6. 新聞에 대한 批判은 責任編輯人에 대한 批判으로 볼 수 있는가 (Frankfurt 高等法院 1984. 3. 29자 判決 - 16U 1/84사건 -) .....	93
7. 訴訟節次에 있어서의 訂正報道文의 變更의 可否 (Berlin 高等法院 1984. 5. 18자 判決	

- 9U 565/84사건 -) .....	94
8. 訂正報道文의 適法한 範圍 (Hamburg 高等法院 1984. 10. 25자 判決 - 3U 149/84사건 -) .....	97
9. 長官의 政策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는 訂正報道請求權이 認定되지 않아 (Köln 高等法院 1985. 7. 2자 判決 - 15U 127/85사건 -) .....	99

## III. 英國判例

1. 公判이 進行중인 사건에 관한 記事가 게재된 外國刊行物을 輸入·配布한 行위는 法廷侮辱罪가 成立되므로 罰金刑 [Regina v. Griffiths and Others. Ex parte Attorney-General (1957) 2 Q. B. 192] .....	103
2. 結婚生活의  비밀을 公表하는 行위는 中間금지강제명령의 申請對象이 된다 [Duchess of Argyll v. Duke of Argyll and Others. Chancery Division (1964)] .....	106
3. 本人이 同意하지 않은 記事의 1인칭  화법은 作者誤認이 되고 違法이다 [Moore v. News of The World Ltd., and Another (1972) 1 Q. B. 441] .....	111
4. 계류중인 民事訴訟에서, 新聞이 한쪽 당사자의  권리포기를  추구하는 것은 法廷侮辱罪 [Attorney-General v. Times Newspapers Ltd. House of Lords (1974)] .....	113
5. TV放送局은 「大衆에 放映되지 아니한 未公開의  필름」에 대한 法院의 提出命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Senior v. Holdsworth, Ex parte Independent Television News Ltd. (1975) 1 Q. B. 23] .....	116

## IV. 美國判例

1. 嫌疑者에 대한  취조광경의  텔레비전 放映은  명백한 言論裁判이다 (Rideau v. Louisiana 루이지애나州 大法院에 대한   과거환송) .....	123
2. 惡意 또는 害意를 가지고 名譽毀損을 한 경우 現實的 損害賠償외에   추가적으로 懲罰的 損害賠償을  받을 수 있다 (Peisner v. Detroit Free Press 미시간州 大法院에서 高等法院의 判決 認容) .....	125
3. 虛偽報道에 있어서 普通法上의 惡意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損害賠償을	

命한 事例  
(Cantrell v. Forest City Publishing Co.  
제 6 순회구 연방항소심법원에 대한 事件移送命令) ..... 130

4. 公的 人物의 名譽毀損訴訟에서 原告의 被告에 대한 現實的 惡意의 입증절차가  
適法한가의 여부문제  
(Herbert v. Lando et al.  
抗訴法院에 대한 과기환송) ..... 134

5. 뉴욕타임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公的 人物 요건을 좁게 인정한 사례  
(Ilya Wolstone v. Reader's Digest Association Inc., et al.  
연방대법원에서 사건과기명령) ..... 139

## V. 日本判例

1. 起訴事實의 一部有罪인 事件을 全部有罪인 것처럼 報道  
[神戸地方裁判所 昭和 25년 3월 28일 判決  
昭和 23년(ワ) 第33号 損害賠償請求事件] ..... 145

2. 淫亂의 概念 — 「선데이娛樂」事件 —  
[最高裁判所 昭和 26년 5월 10일 第1小法廷 判決  
昭和 26년(わ) 第172号 猥褻文書販売被告事件] ..... 147

3. 헤드라인에 의한 名譽毀損(I)  
[広島高等裁判所 昭和 29년 10월 14일 判決  
昭和 26년(ネ) 第199号 慰藉料並びに謝罪広告請求事件] ..... 150

4. 이름을 同音異字로 사용한 名譽毀損記事  
[仙台高等裁判所 昭和 29년 10월 19일 判決  
昭和 29년(五) 第538号 名譽毀損被告事件] ..... 152

5. 別件의 容의자를 本件의 容의자로 報道  
[甲府地方裁判所 昭和 31년 1월 2일 判決  
昭和 29년(ワ) 第210号 謝罪広告等請求事件] ..... 154

6. 被害者의 特定性  
[宇都宮地方裁判所 昭和 32년 11월 26일 判決  
昭和 29년(ワ) 第184号 謝罪広告 및 慰藉料請求事件] ..... 157

7. 法人의 名譽權侵害와 위자료(I)  
[東京高等裁判所 昭和 32년 12월 26일 判決  
昭和 32년(ネ) 第284号 損害賠償等請求事件] ..... 159

8. 公務員과 그 相對方의 私行의 報道  
[岡山地方裁判所 昭和 34년 5월 25일 判決  
昭和 32년(わ) 第681号 名譽毀損被告事件] ..... 161

9. 法人의 名譽權 侵害와 위자료(II)  
[最高裁判所 昭和 39년 1월 28일 判決

昭和 34년(オ) 第901号 謝罪広告並びに慰藉料請求事件] ..... 164

10. 「調査에 의하면」이라는 搜查当局의 발표에 근거한 듯한 표현형식에 의한 報道  
[東京地方裁判所 昭和 43년 4월 8일자 判決  
昭和 41년(ワ) 第12185号 慰藉料等請求事件] ..... 166

11. 「中間読物」의 모델과 名譽毀損 — 大阪府議會滑稽譚 —  
[大阪地方 裁判所 昭和 43년 7월 30일 判決  
昭和 26년(ワ) 第477号 損害賠償等請求事件] ..... 169

12. 헤드라인에 의한 名譽毀損(II)  
[東京地方裁判所 昭和 45년 3월 4일 判決  
昭和 43년(ワ) 第15359号 損害賠償等請求事件] ..... 171

13. 週刊誌가 名譽毀損을 하였다는 이유로 謝罪広告와 慰藉料의 請求가 認容된 事例  
— 「週刊新潮」名譽毀損事件 抗訴審判決 —  
[謝罪広告等 請求抗訴, 同附帶抗訴事件, 東京高裁 昭和 57(ネ)  
1638号 昭和 58. 6. 30民 10部判決, 一部変更(確定)  
— 審東京地裁 昭和 53(ワ) 8083号 昭和 57. 6. 14判決] ..... 174

□ 國內判例

공연히 事實을 摘示하여  
他人의 名譽를 毀損하였으므로  
벌금에 처한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事實概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벌금에 처한다는 法院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고소인 박병훈씨가 제출한 피고인 탁명환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탁명환은 고소인 박병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에 공연히 事實을 적시하여 박병훈의 名譽를 훼손하였으므로,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소인 박병훈씨는 월간지 聖別 5월호('81년 5월 15일자)에 『그리스도 편인가, 적그리스도 편인가』라는 제하의 기사와 聖別 6월호('82년 6월 15일자)에 『교포 교회에 침투하는 통일교』 제하의 기사가 각각 게재되자, 聖別 발행인이자 필자인 탁명환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이에 대해 각각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박병훈씨는 『교포사회에 침투하는 통일교』제하의 기사가 聖別 6월호('82년 6월 15일자)에 게재되자, 聖別 발행인이자 필자인 탁명환씨를 상대로 '82년 7월 10일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 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5호 120면 참조).

중재결과, 탁명환씨가 聖別에 게재된 記事는 사실대로 쓴 것이고, 기독교계의 公益을 위한 기사이기 때문에, 박병훈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었다.

약식명령 I

사 건: 82고약618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피 고 인: 탁 명 환

생년월일: 1937년. 7. 8. 생(370708-1063423)

직 업: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주 거: 서울 동대문구 묵2동 233의 45

본 적: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8

주형과부수처분: 피고인을 벌금 200,000(이십만)원에 처한다. 위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37조, 제38조(벌금형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7일안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82. 7. 14.

판사 최 중 태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으로 종사하면서 「성별」이라는 종교잡지 월간지를 발행하는자인 바, 대한예수교 장노회 호헌총회장 박병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1. 1981. 5. 15.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소재 피고인 경영 종교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박병훈이 통일교의 문선명 초청만찬회에 참석하고 떠날유. 씨. 씨. (W. C. C.; 세계선교협의회), 케이. 엔. 씨. 씨. (K. N. C. C. 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에 공산주의 세력이 침투하여 있다고 비난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발행 종교잡지 「성별」이라는 출판물 「긴급발언대」란에 『그리스도편인가 적그리스도편인가』라는 제목을 달고 『자칭 호헌총회장 박병훈씨의 망언을 듣고』라는 부제목 아래 「한국교계에 왜 거물급(?)으로 알려진 자칭 호헌과 박병훈 목사...문선명교주가 이단의 괴수라는 것쯤은 다 알 수 있을텐데 반공운운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박씨는...이번에는 계통산 새일파의 계통으로 알려진 김모씨의 자금줄을 타고 활동하고...교계에서는 항간에 한국기독교멸교협의회의 운영자금이 아리송하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고 대구지역에서는 큰 물의가 일어나기도 했다...반공을 내세워 밥벌이나 하자던가 자기의 기형적인 애국심을 만족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다...」라고 게재하고

2. 1980. 12. 7.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2 소재 공소의 나운몽경영 한국복음신보사발행 출판물인 동일자 한국신복음신보 발언대란에 『문교주 초청만찬회를 보고』라는 제목 아래 「세계적 문제아로 등장한 통일교회의 교주인 문선명씨의 초청만찬회가 열린 것이다...과거 교계에서 관록을 자랑하던 분들이 문교주의 좌우에 둘러리적으로 앉아 있었다...

예장 호헌총회장인 박병훈 목사가...끼어 있었다...

이날 참석한...왜 뚝뚝하게 머리를 못들고서 팔러고 내다 놓은 시골닭처럼 눈치만 살피고 계면적어 했는가...」라고 게재하고

3. 1981. 12. 15. 위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성별」잡지 권두언란에 「...그 첫번 타자는 고소제기를 많이 하기로 이름난 호헌총회장 박병훈씨가 본편집인이 쓴 글을 트집잡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사회정화를 구현한다면 오히려 조사를 해봐서 상습적인 고소를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들

을 보호감호소라도 보내어 순화교육을 시켜야 마땅할 것이다」라고 게재하여 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박병훈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약식명령 II**

사 건: 83고약2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피고인: 탁 명 환  
생년월일: 1937. 7. 8. 생(370708-1063423)

직업: 종교문제연구소  
주거: 서울 동대문구 목2동 233-45

본적: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8  
주형과부수처분: 피고인을 벌금 100,000(일십만)원에 처한다. 위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형법제309조 1항(벌금형선택) 벌금 등  
입시조치법 제 4조 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2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 등본의 송달일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983. 1. 28.

판사 임 승 순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으로 종사하면서 「성별」이라는 종교월간잡지 발행인 겸 편집인자인 바,

대한예수교 장노회 호헌총회장 박병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1982. 6. 15.자 발행의 동잡지 6호에 『교포교회에 침투하는 통일교』라는 제목으로 해외집회기를 게재하면서 게재문 64정과 65정에 「이번 출국에 있어서 방해공작을 한 자는 박병훈 목사였다. 그자는 통일교집회에 참석했기에 충고를 했더니 필자를 걸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해 놓고 수사당국에 출국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았으니 중대한 국사범이나 파렴치범이 아님은 물론 해외 도피우려도 없는 필자를 해외에 못나가게 하면 결국 통일교 밖에 이익을 볼 집단이 없는데 박씨는 통일교 문선명과 나

란히 자리잡고 나더니 통일교편인지 기성교회편인지 아리송할 뿐이다. 더구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그는 N. C. C.를 용공집단이라고 몰아부쳤는데 그렇다면 박씨의 아들이 미국의 예장 통합측 교단에 소속돼있고 그 딸은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적을 두고 있다 하니 박씨가 N. C. C.를 용공집단이라고 막 욕하는 저의를 알길이 없다. 항상 필자의 출국길에는 사탄의 장난이 뒤따를 수 밖에 없었던 사실은 제2차 출국시에도 권신찬집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제4차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필자의 사무실 관할 파출소와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서 박씨가 찾아와 탁명환이를 보면 즉시 잡아달라고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하니, 명색이 목사라는 이가 할 일이 없어 파출소나 찾아 다니면서 사람잡아 달라고 하니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느낌이 든다」라고 게재하여 그경 전국의 구독자에게 배포하여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박병훈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이며,  
訂正報道請求내용이 虛偽임이 명백하면  
訂正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정정보도게재소송

**事實概要**

보도내용이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이며, 訂正報道請求 내용이 虛偽임이 명백할 때에는 신청인은 訂正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判決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83년 2월 9일 신청인 金永煥씨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江原日報社 발행인 姜杓遠씨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신청사건에 대해, 江原日報의 보도는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임을 인정할 수 있고, 申請人의 정정보도청구내용이 虛偽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학교재단측의 말만 듣고 報道한 일방적인 허위 기사라고 주장하는 江原日報 1982년 11월 6일자 7면에 게재된 『前裕鳳여중 校長 수사』, 『용지, 獎學金 등 公金橫領 혐의』 제하의 기사는 그 기사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을 新聞社側의 의견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는 신청인의 혐의사실을 간접적으로 보도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건의 피해자들

관계인들의 진술, 기타 수사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임을 간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기사가 학교 재단측의 말만 듣고 보도된 일방적인 기사로 虛偽報道임이 교육위원회나 검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거나, 학교법인 裕鳳學院이 각종 등 록금에서 유용, 횡령한 것이 金 1억4천만원에 이른 것이 확인된 일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 내용은 虛偽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 교사들과의 대출보증관계와 3천여만원 횡령사건 등에 대하여는 그 혐의내용이 밝혀졌다는 기사가 江原日報 1982년 12월 11일자에 충분히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訂正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인은 江原日報 1982년 11월 6일자 7면에 게재된 『前裕鳳여중 校長수사』, 『용지, 獎學金 등 公金橫領 혐의』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보도로서, 위 기사는 학교재단측의 말만 듣고 보도한 일방적인 기사임이 교육위원회



감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각종 공금 3천여만원을 횡령 유용한 것은 裕鳳여자 중·고등학교 서무과장 김양배가 교장의 승인이 나 동의없이 몰래 임의 유용 또는 횡령한 것이다. 학교재단이 각종 등록금에서 유용한 금액은 1억4천여만원으로 이 사실은 교육위원회 감사결과 확인되어 현재 춘천지검에서 입건, 조사중임이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신청인 金永煥씨는 위 기사가 보도되자 1982년 11월 13일 피신청인 주식회사 江原日報社 발행인 姜杓遠씨를 상대로 言論仲裁委員會 강원중재부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7호 94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江原日報의 보도는 허위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1982년 11월 26일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1982년 12월 6일 주식회사 江原日報社 발행인 姜杓遠씨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 1983년 2월 9일 1審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1983년 2월 28일에 항소하였다.

判決文

사 건 : 82카768 정정보도게재  
신청인 : 김 영 환(金永煥)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51  
피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일보(江原日報)  
발행인 강 표 원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53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석 명  
변론종결 : 1983. 1. 26.

주 문 :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강원일보의 제7면 중앙 상단 부분의 5단기사로 제목은 활자의 크기를 특호활자로 하고 정정보도문 게재라고 새로운 표시를 하고 좌측에 특호 활자로 「전유봉여중교장 수사보도는 사실과 상이」라는 특호활자의 부제를 하고 별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

정보도내용 중 1항은 가로로 5호활자로, 2항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가로로 4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

이 유 : 신청인은 유봉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인데,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2. 11. 6자 강원일보 7면의 기사란 중 중앙 상단부근에 주제를 「전유봉여중 교장수사」(특호 활자), 부제를 「용지, 장학금 등 공금횡령혐의」, 「춘천지검」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에 대하여 3호 활자 5단기사로 「(전략)춘천지검 수사과는 전유봉여중 교장인 신청인이 지난 해 조모 교사 등 7, 8명의 교사들로부터 1백만원에서 3백만원 까지 대출보증을 서도록 하거나 직접 돈을 빌린 후 이자는 물론 원금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피해교사들의 진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신청인이 학부모들이 거둬준 용지대와 장학금을 가로챈 혐의도 잡고 수사중이며 교원접대비자로 엉터리 영수증을 만들어 공금을 축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략) 신청인 자신이 학교장으로서 문서소각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한 데다, 3천여만원의 세출예산이 부당인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중략) 신청인과 신청인의 부인 노단옥여인이 채무관계에 사문서를 위조 행사했으며, 학교서무과 여직원들에게 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잡혀 사문서 위조, 동행사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춘천지검에 송치됐다. (후략)」라는 등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3항 단서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게재가 없을 경우에만 비로소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일보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청구를 함이 없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만을 거친 신청인의 이 사건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언론기본법 제49조 제3항, 제50조 4항의 규정조항은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월 이내에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한 후 그 게재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는 권리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문제된 기사공표 후 1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을 하였고 또 그 중재불성립 후 법정기간내인 14일 이내에 이 신청에 이르렀음이 명백하여 거기에 신청요건불비등 흠결사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다시 위 문제된 기사는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이고 신청인이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를 게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울 제2호증의 1, 2, 소울 제2호증의 5, 소울 제2호증의 29(각 기록표지), 소울 제2호증의 3(공소장), 소울 제2호증의 4(구속영장), 소울 제2호증의 8, 소울 제2호증의 32(각 의견서), 소울 제2호증의 9, 소울 제2호증의 35(각 범죄인지보고), 소울 제2호증의 10, 소울 제2호증의 33(각내사 지휘), 소울 제2호증의 13, 소울 제2호증의 16 내지 28(각 진술조서), 소울 제3호증의 1, 2 (징계처분결과보고 및 징계처분요구), 위 각 서류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소울 제2호증의 11, 12, 34(각 진정서) 증인 한영달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소울 제1호증(신문)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사 내용의 진위와 그 수사과정 및 기사의 보도과정 등을 살펴보면,

1. 강원도 교육위원회는 자체조사를 거쳐, 신청인이 유봉여자중학교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갱지대금첨찬금 1,800,000원 중 224,400원을 스스

로 횡령한 외에, 위 학교 서무과장인 신청의 김양배가, 80학년도 이전분의 위 학교회계장부등을 소각하고, 위 학교가 보관중인 학교돈 중 은행예치 구좌 16건 금 32,139,625원, 정기에금 9건 금 38,531,920원, 교과서대금 4,012,920원 등을 일시 유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나머지 위 학교경영자인 학교법인 유봉학원 이사장에게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신청인의 징계처분(징계요구량 파면)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위 학교법인은 교장 징계위원회를 거쳐 1982. 9. 29. 위 학원이사장 명의로 신청인을 교장직에서 파면 처분한 사실,

2. 위 학교 교사인 신청의 조운구, 학부모인 신청의 석길자 외 2인 및 서무과 직원인 신청의 박순영, 김미혜 등은 (1)신청인이 교장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조운구등 7인의 부하교사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어 신청인의 보증을 서게 하여 은행 및 농협 등으로부터 많게는 금 3,000,000원으로부터 적게는 금 570,000원을 차용한 뒤 이를 제날짜에 갚지 않아 피해를 주고 있다. (2)신청인이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위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찬조받은 갱지대금, 학교체육기금 및 체육장학금 등을 보관중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3)신청인과 그 부인인 신청의 노단옥은 합세하여 위 박순영, 김미혜에게 강제로 인수보관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와 진정서들을 각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강원도 경찰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기사가 공표되기 직전 무렵인 1982. 11. 4.부터 같은 달 6일 사이에 춘천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진정인, 피해자, 기타 관계인 등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그 진정인이나 기타 참고인들은 모두 위 진정내용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일보는 신청인이 이미 교장직에서 파면된 데다 그 교사등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사회의 이목을 받게 되자 그 사회부 기자 이인영으로 하여금 위 검찰청의 수사관, 강원도 교육위원회 담당공무원 등의 인터뷰 결과와 위 수사기록 등의 취재원으로부터의 취재등을 종합하여 그 수사 제1보로서 위의 기사를 작성케 하고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1982. 11. 6. 자 석간 신문에 게재하게 된 것인 사실,

3. 그후 신청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어 1982. 12. 10.에는 신청인이 위 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인 1981. 5. 16.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전후 15회에 걸쳐 학부모들로부터 기부받은 학생들의 학력제고용 갱지대금 1,239,000원, 1982. 4. 10.경부터 같은 해 7월 일자 불상경까지 사이에 같은 갱지대금 1,704,321원, 1982년 4월경부터 같은해 6월경까지 사이에 위 부인사로부터 기부받은 학교 체육기금 1,250,000원, 1982. 4. 23.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사이에 역시 위부인사로부터 기부받은 학교 체육장학기금 650,000원, 1981. 6. 4.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사이에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보관금 중에서 금 1,280,000원, 같은 해 7. 3.경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사이에 같은 돈 중 1,501,000원, 1982. 6. 12.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사이에 같은 돈 1,800,000원 등 도합 금 9,424,321원의 학교돈등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구속집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강원일보에 다시 1982. 12. 11. 자 석간에 신청인이 위와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된 사실을 게재하면서 「신청인이 교장으로 재직시 학교공금을 횡령하고, 조모 교사등 7,8명의 교사들로부터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대출보증을 서도록 하거나, 직점 돈을 빌린 후 이자는 물론 원금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피해교사들의 진정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나 교사들과의 채권채무관계는 민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다루지 않았다.

또한 도교육위의 감사과정에서 부당인출된 것으로 지적된 세출예산 3천여만원도 신청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는 기사를 결들임으로써 교사들의 진정내용 및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3,000여만원 부당인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혐의가 없어졌음을 명백히 보도한 사실,

4. 그 후 검사는 1982. 12. 15.자로 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구속영장범죄사실과 그밖에도 신청인이 1982. 6. 10.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중학교 교장사무실에서 위 김미혜, 박순영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달 12일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박순영을 협박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고 신청인의 처인 신청의 노단옥에 대하여는 1981년 3월일자불상 10:00경 이영순 경영의 거부당제과정에서 김유봉 명의의 금 3,000,000원 짜리 차용증서 1매를 위조행사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여 각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들은 제1심공판 계속중에 있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기사내용(갑제 1호증)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을 신문사측의 의견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되고 있는 신청인의 혐의사실을 간접적으로 보도한 형식으로 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내용 중, 기사의 본질과 관계없는 세세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 사건의 피해자등 관계인들의 진술 기타 수사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근거를 갖춘 기사임을 간취할 수 있을 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기사가 학교재단측의 말만 듣고 보도된 일방적인 기사로서 그 허위보도임이 교육위원회나 검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거나 학교법인 유봉학원이 각종 등록금에서 유용횡령한 것이 금 1억4천만원에 이른 것이 확인된 일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내세우고 있는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 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학교 교사들과의 대출 보증관계나 3천여만원 횡령사건 등에 대하여는 이미 그 혐의없음이 밝혀졌음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혐의사실 수사과정에 대한 일련의 보도로서 1982. 12. 11.자 강원일보 지상에 충분히 보도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9. 재판장 판사 임 대 화 판사 전 능 진 판사 김 순 갑

### 事實的 主張의 報道로 被害를 입은 바 없으므로 棄却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3년 5월 24일 신청인 윤두호씨가 피신청인 장로회보사 발행인 서석호씨를 상대로 한 訂正報道請求申請事件에 대하여, 장로회보에 게재된 바 있는 『산업선교정책협의회 참관기』란 題下의 기사 가운데 신청인에 관한 事實的 主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에 의하여 소명이 되었고, 그밖의 부분은 산업선교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필자가 그 회의에서 보고 느낀 바를 논평 내지 비평하기 위하여 쓴 寄稿文이고, 피신청인이 이를 게재한 것이므로, 申請人은 장로회보에 게재된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의하여 被害를 입은 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산업선교정책협의회 참관기』題下의 기사가 장로회보(1983년 1월 20일자 2면)에 게재되자, 신청인 윤두호씨가 장로회보사 발행인 서석호씨를 상대로 1983년 2월 19일 言論仲裁委員會에 仲裁을 신청했으나 (중재신청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8호 91면 참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1983년 3월 3일 중재가 불성립되었다.

신청인은 중재가 불성립되자, 1983년 3월 18일 법원에 訂正報道請求申請을 냈으나, 1983년 5월 24일 기각되었다.

#### 決定文

사 건 : 83카7933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윤 두 호

서울 도봉구 공릉동 557의 4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인 철

피신청인 : 장로회보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의 46

대표자 발행인 서 석 호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신청인의 본건 신청의 요지는,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1983. 1. 20. 자 장로회보에 신청인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의 상임간사로서 1982. 11. 29.부터 동년 12. 1.까지 사이에 연례행사로 개최한 바 있는 공식적 세미나인 산업선교정책협의회에 참관한 신청의 유치문이 참관 소감으로 쓴 『산업선교정책협의회 참관기』란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였는 바, 동 참관기 중 신청인에 관한 부분을 간추려 보면, 첫째, 간사 윤두호는 회의기간중 주먹을 불끈불끈 쳐두고 액손액손하였는데, 이는 정부나 언론을 몰아부치는 성토를 하자는 뜻인지 가두시위라도 벌이자는 것인지 매우 아리송하였다. 둘째, 기관원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분위기를 경화시킬 염려가 있는 이야기라면 안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셋째, 회의장면을 계속 비디오로 촬영한 것은 비용이 상당할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혹시 더블유.씨.씨.(W.C.C.)에 자금을 타내기 위한 보고용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사전에 산업선교위원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금규모나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간사란 심부름꾼이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빙자하여 독단으로 무슨 일을 꾸미거나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회의와는 상관이 없는 산업선교수호를 위한 결의문이 유인물로 제작되어 유포되고 있는데, 이 유인물의 작성자가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나돌고 있는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경거망동이 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아무리 생각해도

더블유.씨.씨.에서 돈 타내기 위한 연극에 놀이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등의 내용인 바,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 간사인 신청인 윤두호목사는 동 산업선교위원회의 유일한 집행기관으로서 동 선교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주제 아래 회의를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며 특히 회의주제에 맞도록 각계의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빙하였으며 위 산업선교위원회는 산업화사회에 있어서의 선교라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단체이므로 그 선교임무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현실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제공하여 선교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매년 연례행사로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왔고 1982. 11. 29. 부터 동년 12. 1. 까지 열린 회의 역시 연례행사의 하나로 개최된 것으로 위 산업선교회의가 아무런 근거나 책임없이 신청인 목사 독단으로 개최하고 집행한 회의가 아니며, 더구나 더블유.씨.씨.에서 자금을 타내기 위한 회의도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이 아닐 뿐더러 오른손 주먹을 불끈불끈 쳐들고 액손액손하고 외친 일도 없으며 회의현장에서는 산업선교정책협의회 토의보고만이 있었을 뿐 결의문이 작성, 배포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게재한 참판기는 사실을 왜곡되게 표현하여 신청인을 모함하면서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건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언론기본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의

장로회보에 게재한 위 참판기 중 신청인에 관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첫째, 간사 윤두호 목사는 회의기간중 주먹을 불끈불끈 쳐들고 액손액손하였다. 둘째, 기관원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셋째, 회의장면을 계속 비디오로 촬영하였다. 넷째, 회의와는 상관없이 작성된 산업선교수호를 위한 결의문이 유인물로 제작되어 유포되었다는 항목이라 하겠고, 위 각 항목의 사실은 당사자가 제출한 각종의 자료에 의하여 대체로 소명이 되는 바이나,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신청인을 모함하고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성질의 보도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위 참판기 중 신청인에 대한 그밖의 기사는 사실상의 주장이 아니라, 동 기사의 제목이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선교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신청의 유치문이 동 협의회에서 보고 느낀 바를 논평 내지는 비평하기 위하여 쓴 기고문이고, 피신청인이 이를 게재한 것이므로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장로회보에 게재한 신청인에 관한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그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83. 5. 24.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박 성 철  
판사 이 중 찬

### 他기관의 公文을 記事化했다라도 公表한 新聞은 訂正報道 請求의 대상이 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事實概要**

他기관의 公文에 따라 게재한 記事일지라도

피신청인의 新聞을 통하여 公表된 이상, 이는 同新聞의 事實의 主張으로서 訂正報道請求의 대상이 필요분명하므로 記事로 인해 피해를 받은

申請人의 訂正報道文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3년 8월 19일 申請人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협회장 이재석씨가 피신청인 기독교보사 발행인 김정준씨, 피신청인 韓國基督公報社 발행인 안경운씨를 각각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 신청사건에서, 本件 記事들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명환의 「통일교에 대한 비판강좌에 대한 안내」라는 公文에 따라 게재된 것이더라도, 피신청인들의 新聞을 통해 公表된 이상 이는 同 新聞들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필요분명하므로, 피신청인들은 이 記事들로 인해 被害를 받은 신청인에 대해 그의 訂正報道文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기독교보는 1983년 2월 19일자 3면에 『統一敎 비판 강연회』, 『赤裸裸한 實像 파헤쳐』, 『강사 前統一敎協會長 김명희씨』 제하의 기사를, 韓國基督公報는 1983년 2월 19일자 3면에 『文鮮明집단의 異端性 폭로』, 『이탈간부 김명희씨 강사로 28일 새문안서』 제하의 기사로 게재한 바 있다. 신청인은 그 기사들 중에 나오는 김명희씨는 통일교회협회장이나 재단이사장 직무를 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虛偽事實을 보도하였으며, 「통일교 극비 혼음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의 강연제목은 50년대에 보도된 것을 인용한 것으로서, 통일교가 마치 비윤리적인 집단인 것처럼 묘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1983년 3월 9일 기독교보사 발행인 김정준씨와 韓國基督公報社 발행인 안경운씨를 상대로 각각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다(중재신청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 8호 94~97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들이, 보도된 기사들은 모두 사실이며, 또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명환이 배포한 公文을 게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1983년 3월 29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기독교보사와 韓國基督公報社를 상대로 각각 정정보도청구신청서를 제출, 1983년 8월 19일 1審에서 모두 勝訴判決을 받았다. 피신청

인들은 1審判決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기독교보 1983년 10월 8일자 3면과 韓國基督公報 1983년 10월 1일자 3면에 각각 게재했다.

**判決文 I**

사 건 : 83카9145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71의 3

대표자 협회장 이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수

피신청인 : 한국기독교보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의 46

법률상 대표자 발행인 안경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변론종결 : 1983. 8. 5.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끝나지 아니한 “한국기독교보” 제 3면 기사란 중 상단 중간부분에 세로 4단 가로 7센티미터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1호 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고, 별지 정정보도 내용은 6호 활자로 그 좌측에 4단으로 게재하고, 정정보도 신청인의 명칭은 2호 활자로 위 정정보도 내용의 좌측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우선 당사자 표시정정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당초에 신청인 협회는 1983. 3. 9. 신청인협회 명의로 언론중재 신청을 하고 동년 3.16. 피신청인과 사이에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동년 3. 29. 신청인 협회의 대표자인 “이재석” 명의로 본건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한 다음 동년 4.8. 당사자 표시를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협회장이재석”으로 정정하였다가 동년 6.30. 다시 이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협회장 이재석”으로 정정하였음이 분명하다.

피신청인은 원래 중재신청을 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자연인인 “이재석”이나 “유지재단”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위 당사자 표시정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신청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의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가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신속·엄정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사자 표시정정의 경우에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보다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름이 없는 소갑 1호증, 소갑 3호증의 1 내지 3, 소갑 4호증의 각 기재와 본건 신청서 및 이에 붙여 제출된 신청인 협회의 위임장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본건 신청서 앞부분의 신청인 표시에는 “이재석”으로 되어있으나 신청서 뒷부분에는 중재신청을 대리하였던 동협회의 국내과장 김용관의 기명날인과 동 협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김용관에 대한 위임장은 동 협회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당초부터 신청인 협회 명의로 본건 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그뒤 이를 법인격이 있는 “유지재단”으로 일응 정정하였다가 다시 신청인 협회로 표시정정을 한 것은 위 “유지재단”은 신청인 협회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실상 양자는 상호교리의 관계에 있는 동일한 사회적 활동개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본건 당사자표시 정정은 앞서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3. 2. 19.자 한국기

독공보 제3면 기사란 중 상측 중간 부분에 「문선명 집단의 이단성 폭로」, 「이탈간부 김명희씨 강사로, 28일 새문안서」라는 제목 아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소장 탁명환)가 주최하는 문선명 집단에 대한 비판강좌가 동년 2. 28 오후에 새문안교회당에서 문선명집단의 협회장 및 재단이사장직무를 대행한 바 있던 김명희씨를 강사로 하여 통일교의 극비혼음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의 6가지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세로 5단, 가로 7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소의 김명희는 과거 신청인측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종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서 통일교회협회장 또는 재단이사장의 직무대리로서 중대한 사실이 있는 등 위 기사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명희의 증언은 채택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더러 설사 위 보도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방적 보도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본건 기사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명환의 “통일교에 대한 비판강좌에 대한 안내”라는 공문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일단 그 주장과 같은 공문이 피신청인의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동신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필요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본건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한국기독교공보에 게재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19.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박 성 철  
판사 이 중 찬

정 정 보 도 문

지난 1983. 2. 19. 자 한국기독교공보 제3면에 「문선명집단의 이단성 폭로」라는 제목 아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소장 탁명환)가 주최하는 문선명 집단에 대한 비판 강좌가 동년 2. 28. 새문안교회당에서 문선명집단의 협회장 및 재단 이사장직무를 대행한 바 있던 김명희씨를 강사로 하여 통일교의 극비혼음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의 6가지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기사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위 강사 김명희는 통일교회협회장이나 재단이사장 직무를 대행한 사실이 없고 평신도로 있다가 탈퇴한 자이며, 또한 통일교극비혼음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의 강연제목은 50년대에 보도된 것을 인용한 허구의 것으로서 통일교가 마치 비윤리적인 집단인 것처럼 묘사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判 決 文 II

사 건 : 83카9146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71의 3  
대표자 협회장 이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홍 수  
피신청인 : 기독교신보사  
서울 용산구 동자동 35의 14  
대표자 발행인 김정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변론종결 : 1983. 8. 5.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독교신보” 제3면의 좌측 상단 부분중 5단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6호 활자로 좌측에 5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우선 당사자표시 정정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본건 기록에 의하면 당초에 신청인협회는 1983. 3. 9. 신청인협회 명의로 언론중재신청을 하고 동년 3. 16. 피신청인과 사이에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동년 3. 29. 신청인협회의 대표자인 “이재석” 명의로 본건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한 다음 동년 4. 8. 당사자 표시를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협회장 이재석”으로 정정하였다가 동년 6. 30. 다시 이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협회장 이재석”으로 정정하였음이 분명하다.

피신청인은 원래 중재신청을 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자연인인 “이재석”이나 위 “유지재단”과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위 당사자표시 정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본건 신청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의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가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신속·엄정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이러한 의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사자표시 정정의 경우에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보다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름이 있는 소갑 1호증, 소갑 3호증의 1 내지 3, 소갑 4호증의 각 기재와 본건 신청서 및 이에 붙여 제출된 신청인 협회의 위임장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본건 신청서 앞부분의 신청인 표시에는 “이재석”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서 뒷

부분에는 중재신청을 대리하였던 동 협회의 국내과장 김용관의 기명날인과 동 협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김용관에 대한 위임장은 동 협회 명의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당초부터 신청인협회 명의로 본건 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그뒤 이를 법인격이 있는 "유지재단"으로 일응 정정하였다가 다시 신청인협회로 표시정정을 한 것을 위 "유지재단"은 신청인협회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및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실상 양자는 상호 표시의 관계에 있는 동일한 사회적 활동개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본건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은 앞서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모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2. 19.자 "기독교신보" 제3면 기사 중 우측 상단부분에 『통일교비판강연회 적나라한 실상 파헤쳐 전통일교 협회장 김명희』라는 제목 아래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통일교에 대한 비판강연회가 동년 2. 28. 오후에 새문안교회당에서 통일교 협회장 및 재단이사장 직무를 대행한 바 있던 김명희씨를 강사로 하여 통일교의 적나라한 실상과 교리적 이단성을 파헤치고 동 교회의 극비혼음 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에 관하여 강연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기사가 세로 7단, 가로 약 15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소의 김명희는 과거 신청인측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종사건의 처리 등에 있어서 통일교회협회장 또는 재단이사장의 직무 대리로서 종사한 사실이 있는 등 위 기사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명희의 증언은 채택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설사 위 보도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방적 보도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본건 기사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명환의 "통일교에 대한 비판강좌에 대한 안내"라는 공문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일단 그 주장과 같은 공문이 피신청인의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는 동 신문의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됨은 분명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본건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기독교신보에 게재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19.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박 성 철  
판사 이 중 찬

정 정 보 도 문

기독교신보사가 1983. 2. 19.자 발행 동사 기독교신보의 3면 머릿기사로 게재한 『통일교 비판강연회가 강사 전통일교협회장 김명희』 제하의 7단 기사에서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통일교회 비판강좌가 통일교회 협회장 및 재단이사장 직무대리로 있다가 탈퇴한 김명희씨를 강사로 하여 개최하는데 동 강연회에서는 통일교의 적나라한 실상과 교리적인 이단성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기회가 될 것이며 통일교의 극비혼음교리의 내막과 계보 등이 밝혀질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강사로 보도된 김명희는 통일교 협회장이나 재단이사장 직무를 대리한 바 없고 평신도로 있다가 탈퇴한 자이며 "통일교극비혼음의 내막과 계보" 등 기사는 50년대 보도된 것을

인용한 사실무근의 것으로서 통일교회가 마치 비윤리적인 집단인 양 묘사된 내용은 사실이 아

니다.

정정보도신청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

原稿를 修正·削除해 게재한  
경우는 訂正報道請求權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事實概要

잡지를 통해 原稿를 公表한 경우, 비록 그 내용이 본래의 원고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당초 言論基本法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언론기본법상의 訂正報道請求權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1審判決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3년 8월 26일 신청인 金龍瑞씨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사회발전연구소 대표이사 장덕진, 심용택씨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雜誌를 통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事實的主張 그 자체를 발표한 '주체적·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이나, 그 공표된 내용 안에서 거론되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내용이 본래의 原稿內容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당초부터 言論基本法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民法 또는 著作權法 등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申請人은 주식회사 사회발전연구소 발행 월간지 「한국인」(1983년 4월호 57-59면)에 「집단지향성 및 일본인의 우상」이란 제하의 글을 「한국인」측 원고청탁에 의해 써주었는 바, 피신청인 「한국인」측이 당초 신청인이 쓴 原稿를 신청인

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삭제, 변경, 첨가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그 著者로 되어 있는 申請人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본전문가로서의 사회활동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신청인 명의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과 사건개요에 계속해서 신청인의 본래의 原稿全文을 수정, 삭제없이 게재하라고 요구하며, 1983년 4월 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신청을 냈다.

그런데 신청인 金龍瑞씨는 위 글이 公表된 후, 1983년 4월 13일 피신청인인 월간 「한국인」지 발행인 심용택씨를 상대로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했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8호 102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한 원고 재게재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社告만을 게재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성립되었다.

신청인 金龍瑞씨는 1審 판결에 불복하고 抗訴한 후, 당사자간에 화해하여 金龍瑞씨는 訴를 취하하고(1983. 11. 24.), 「한국인」은 1983년 11월호에 金龍瑞씨의 『일본인의 상황주의와 책임의식』이란 제하의 글을 게재하였다.

判 決 文

사 건: 83카17754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김 용 서

서울 강남구 포이동 3의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사회발전연구소(월간잡지  
「한국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대표이사 장 덕 진, 심 용 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연

변론종결: 1983. 8. 12.

주 문: 1.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  
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본건 판결을 송  
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잡지  
「한국인」에 별지 1 내용의 정정보도를  
별지 2 기재의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  
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신청인은 당초에 소의 장덕진, 동  
심용택을 상대로 본건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하였  
다가 피신청인측에서, 그 당사자 적격에 대한  
이의를 하자, 피신청인 표시를 주식회사 사회발  
전연구소로 정정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한 바, 우  
선 이에 대하여 보전대, 정정보도청구권의 재판  
상 행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속·엄정한 피해  
자의 권리구제를 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당사자표시  
정정의 경우에도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보다 넓게 허용된다고 볼 것인데, 본건에서 월  
간잡지 「한국인」에 관한 정기간행물 등록증에는  
그 발행인이 피신청인 회사로 되어 있으나 위 잡  
지상으로는 그 말미에서 사회발전연구소가 이를  
발행하며 회장은 장덕진, 발행 겸 편집인은 심  
용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신  
청인의 위와 같은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은 정정  
보도청구심판절차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범  
위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신청인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보  
전대 본건 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은 1983년 2월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잡지 「한국인」에 실을  
원고청탁을 받고 「집단지향성과 일본인의 우상」

이라는 제목으로 300자원고지 20장 분량의 원고  
를 써 주었는데 그후 발간된 한국인 4월호 56면  
부터 59면까지에 실린 신청인 명의의 같은 제목  
의 글은 당초에 신청인이 쓴 원고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삭제, 변경, 첨  
가한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그 저자로 되어 있는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본전문가로서의 사  
회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대하  
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청구를 한다  
는 것이다.

생각컨대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정  
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  
해를 받은 자, 즉 그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자기  
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위 잡지를 통하  
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 그  
자체를 발표한 주체적, 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  
로서 그 공표된 내용 안에서 거론되는 등 직접적  
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  
이므로 비록 그 내용이 본래의 원고내용과 달라  
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당초부터 언론기  
본법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에 대하  
여 신청인은 민법 또는 저작권법(예컨대 동법  
제16조의 원상유지권) 등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  
보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장에 선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26.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박 성 철  
판사 이 중 찬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 및 사과문

본지 「한국인」 1983년 4월호 김용서교수의  
「집단지향성과 일본인의 우상」(56면부터 59면까  
지)은 집필자에게 일언반구의 의논·통보도 없  
이 본사 편집진들의 자의로 원고를 삭제·날조

하였던 기사로서 그 개작방법이 조잡하고 개작  
의 지적 수준이 천박하여 집필자의 명예를 훼손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조  
성하고 한일양국 우호증진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필자의 항의를 받고 이번 호에 본  
래의 원고를 수정없이 게재하게 되었음을 알리  
는 바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김용서교수께서 사회정의  
감과 교육자적 양심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  
며 저희들의 과오를 시정하여 주신 교훈에 대하  
여 저희 편집진들과 이들을 통솔하는 책임자들  
은 송구스럽고 또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  
을 굳게 약속드리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  
하여 재삼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1983년 월 일  
사회발전연구소 회장 장 덕 진  
「한국인」 발행인 심 용 택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게재방법

1. 정정보도 및 사과문은 「한국인」(판결 후  
최초발간)월호의 기사본문이 시작되는 첫면에  
(한면 전부를 할애하여) 게재할 것.

2. 첫면의 3분의 2 상단에는 정정보도 및 사  
과문을 게재하고 나머지 3분의 1부분인 하단부  
터 다음면에 계속해서 사건개요를 게재할 것.

3. 상단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은 강조효과가  
나도록 4각형의 박스를 치고 4면에 여백을 둘  
것.

4. 정정보도 및 사과문과 사건개요에 계속해  
서 신청인의 본래 원고 전문을 수정, 삭제없이  
게재할 것.

5. 본래의 원고 및 정정보도 및 사과문의 게  
재지면이나 간지에 광고나 기타 고지사항을 게  
재하지 말 것.

6. 정정보도 및 사과문 및 원고의 본문 활자  
크기는 「한국인」의 기타 보도문의 본문크기 활  
자와 동일하게 할 것.

7. 원고제목의 크기 및 활자의 크기는 「한국  
인」의 기타 제목의 크기와 동일하게 할 것.

8. 정정보도 및 사과문의 「정정보도 및 사과  
문」이란 제목과 「사회발전연구소 회장 장덕진」  
및 「발행인 심용택」이란 활자의 크기는 2호활자  
로 할 것.

9. 정정보도 및 사과문과 원고는 일반독자가  
읽기 불편하지 않도록 띄어쓰기 및 편집의 제반  
사항을 「한국인」기타의 보도문과 동일하게 할  
것.

10. 「정정보도 및 사과문」과 「사건개요」의 본  
래 원고 정본 사이에는 2단 내지 3단의 공백을  
두고 게재함으로써 각각의 내용이 독립적으로  
부각되도록 할 것.

當事者간 화해에 의한 報道

한국인: 「일본인의 상황주의와 책임의식」 제하  
의 글(1983년 11월호, 74-75면)

내 용: 이 글은 4월호 특집 “일본·일본인의 일  
곱가지 얼굴”중 ‘집단지향성과 일본인의 우상’원  
고에서 편집 체제상 못 실었던 내용을 마저 실은  
것입니다.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우리말  
처럼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자기와 접촉  
하는 ‘단남’이나 구성원 또는 ‘틀(Frame)’이 가  
장 중요하다.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나 같은 회  
사의 사원 또는 같은 조직체의 일원이라는 의식  
이 외부와 구별되는 지표이지만, 그것은 매일매  
일 접촉하는 상황구성 또는 상호의존구조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유대감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외부와의 경쟁이나 대립 상황이 전개될  
때 ‘내부’의 일원이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외부’와의 단절을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구별, 차별 또는 2중성의 긴장이 지속된다  
고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결과 속이 다르다’  
든가 ‘적과 동지의 구별이 분명하다’는 뜻이 된  
다.

그들은 언제나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 그 자체  
에 가장 충실하며 구별 또는 차별에 민감하기 때  
문에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 역시 민감하다. 상  
황이 변하면 그들의 협동과 처신도 변한다. 그  
들은 새로운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상황에 저항하여 자기자신을 파괴(자살)시키든가 양단간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관례다.

제2차세계대전이 패망으로 끝났을 때 전쟁 지도자들은 자살로 책임을 청산하는 유형과 전혀 죄의식이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보려고 애를 쓴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군인이었던 도조 히데끼(同條英機)수상을 들 수 있다. 그는 전쟁수행의 최고책임자면서도 자기가 전쟁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의 진술은 전쟁에 대한 천황의 책임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꾸민 연극이라는 설도 있지만 전쟁수행중에 추종자들과 '내부'의 구성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기고만장하던 위세와는 너무도 대조적인 2중성을 나타내는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경(전범)재판과 전쟁중의 일본군 국주의 지도자들의 위세와 레드 퍼지(미군점령 하에서 군국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 추방 또는 자격박탈시킨 조치)때를 비교해보면 일본인들은 최고의 경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한 집단 속에서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진행하면서 자제를 못하고, 다시 상황이 급변하면 모든 용기와 시련을 극복하는 힘을 잃고 마는 수가 많다.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쳐 고백하고 숙연히 그 죄과를 받겠다는 자세보다 구차한 변명으로 책임회피를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그들의 집단 지향의 행동이 기본적으로는 유약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 자결은 책임 의식의 표현

소설이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일본 중세 사무라이(武士)들의 생활을 보면 무사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나 도저히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자결로서 종말을 짓는다. 이러한 자결에는 일정한 의식이 있다.

엄숙한 제단이 차려지고 흰 보자기에 싸인 칼과 흰 옷을 입은 주인공과 흰 장막이 드리워져 있고, 주인공이 엄숙한 표정으로 일정한 예식에 맞추어 단도로 일단 배를 가로 찌르고 마지막에 칼끝을 배 속에서 휘둘러서 심장을 찌르게 한다. 이때 뒤에서 대기하던 긴 칼 든 무사가 그

순간에 목을 힘껏 내리치면 붉은 선혈이 흰장막과 자살자의 흰 옷에 팍 퍼져 물드는 일련의 연기가 행하여진다. 끔찍한 장면이면서도 무엇인가 엄숙하고 아름다움을 꾸미려는 흔적을 느낄 수가 있다.

자결행위를 위해서 무사는, 평상시에 의지력을 기르고 훈련을 쌓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속에 자기를 재판하고 처단하는 또 하나의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우리가 평상시에 이처럼 나를 죽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자기를 의식한다면 그 자체가 강한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항상 죽음을 의식하는 긴장 속에 산다면 실수나 수치를 범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결'의 습관을 일 본인의 강한 책임의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세시대에 이런 자결의식(儀式)은 이러한 책임의식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억울하게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가 일쑤였고, 특히 중앙정부가 반란의 위험이 있는 지방의 유력한 인물을 골라서 '억지춘향'식으로 죽이는 방편으로 사용한 예도 많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합리화된 시대에 있어서도 종종 일본신문에는 순전히 책임의식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다나카 전수상의 운전수가 자기 상관에게 본의 아니게 배반할 우려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자살한 사건 같은 것을 볼 때 정권이 몇번씩 바뀌고 세상을 놀라게 할 어마어마한 부정사건이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살했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에 비하면 역시 무언가 경건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그들의 '자결예식'은 책임의식과도 관련이 있겠으나 그보다 일본인들이 즐겨쓰는 의리(義理)와 인정(人情)과 더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각 또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인들에게는 '의리를 모르는 인간'이라는 말만큼 치욕적인 모욕으로 여겨지는 말이 없다. 일본인들의 단결심이 강하다고 하는 것도 바로 소속집단에 대한 의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 他人的 社会的 評價를 低下시키는 公表는 精神的 苦痛을 慰藉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소송

### 事實概要

被告가 발행, 편집하는 雜誌에 原告에 대한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비록 그 내용의 眞實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널리 반포되는 출판물인 월간잡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原告의 社会的 평가를 저하시켰음은 물론, 명예감정을 침해하여 原告가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被告는 原告에게 금 2백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1審判決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1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는 1983년 9월 30일, 原告 대한예수교장노회 대성교회와 原告 朴潤植씨가 피고 卓明煥씨를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被告 탁명환은 그가 발행, 편집하는 「현대종교」 1983년 3월호에 『박윤식목사 그는 왜 이단인가』라는 제목 아래 24페이지에 걸쳐서, 또 같은 해 4월호에 『박윤식목사 그는 과연 이단이었다』라는 제목 아래 21페이지에 걸쳐서 原告 박윤식의 전력과 불법, 비리행위 및 原告가 내세우는 교리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 ▽또한 4월호 끝부분에서 5월호에 실린 原告에 대한 기사의 소제목으로서 『눈사람처럼 늘어나는 박윤식의 범죄행각의 내막』등을 게재했다. 기사내용의 진실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널리 반포되는 출판물인 월간잡지의 성격에 비추어 위 原告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은 물론 명예감정을 侵害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原告가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慰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위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종교적 순수성, 공익성과 종교사회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증언은 이를 믿

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그 內容의 기제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내용은 原告에게 名譽毀損이 됨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는 法理이므로, 피고는 原告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의 금전배상으로, 原告와 피고의 나이 및 교육정도, 기독교 내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등을 고려해 금 2백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재판부는 또한 原告가 피고에게 위자료청구와 함께 사과광고의 게재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이는 原告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적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判決했다. 原告 대성교회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및 사과광고 게재청구는, 이 사건 내용은 박윤식 개인에 관한 것이고, 原告 교회가 비법인단체로서 대표자인 原告 朴潤植과 별개의 독자적인 법적 주체성과 인격은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原告에 대한 비행을 적시하였다 하여 곧바로 이것이 原告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 判 決 文

사 건 : 83가합2449 손해배상등  
원 고 : 1. 대한예수교장노회 대성교회(大聲教會)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73의 7 대표자 당회장 직무대행자 윤성택  
2. 박 윤 식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314의 84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태선, 김창국  
피 고 : 탁 명 환(卓明煥)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의 68

삼풍빌딩 523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김중권

변론종결: 1983. 9.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윤식에게 금 2백만 원 및 이에 대한 1983. 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대한예수교장노회 대성교회의 청구 및 원고 박윤식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피고의, 3분의 2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현대종교」의 앞표지 중앙부분에 3호활자로 『사과문 게재』라고 세로로 표시하고, 위 「현대종교」의 목차란 다음 페이지 전면에 걸쳐 별지 기재의 사과문을, 『사과문』이라는 제목은 상단 중앙부분에 가로로 1호활자로, 사과문 내용은 가로로 4호활자로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노회 대성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약칭한다)의 정당한 대표자는 원고 박윤식이고 원고 교회가 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위 윤성택은 그 대표자가 아니며, 설사 위 윤성택이 원고 교회의 종현에 따라 적법히 선출된 대표자 직무대행자라 할지라도 원고 교회의 종현은 대표자 직무대행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윤성택의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본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본소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툴

없는 강제10호증(소속증명서), 강제16호증(헌법)의 각 기재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당회장 권한 위임장, 원고 교회 당회의록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노회 남서울노회 합동보수파측에 속하는 교회로서 원래 원고 박윤식의 원고 교회의 당회장인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었으나, 1982. 12. 29. 원고 교회 당회의에서 당회장인 원고 박윤식의 부재시에 위 윤성택목사가 당회장 직무대행자를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1983. 1. 2. 대한예수교장노회 남서울노회에서 당회장 권한위임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 대한예수교장노회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당회장은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박윤식이 1983. 1.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아직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윤성택은 원고 교회의 종현에 따라 적법히 선출된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 직무대행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제기일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4. 23.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 박윤식이 출타중인 사실은 당원의 현저한 사실이므로 위 윤성택이 당회장 직무대행권한자로서 행사한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그의 달리 당회장 직무대행자에게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항변은 이유없다.

2. 원고 박윤식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월간지「현대종교」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현대종교」의 1983년 3월호에 『박윤식목사 그는 왜 이단인가』라는 제목 아래 24페이지에 걸쳐서, 같은 해 4월호에 『박윤식목사 그는 과연 이단이었다』라는 제목 아래 21페이지에 걸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집필, 게재하여 각 발행, 반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기사내용으로서,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노회 대성교회...신축한 지 5년만에 신도수 1만명을 헤아리는 매머드 교회가 되었으니 담임

목사 박윤식은 도대체 어떤 마력의 사나이인가...한번 대성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박윤식의 설교를 듣고나면 광적인 열성신도가 되다 못해 가정도 팽개친다는 대성교회와 박윤식의 스토리...」라고 서두에 기재하고,

(가) 원고 박윤식의 전력에 관하여, 「박윤식이 호헌총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에 의심스러운 바가 많고 신학교다운 신학교도 나온 근거가 없으며... 박윤식은 박창번, 방부신이 만들어낸 사제목사」이고, 「박윤식은 57년부터 59년 7월까지 2년간 박태선 전도관 전도사로 있다가 이성문제로 타의에 의하여 쫓겨났으며», 위 원고가 이모양이 낡은 사생아를 아들로 입적시킨 사실에 대하여 「왜 남의 아들을 입적시켰느냐... 모르는 사람은 처녀가 낳은 사생아를 자기 호적에 넣어주는 성자와 같은 행위라고 칭송할지 모르나 주변에서는 박군이 바로 박윤식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의 본처 김효순은 두 아들과 출가한 딸을 두고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제2신앙촌에서 살고 있다. 박윤식은 김여인에게 최근까지 그 여인의 요구에 못이겨 금전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하였고,

(나) 위 원고의 불법과 비리행위에 관하여, 「큰아들은 77. 10. 9. 재미동포 조모양과 혼인한 것으로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는데...1982. 12. 25. 또 다시 박모장노의 딸과 결혼식을 대성교회에서 거행했으니 눈하나 깜짝않고 2중혼인을 자행했다», 「위 원고와 간통하였다는 김X자 여인의 탄원서에 의하면 박윤식은 성령을 모독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으며, 선량한 교인들을 미혹하여 많은 여자들이 희생당하고 재산을 바치는 등 불법을 범하고 있다. 그의 간음행각은 상상을 초월한다...현금을 강요하고 억대가 넘는 호화주택에 교회교육관 내에 있는 침실은 아방궁같이 꾸며놓고 미제 식료품과 양주로 호의호식한다», 『큰손』이라는 제목 아래 「박윤식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뿌린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신도들이 단상에 낸 헌금은 박씨 것으로 기재없이 마음대로 썼다», 「그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는 시가 3천8백만원짜 리일제 도요다 크라운이었다...박윤식이 미국 갈 때마다 수만불씩 달러를 바꾸어 가지고 갔다...

돌리는 말에 의하면 박윤식의 집이 로스엔젤레스에 호화주택이 있고 그것도 여러 채이고, 워싱턴에도 있다고 하니 확실한 근거가 없어 딱잘라 의화도피를 했다 안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이미 30여만불의 외화를 유출해 갔으므로 박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신도들로부터 기상천외한 기도 부탁헌금을 받아 외국으로 빼돌리고 그 하수인으로 교인 몇명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그 진부를 가릴 수 없다», 「박윤식의 수하를 거쳐간 교역자들은 한결같이 그의 횡포와 욕설, 심지어는 구두발로 정경이를 차이까지 하는 등 짐승취급을 당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쫓겨나야만 했고, 쫓아낸 교역자들은 반드시 누명을 씌어 모략하는 것이다», 「그는 여신도들을 안심시킨 후 여신도들을 불러 안마를 하는데 여러 명이 팔, 다리, 머리를 하나씩 맡아 주무른다», 「김X자집사의 폭로에 의하면 박이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서 하는 말이 사탄권내에서 빼내는 역사, 인치는 역사라고 하면서 자기와 관계를 맺는 여자에게는 남편과 관계를 못하게 하는데 이를 금식이라고 한다지만 그 사실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박윤식은 두번씩이나 필자에게 거액의 무마비를 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고...박윤식은 여러 차례 주류는 4천만원 주어야, 비주류는 3천만원 주어야 된다고 했다는 풍문도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하였고,

(다) 위 원고가 내세우는 교리에 관하여, 「박윤식이 장안산과 지리산에서 3년6개월7일간 기도하면서 계시받았다는 비밀말씀의 정체는 한마디로 전도관 박태선과 통일교 문선명의 이론을 섞어 만든 혼합품이고...변찬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지금도 박윤식은 「변화의 말씀」이란 것을 내세워 신도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결국은 박윤식이 「아버지」라는 것은 통일교의 문선명의 「참아버지」에서 따왔고...「말씀의 승리가」를 읽고 있노라면 통일교나 전도관의 교리를 듣는 기분이 되는데 그것은 박윤식이 전도관, 통일교에 각각 2년씩 있었던 관계로 그 교리를 차용해다가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신앙양심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신도들도 이년 저



년 등 상스러운 욕을 듣고도 계속 추종하는 것은 말씀의 아버지에게서 떨어질까봐 겁나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라) 「현대종교」 4월호 끝부분에서 5월호에 실린 위 원고에 대한 기사의 소제목으로서 『눈사람처럼 불어오는 범죄행각의 내막』등을 나열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여 기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가 발행, 편집하는 「현대종교」 3, 4월호에 위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그 내용의 진실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널리 반포되는 출판물인 월간잡지의 성격에 비추어 위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은 물론, 위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종교적 순수성, 공익성과 종교사회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평근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내용은 위 원고에게 명예훼손이 됨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또 이 사건 기사내용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피고주장과 같이 오로지 종교적 순수성 및 공익성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피고의 항쟁은 이유없다.

그런데 피고가 위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방법은 금전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교육정도, 기독교계 내부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피고가 이 사건기사를 집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이 사건 기사내용의 태양 및 집필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아울러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위자료지급청

구와 함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사죄광고의 게재를 구하고 있지만, 위에 나온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적당한 처분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여지 아니한다.

3. 원고 교회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교회는 피고가 이 사건 기사내용을 집필함으로써 원고 박윤식이 당회장인 원고 교회가 마치 이단종교 내지 사교의 집단인 것처럼 묘사하여 한국내 굴지의 교회로서 대외적인 인상을 크게 손상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및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내용은 원고 박윤식의 불법과 비리, 개인적인 견해로서의 교리 및 성경 해석에 관한 것이고, 위 원고가 비록 원고 교회의 당회장이라 하더라도 원고 교회는 비법인단체로서 대표자인 위 원고와 별개의 독자적인 법적 주체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비행을 적시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이것이 원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윤식에게 위자료로서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 교회의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 박윤식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83. 9. 30.

재판장 판사 조 열 래  
판사 김 대 휘  
판사 주 한 일

# 드라마 작가의 동의없이 비디오테이프를 複製販賣하는 行為는 著作權侵害行為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손해배상청구소송

### 事實概要

드라마작가의 별도의 동의없이 방송국이 드라마 녹화작품을, TV방영이 아닌 비디오테이프 로 복사하여 판매한 行為는 작가들의 위 녹화작품에 대한 著作權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1審判決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 2 민사부(재판장 安文泰 부장판사)는 1983년 10월 21일, 韓雲史씨 등 한국방송작가협회(회장 兪湖) 소속 극작가 16명이 한국방송공사(대표 李元洪)와 KBS 방송사업단을 상대로 낸 「著作權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드라마가 연기자, 연출자, 기술진 등의 창작적 기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작품으로서 방송국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극본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작품에 대한 방송국측의 權利는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밝히고, 한국방송공사와 KBS 방송사업단은 방송사업단이 만들어 시판하고 있는 「TV문학관」 등 드라마 복제테이프 판매대금 가운데 10%인 2백88만6천6백82원을 작가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송작가들은 작년 12월 27일 KBS방송사업단이 1982년 1월부터 KBS방송프로그램인 「TV문학관」, 「현대입지전」, 「전설의 고향」, 「포도대장」, 「모닥불」 등으로 방영된 녹화테이프 69편을, 작가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복사해 국내의

에 판매했다고 주장, 손해배상금 5백77만3천3백64원을 지급하고 日刊紙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訴訟을 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작가들이 입은 손해는 복사필름 판매가격의 10% 정도가 타당하다며, 청구액의 절반만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손해배상으로 충분하므로, 사과광고까지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判決은 드라마 작가의 극본에 대한 복제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첫 판결이다.

### 判 決 文

- 사 건 : 83가합7 손해배상
- 원 고 : 1. 정 하 연  
서울 강남구 반포동 901  
반포 아파트 108동 106호
- 2. 이 철 향  
위 같은 동 우성아파트 102동 709호
- 3. 홍 승 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C동 1201호
- 4. 이 은 성(李恩成)  
서울 은평구 역촌동 36의 12
- 5. 박 찬 성(朴贊星)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삼익아파트 D동 1108호
  - 6. 이 상 민  
서울 강남구 반포 2동  
한신아파트 10동 240호
  - 7. 신 봉 승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83의  
325
  - 8. 한 운 사(韓雲史)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95의 27
  - 9. 김 항 명  
서울 강서구 화곡동 421의 9
  - 10. 임 충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 260동 708호
  - 11. 이 남 섭  
서울 동대문구 면목 1동 113의  
38
  - 12. 오 재 호  
서울 마포구 상수동 86의 17
  - 13. 이 재 우(李裁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신해청아파트 6동 112호
  - 14. 김 동 현  
서울 강남구 잠실 6동  
장미아파트 8동 401호
  - 15. 이 은 교  
서울 영등포구 개포동 288
  - 16. 박 성 조  
서울 강남구 삼성동  
AID아파트 9동 110호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손건웅
- 피 고 : 1.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대표자 사장 이 원 홍  
2. 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韓國放  
送事業團)  
위 같은 곳  
대표자 대표이사 이 덕 주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범 렬

변론종결 : 1983. 9. 16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하연에

계 금 58,000원, 같은 이철향에게 금 328,000원, 같은 홍승연에게 금 169,000원, 같은 이은성에게 금 794,500원 같은 박찬성에게 금 79,200원, 같은 이상민에게 금 9,800원, 같은 신봉승에게 금 437,300원, 같은 한운사에게 금 287,500원, 같은 김항명에게 금 194,000원, 같은 임충에게 금 32,700원, 같은 이남섭에게 금 137,900원 같은 오재호에게 금 33,100원, 같은 이재우에게 금 78,700원, 같은 김동현에게 금 55,082원, 같은 이은교에게 금 156,000원, 같은 박성조에게 금 11,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 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정하연에게 금 116,000원, (2) 같은 이철향에게 금 656,000원, (3) 같은 홍승연에게 금 338,000원, (4) 같은 이은성에게 금 1,589,000원, (5) 같은 박찬성에게 금 158,400원, (6) 같은 이상민에게 금 19,600원, (7) 같은 신봉승에게 금 874,000원, (8) 같은 한운사에게 금 575,000원, (9) 같은 김항명에게 금 388,000원, (10) 같은 임충에게 금 65,400원, (11) 같은 이남섭에게 금 275,800원, (12) 같은 오재호에게 금 66,200원, (13) 같은 이재우에게 금 157,400원, (14) 같은 김동현에게 금 110,164원, (15) 같은 이은교에게 금 312,000원, (16) 같은 박성조에게 금 22,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들은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

지 동아일보지상에 피고들이 방송작가인 원고들의 저작권이 있는 방송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V.T.R. 녹화필름으로 복제하여 시판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5호 활자로 된 사과광고를 2회에 걸쳐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제 1 항에 한한 가집행의 신고.

이 유 : 1. 원고들은 모두 방송극작가인데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케이.비.에스.티브이(KBS-TV)에 방영하기 위한 텔레비전 드라마의 극본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별지일람표 저작일란 기재의 각 일자경 같은 일람표 자기품명란 기재의 각 극본을 저작하여 피고 공사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 공사가 위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을 하는 한편 그 산하단체인 피고 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업단(이하 피고 방송사업단이라고 줄여 쓴다)으로 하여금 위 드라마를 브이.티.알 테이프(VTR TAPE)에 복사하여 위 일람표 판매량란 기재의 수량을 같은 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의 가액으로 각 판매케 한 사실, 피고 공사와 피고 방송사업단이 위와 같은 드라마를 복사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극본의 저작자인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그 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피고들이 저작자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위와 같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복사하여 판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피고 공사가 원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주고 방영승인을 얻은 작품을 극본화하거나 피고 공사가 요청하는 내용의 극본을 새로 써서 피고 공사에게 제공한 데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위 극본을 피고 공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며 피고 공사가 그 극본을 편집, 각색, 연출하여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을 완성한 이상 동 작품의 저작권은 피

고 공사에게 있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피고 공사가 원고들이 저작한 극본에 기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동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제 2 조 및 제 4 조에 의하면, 저작자라 함은 표현의 방법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지칭하고, 같은 법 제 5 조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로 보며, 그 개작의 한 형태로서 원저작물을 영화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형, 복제하는 것을 들고 있음이 명백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는 그 작성과정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상으로는 그 성질상 영화와 마찬가지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공사가 원고들이 저작한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연출자, 연기자, 촬영기사, 녹화담당자, 음악담당자, 장치담당자, 의상담당자 및 제작자 등의 창작적 기여(創作的 奇與)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종합저작물로서 그 제작자가 이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저작물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방법으로 개작한 것에 다름아닌 것이므로 위 극본의 저작자인 원고들로서는 위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에 대하여 제 1 차적인 저작권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피고 공사의 동 작품에 대한 권리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이른바 제 2 차 저작권), 원고들이 위 극본을 피고 공사의 촉탁 또는 주문에 기하여 저작하였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촉탁 또는 주문에 의하여 저작한 다음 이 사건 극본을 피고 공사에게 교부하는 행위에는 피고 공사로 하여금 동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여 그 녹화작품을 텔레비전 화면에 방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사가 연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별도의 동의없이 위 녹화작

품을 텔레비전 방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복사하여 반포하는 행위까지 승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공사와 피고방송사업단이 제1차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위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을 비디오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한 것은 원고들의 위 녹화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저작권사용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증인 심영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이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저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 내지 30퍼센트 상당액이, 레코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 내지 15퍼센트 상당액이 인세로서 그 저작권자에게 각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 관행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저작권 사용료가 지급되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사용료의 요율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저작권의 내용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저작권의 내용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정도 그밖에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피고들이 위 녹화작품을 복사 반포함에 있어서 제1차 저작권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저작권 사용료는 그 판매가격의 10퍼센트 상당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별지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한 같은 일람표 배상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동의없이 이 사건 텔레비전드라마의 녹화작품을 복사하여 반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신문지상에 게재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들의 저작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일단 제작과 방영의

승락을 받은 텔레비전드라마의 녹화들을 원고들의 동의없이 복사반포한 데 불과하여 그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더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명예에 관하여 입은 손해도 그다지 크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저작권 사용료에 상당한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니(원고들은 이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금전적 배상 외에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신문지상에 사죄광고의 게재까지 명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하연에게 금 58,000원, 같은 이철향에게 금 328,000원, 같은 홍승연에게 금 169,000원, 같은 이은성에게 금 794,500원, 같은 박찬성에게 금 79,200원, 같은 이상민에게 금 9,800원, 같은 신봉승에게 금 437,000원, 같은 한운사에게 금 287,500원, 같은 김항명에게 금 194,000원, 같은 임충에게 금 32,700원, 같은 이남섭에게 금 137,900원, 같은 오재호에게 금 33,100원, 같은 이재우에게 금 78,700원, 같은 김동현에게 금 55,082원, 같은 이은교에게 금 156,000원, 같은 박성조에게 금 11,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이후인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추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83. 10. 21.

재판장 판사 안 문 태  
판사 이 교 립  
판사 여 상 훈

### 報道된 記事內容을 立證할 자료가 없으면 신문은 訂正報道文을 掲載하라

서울고등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승진 부장판사)는, 신청인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회의 회장 李義香씨가 東亞日報社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청인의 주장을認容한 원심판결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나, 일부 부당한 내용까지도 게재를 命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신청인은, 東亞日報 1982년 5월 27일자 11면에 게재된 『불구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이란 제하의 記事는 허위날조된 불법기사이며, 東亞日報의 이 같은 보도는 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회의(李義香)는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입회비나 월회비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기독교단체들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기증받은 그림을 팔아 그 대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조속한 시일내에 事實대로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被申請人은, 위 1982년 5월 27일자 11면 『불구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청인이 청구한 訂正報道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反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건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신청인 李義香씨는 東亞日報(1982년 5월 27일자 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이란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피신청인 주식회사 東亞日報社를

상대로 1982년 6월 26일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5호 118면 참조). 중재결과 被申請인이 중재기일에 출석치 않아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1982년 7월 16일 주식회사 東亞日報社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신청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 1982년 11월 4일 1審에서 勝訴判決을 받았다(1심판결 내용은 「국내의 언론관계 판례집」 제1집 163면 참조).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1983년 11월 17일 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는 신청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 判決文

사 건 : 82나4188 정정보도  
신청인,피항소인 : 이 의 향(李義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67의 1  
피신청인, 항소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  
발행인 오 재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변론종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년. 11. 4 선고,  
82카27454판결  
주 문 : 1. 원판결 중 원판결 별지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별지(1)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발간의 동아일

보 제11면에 4단 16센티미터 크기로 『정정보도문(訂正報道文)』이라는 제목은 0호활자(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본보 82. 5. 27자 사회면 한국심신장애자선도 선교협의회(회장/이의향)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은 세로로 1호활자로 4단에 걸쳐 게재하며, 별지 제(2) 정정보도내용은 5호 활자로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합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의 기사란 중 좌측하단 부분에 『불구(不具)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會費)착복』이라는 제목하에 30여명의 신체장애자들이 같은 달 23일 이래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의 이의향(李義香)회장이 1981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YMCA)빌딩 405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심신장애자들에게 동양매듭, 동양화, 피아노, 일어 등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보장한다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비와 월회비 등을 받고도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취직 알선하지 않았으며, 심신장애자 강사들에게도 급료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활선도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유명화가의 그림을 찬조받아 그 판매대금을 착복하는 등, 장애자를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4일 동안 위 협회의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3단 8센티미터 크기의 기사가 3단 11센티미터 크기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언론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법원에 신청하기 위

하여는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사실적 주장이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내에 그 게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정정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비로소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함이 없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언론기본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월(제49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정정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와 피해자가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경우인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경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 조항은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월 이내에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먼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한 후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는 권리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보장한다고 선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비와 월회비 등을 받고도 강의와 취업알선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강사들에게 약정한 급료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부받은 찬조금이나 그림의 판매대금을 착복하여 말썽이 생겼기 때문에 30여명의 장애자들이 4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청구한 위 기사내용에 반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

건대, 원심증인 주재중, 김원, 손권인, 김진배, 원심 및 당심증인 이희명, 황호택, 당심증인 노영미, 이정희의 각 증인과 원심에서 한 형사기록검증결과(다만, 위 증인 김원, 손권인, 이희명, 노영미의 각 증인과 위 기록검증결과 뒤에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신청인은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알선하여 장애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1981. 7. 15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YMCA)빌딩 405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이 되었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위 협회에 가입하는 장애자들에게 각자의 희망에 따라 영어, 일어, 초상화, 매듭, 양복재단, 표구 등 자활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서 적당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홍보를 하였으나 실제에 있어 제반 준비의 미비로 그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홍보를 했던 대부분의 과목들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지 못하고 영어, 초상화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였으나 그 강의도 심신장애자인 강사나 그밖에 무료봉사를 자원하는 강사들에 의하여 무료로 며칠동안만 행해져서 그 내용이 부실하였고 장애자들에 대한 취업의 알선도 되지 못하여 그 실적이 극히 미미했던 사실, 위 협회에 출입하던 일부 신체장애자들이 신청인의 협회운영에 불만을 품고 1982. 5. 25 위 협회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위 기사내용과 같은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수사와 협회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시위를 벌이고 경찰서에 신청인을 고소까지 한 사실, 신청인이 위 협회를 찾아온 30여명의 장애자들로부터 자발적인 후원회비 명목으로 1인당 금 5,000원 내지 금 10,000원씩을 징수한 사실 등은 각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이희명의 증언부분과 위 기록검증결과 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 밖에 신청인이 고의로 위 교육과 취업알선 등의 댓가로 장애자들로부터 입회비와 월회비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장애자들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거나, 강사들에게 강의료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기독교단체등으로부터 위 사업명목으로

찬조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거나 유명화가들로부터 장애자들을 위해 기증받은 그림들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위 증인 김원, 손권인, 노영미의 각 일부 증언과 위 기록검증결과 의 일부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채용했던 증거들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협회의 설립 이래 사무실 임대비용등 대부분의 운영비를 사재로 충당해 온 사실이 엇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신청인은 언론기본법 제49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인격침해적인 허위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회복의 절차로서 이에 의하여 당해 언론기관이 무상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이 강요되어 그 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따라서 위 정정보도사유에 대한 기준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준부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기준에 맞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위 기준의 확정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자유와 보장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익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화하고 언론의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상충되는 요구가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첫째 보도내용에 있어 주요부분에 오류가 없는 이상 지역적인 내용에 일부 사실 아닌 기재가 있더라도 언론기관은 그 책임이 없고, 둘째 언론기관이 보도과정에 있어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을 때에는 비록 사후에 보도사실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이 없으며, 셋째 언론기관이 고의로 또는 그 진위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한 태도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등으로 언론기관에 현실적 악의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언론기관에 책임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일부 장애자들이 신청인의 비위를 규탄하면서 농성을 벌였다는 기사의 주요부분은 모두 객관적 진실이고 기사 장애자들의 주장을 인용한 사기, 횡령, 착복 등의

내용이 사후에 입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사항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이를 취재, 보도함에 있어 그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또 위 보도에 있어 피신청인의 현실적 악의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위 어느 점으로 보나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한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장애자들을 팔아 사기, 횡령 등을 하였다는 기사 부분이 위 기사의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위 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현대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언론으로부터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높이며 제한적이거나 언론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언론 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와 별도로 정기간행물등에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경우 그로 하여금 신속하게 원래의 기사의 범위내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권리를 마련한 것이므로 그 요건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의 기준들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은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한 점은 정당하나 위 별지목록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게재할 것을 명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별지(1)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피신청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1. 17.

재판장 판사 김 승 진  
판사 유 현  
판사 이 기 현

정 정보 도 문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에 관하여』  
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이라는 제목으로 위 협회 회장 이의향(李義香)에 대하여 게재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982. 5. 23. 수명의 장애자들이 위 협회 사무실에서 위 이의향이 장애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농성을 벌인 바 있고, 위 협회는 그 설립취지로 내세운 재활 기술교육과 취업알선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30여명의 장애자들로부터 후원비로 5,000원 내지 10,000원씩 받은 바 있으나 관계기관의 수사 결과 위 이의향은 협회의 대부분의 운영비를 사재로 충당해 왔음이 밝혀졌고 동인이 위 사업취지를 미끼로 회비를 받아 편취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횡령하고 화가들로부터 기증받은 그림들의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정정보도신청인 이 의 향

정 정보 도 내 용

제 목 : 1982. 5. 27자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회장 이 의 향)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내 용 : 본보 82. 5. 27자 11면 『불구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 제하의 기사는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회장 이의향)는 장애자회원들로부터 입회비와 월회비를 받은 바 없고, 자원봉사자들인 강사들을 통하여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왔으며, 이의향회장이 기독교단체로부터 찬조금을 받았거나 유명화가의 그림을 착복하는 등 사기행각을 한 사실이 없으며, 30여명의 장애자회원 및 강사들이 항의 농성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는 세계심신장애자선도전시장 및 희망의 전화(723-9088)를 통하여 출소자, 미혼모, 가정파탄자, 불우청소년,

고독한 노인, 심신장애자,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하여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무료상담을 실시하여 밝은 사회, 복지국가건설에 일익을

담당케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82. 9. 30

신청인 이 의 향

社会生活上 하나의 單位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訂正報道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事實概要

民事訴訟法上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當事者 능력이 인정된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民事地方法院 제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3년 11월 25일 신청인 대한예수교 오순절성결회 총회장 이진규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韓國福音新報社 발행인 나운몽을 상대로 한 訂正報道請求申請 사건에 대하여, 「言論基本法 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비록 그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被害者의 권리구제를 신속, 엄정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訴權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訂正報道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라도 그 당사자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기사내용을 바로 잡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被害를 입은 자에 대하여 反論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방적 報道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韓國福音新報에 공표된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訂正報道文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韓國福音新報 1983년 6월 5일자 광고란에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실행위원회 명의로 된 성명서가, 1983년 6월 12일자 3면 광고란에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명의로 된 성명서가, 1983년 6월 19일자 1면에 「갨블宣敎師 告發당해」 제하의 기사로 각각 게재되었다. 신청인은 위 성명서와 기사는 허위이며, 나운몽씨가 조작한 것으로, 나씨는 「오순절성결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韓國福音新報의 발행인임을 기화로 신청인이 총회장으로 있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와 宣敎師 갨블씨를 비방하는 성명서와 허위 기사를 게재하여 교단과 선교사 갨블씨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고, 1983년 7월 4일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0호 72면 참조).

중재결과,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1983년 7월 20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를 제

기, 1983년 11월 25일 勝訴했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치 않자 다시 1983년 12월 5일 法院에 訂正報道에 대한 간접강제신청을 제출, 법원에서 1984년 1월 12일 정정보도이행에 관한 결정이 나자 피신청인은 1984년 1월 22일자 韓國福音新報 1면에 訂正報道文을 게재하였다.

判決文

사 건 : 83카22003 정정보도청구  
신 청 인 :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의 12  
대연빌딩 5층

대표자 총회장 이진규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복음신보사  
서울 동대문구 면목6동 12  
법률상 대표자 발행인 나운몽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변론종결 : 1983. 11. 4.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는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국복음신보」 제1면의 중앙부분 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6호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이하 한국오성이라고 한다) 의원 교단에서 분리되어 나온 목사 수명의 집단으로서 소속교회의 숫자가 아직 교단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비록 그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치분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기관에 의하여 침해된 피해자의 권

리구제를 신속·엄정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미국 오크라호머주에 있는 국제오순절성결회(이하 국제오성이라고 한다)의 승인하에 국제오성과 교리를 같이 하는 서울시내 신림중앙교회등 11개 교회의 담임목사등이 조직한 종교단체로서 하나의 단일한 사회적 활동단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6. 5.자 및 같은 달 12.자 각 한국복음신보 3면 하단 광고란과 같은 달 19.자 같은 신문 1면 중앙에 『갬블선교사 고발당해』라는 제목 및 같은 해 7. 3.자 같은 신문 7면 중앙에 『피소된 갬블선교사 굵거 귀국』이라는 제목 아래, 이진규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오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교단은 국제오성으로부터 나운몽목사가 감독으로 있는 한국오성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갬블이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의 12 소재 대연빌딩 5층에 셋방을 얻어 위 나운몽목사의 한국오성에서 제명당한 목사 수명을 규합하여 조직한 유령교단인데, 제임스 갬블선교사는 위 유령교단을 선전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각기 나운몽목사와 결연되어 있던 교회들이 그와 결별하고 위 교단으로 돌아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에서도 100여 교회가 가입해 오고 있다는니 위 교단에 가입하는 교회에는 3,000,000원씩의 교회건립기금을 지원한다는니 하는 등의 허위선전을 하였다든 내용의 성명서 또는 기사가, 광고란의 성명서는 가로 약 33센티미터 세로 약 14센티미터 크기로, 기사는 가로 약 5~13센티미터 세로 6단 크기로 각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위 한국복음신보에 공표된 위 기사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나운몽목사가 감독으로

있는 한국오성에서 제명당한 목사 수명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정식교단으로 조직됨이 없이 위 한국오성이라는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유령교단일 뿐만 아니라 위 신청인측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위 나운몽목사의 한국오성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헐뜯는 갖가지 허위선전을 일삼고 있어 위 한국복음신보의 성명서 및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청구한 기사내용에 반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서울제 7호증(호소문), 서울제 8호증(경고문), 서울제 13호증(실행위원회 회의록), 서울제 17호증(신문), 서울제 25호증(편지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조연환, 김영민의 각 일부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편지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감제 4호증(합병동의서), 서울제 3호증(각종 행사 경과보고), 서울제 4호증(창립총회 회의록), 증인 김선옥, 조연환, 오상보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감제 3호(통첩), 소감제 9호증(통지서), 소감제 12호증(총회조직에 관한 법), 소감제 14호증(회의록), 서울제 7호증(호소문), 서울제 8호증(경고문), 서울제 9호증의 1, 2(각 신문), 서울제 13호증(회의록), 서울제 20호증(서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소감제 16, 17호증(각 공문)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각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한국오성이라는 교단은 한국기독교 독립교회연맹과 국제오성이 1979. 3. 30. 서울시내 위키힐 세라톤 호텔에서, 1) 한국기독교 독립교회연맹은 향후 「한국오성」이라는 명칭을 채택하고 한국에 있는 국제오성의 일부로 하며 오순절성결회의의 교리를 따른다. 2) 한국오성은 국제오성세계선교국 지시 아래 그 실행이사 와 아시아지역 감리사를 통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고 한국오성 감독은 그에 대한 국제오성 총감독의 특권과 우월권을 인정한다. 3) 국제오성은 한국오성의 일동일교회운동에 대한 영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라는 등의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한국기독교 독립교회연맹을 모체로 하여 국제오성의 승인하에 창설된 종교단체로서 위 교회연

맹의 실권자이던 나운몽목사가 교단 감독으로 선임되어 그 창설 이래 계속하여 위 교단을 운영하여 왔던 사실 그러나 위 교단내에 위 나운몽의 교단운영이 독단적이고 그 교리가 오순절성결회와는 맞지 않는 이단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 나운몽에 반대하는 목사들이 생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나운몽과 국제오성으로부터 위 교단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갬블과의 사이에도 같은 이유로 마찰이 계속되자, 국제오성 세계선교국 실행이사 티. 이. 언더우드와 아시아지역 감리사 존 파카는 1982. 10. 4. 나운몽의 교단운영상 독단으로 인한 교단의 비성장과 분열 및 교리상의 이단 등 이유를 들어 앞서 본 합의약정의 조항을 근거로 위 나운몽의 한국오성 감독 및 교단내에서 인수받은 목사로서의 지위에 대한 국제오성의 승인을 철회하고 나운몽과 국제오성과의 모든 공식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결정에 대하여 국제오성 세계선교국 정례이사회가 같은 해 12. 1., 국제오성 최고실행이사회가 같은 달 10. 각 이를 승인한 뒤 국제오성 총감독 레온 스투어트가 1983. 4. 26. 나운몽에게 더이상 오순절성결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통보함으로써 국제오성과 나운몽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된 사실, 한편 위 한국오성내에서 이진규, 김선옥 등 나운몽의 교단운영 및 교리에 반대하여 왔던 위 교단의 목사들이 1983. 1. 24. 국제오성 한국지부로서 한국오성의 조직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같은 달 31. 서울 성동구 자양동 소재 동서울교회에서 신림중앙교회등 11개 교회 담임목사 11명, 장로 1명, 위 레온 스투어트 국제오성 총감독, 티. 이. 언더우드 세계선교국 실행이사, 존 파카 아시아지역 감리사, 제임스 갬블선교사 등이 참석하여 한국오성조직에 관한 총회를 갖고 이진규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뒤 국제오성이 위 교단이 형성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 나운몽목사가 1983. 8. 22. 미국으로 건너가 국제오성 간부들과 화합한 결과 국제오성이 다시 나운몽을 한국오성의 감독으로 인정하고 나운몽과의 관계단절결정을 철회하였으므로 신청인 교단은 결국 유령교단으로 될 수 밖에 없으니 위 한국복음신보의 기사내용

은 진실에 합치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소울제16호증(신문), 소울제18호증(통지서), 소울제21호증의 1, 2, 소울제22호증(각 서신), 소울제23호증의 1, 2(각 신문), 소울제24호증의 1, 2(회의록), 같은 호증의 3(사진), 소울제26호증(번역문공증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영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국제오성이 위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나운몽과의 관계 단절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 신청인 교단이 유령교단으로 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는 잘못된 기사내용을 바로잡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일방적 보도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하고 정확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신청인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 유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한국복음신보에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1. 25.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여 상 규  
판사 이 형 하

정 정 보 도 문

주식회사 한국복음신보사 발행의 1983년 6월 5일자 및 같은 달 12일자 각 한국복음신보 3면 하단 광고란과 같은 달 19일자 같은 신문 1면 중앙에 『갬블선교사 고발당해』라는 제목 및 같은 해 7월 3일자 같은 신문 7면 중앙에 『피소된 갬블선교사 급거 귀국』이라는 제목하에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와 기사가 보도되었다.  
즉 이진규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교

단은 국제오순절성결회로부터 나운몽목사가 감독으로 있는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 파송된 선교사 제임스 갬블이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의 12 소재 대연빌딩 5층에 셋방을 얻어 위 나운몽목사의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에서 제명당한 목사 수명을 규합하여 조직한 유령교단이다. 제임스 갬블선교사는 위 유령교단을 선전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과거 나운몽목사와 결연되어 있던 교회들이 위 교단으로 돌아오고 있고 감리교회에서도 100여 교회가 가입해 오고 있다. 위 교단에 가입하는 교회에는 3백만원씩의 교회건립기금을 지원한다고 허위선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교단은 국제오순절성결회와 교리를 같이 하는 서울 시내 신림중앙교회등 11개 교회의 담임목사들이 조직한 종교단체로서 그 실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교단의 선교사 제임스 갬블은 위 교단을 선전하고 교세를 확장하기 위하여 위 기사등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타교단의 교회들을 유혹하는 허위선전을 한 사실이 없다.

신청인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9의 12  
대표자 총회장 이 진 규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決定

사 건 : 83타20389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채 권 자 : 대한예수교오순절성결회  
서울 관악구 봉천 4동 869의 12,  
대연빌딩 5층  
대표자 총회장 이 진 규  
채 무 자 : 주식회사 韓國福音新報社  
서울 동대문구 면목6동 12

법률상 대표자 발행인 나 운 몽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 중 삼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83마22003 정정보도신청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69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채무자가 발행하는 「한국복

음신보」 제 1면의 중앙부분 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6호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라.

2. 만일 채무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전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위 기간만료의 익일부터 이행 완료시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하루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984. 1. 12.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여 상 규  
판사 이 형 하

公共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眞實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없으므로 慰藉料를 支給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위자료청구소송

事實概要

잡지에 게재된 수기가 진실에 바탕을 두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된 것이 아니고, 그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기사로 인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송재현 부장판사)는 1984년 4월 4일, 原告 李日載(변호사)씨가 被告 주식회사 學園社(대표이사 김영수)를 상대로 제소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잡지에 게재된 수기내용이 이미 일간신문지상에 동일한 기사내용으로 보도된 후에 게재된 것이며, 수기의 일부 형식을 취하고 과격한 표현을 수정하여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과는 다른 것이고, 원고에게 확인하거나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게재하여, 이를 반포함으로써 原告에 대한 사회적·직업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原告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判決했다.

被告는 被告가 발행하는 월간여성지 「主婦生

活」(1982년 7월호 pp.182 - 191)은 「한국 최초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중학 중퇴 기능공의 법정투쟁기」, 「위대한 소시민의 승리였습니다」 제하의 수기를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수기의 필자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인 原告가 위임받은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기필자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提訴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기타 분쟁에 관한 것으로, 수기 중간 중간에 「변호사 잘못 드러나 나는 승소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범몰라 이용당한 꼴」 등의 소재 목이 붙여져 있었다.

原告 李日載변호사는 위 수기를 게재, 반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 被告 주식회사 學園社를 상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 1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被告는, 위 주부생활 잡지에 게재된 수기내용은 公共의 이익에 관한 진실에 관한 것이므로,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수기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被告가 위 수기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어 면책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被告가 위 수기를 진실에 터잡아 오로지 公共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하였다거나, 被告가 그 수기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被告는 위 수기를 게재하여 이를 반포함으로써, 原告에 대한 사회적, 직업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原告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금 1천만원을 原告에게 지급하라고 判決했다.

현재 쌍방이 모두 抗訴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判 決 文

사 건 : 83가합3123 위자료등  
원 고 : 이 일 재  
서울 중구 정동 11의 3  
풍전빌딩 202호  
피 고 : 주식회사 學園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김 영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 기

변론종결 : 1983. 3. 21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1.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피고(1983년 8월 8일 상호 변경전에는 주식회사 주우이었다)가 월간 여성지인 『주부생활』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과 위 『주부생활』 1982년 7월호에 소의 최인천의 수기가 게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의 1,2(잡지표지와 내용)의 기재와 같은 강제11호증의 6(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잡지 1982년 7월호의 182면에서 191면에 걸쳐 『한국 최초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중학 중퇴 기능공의 법정투쟁기』, 『위대한 소시민의 승리였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게재된 위 수기의 내용은 위 최인천으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인 원고가 위임받은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인천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임하였던 동인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송의 목적물인 위 소외인이 점유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66의 13의 1필지의 토지에 얽힌 분쟁 등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잘못 드러나 나는 드디어 승소했다』, 『수임변호사가 날짜까지 변조해가며 나를 패소케 하였다』,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법률라 이용당한 꼴』 등의 소재목이 위 수기의 중간 중간에 붙여져 게재된 사실, 위 수기에는 (1)원고가 위 최인천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업무 수행하면서 저지른 잘못에 관하여 「내 땅을 찾도록 부탁한 변호사는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악이용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커녕 그동안 내가 해놓은 온갖 노력조차 허사로 돌아가게 망쳐 놓았다」, 「세상의 양심이 아무리 메달라 버렸다 할지라도 평화의 수호자로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할 법조인이 그것도 억울하고 무지한 사람의 일을 변호해 주어야 하는 변호사가 어쩌면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을 유리하게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중등으로 떠나기전 법원에 제출했던 두가지 소장을 변호사가 스스로 취소해 버리고 항소조차 안했음을 알았다」, 「도대체 판사까지 지낸 변호사가 왜 그랬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손님을 고의로 불리한 상황에 몰아다 놓은 흔적이 역력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엉뚱하게 점유기간을 1976년 집이 철거된 때까지로 하기 위해 최초단지공사는 1975년에 했다고 허위로 준비서면을 냈던 것이다」, 「원고측인 변호사가 관할법정에

전혀 출석도 안하니 피고인 서울시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 들였고 준비서면으로 변론조차 한마디 안하였으며 그외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있어서도 아무런 처리를 안하며 동시에 피고측에 유리하도록 일을 끌어주는 역할까지 했으니 이를 두고 어떻게 사회정의 실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하겠는가」 등의 기재부분과, (2)위 서울 용산구 한남동 66의 13의 1필지의 토지를 둘러싼 원고의 비리에 관하여, 「주유소측의 변호사와 이 변호사(이 사건 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일에 전혀 관계없는 우리집 땅을 침해함으로써 해결을 보기로 되었던 것이다」, 「죽 나의 터로 7평만큼 밀고 들어 오면 주유소측도 옆집측도 어느 쪽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구청 직원과 그들 모두가 서로 짜고 매수신청서를 내게 오히려 반려해 버린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대로 옆집과 주유소와 편의상 합의한 대로 어떻게든 나의 법률상 권리를 해치고자 온갖 일을 다 했던 것이다」, 「떠나기 전 나는 이일재 변호사에게 토지인도청구사건의 소송을 대리해 달라고 위임해 놓았다. 나는 이 변호사가 그 일에 가담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오히려 내가 그집에서 2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다른 어느 변호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 믿고 그에게 위임했던 것이다」, 「애당초 내 건을 수임한 것이 위장 수임이었고 몇몇 관계자들과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등의 기재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수기가 게재된 위 잡지 1982년 7월호 100,000부 내외를 발행하여 전국에 반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최인천의 수기를 그가 발행하는 위 주부생활 잡지에 게재하여 이를 반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로서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부생활 잡지에 게재된 위 최인천의 수기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진실한 것이므로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수기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피고에게는 이로 인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3호증의 5(판결), 각 기재된 일자의 신문기사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내지 4(각 신문), 증인 박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3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와 앞에서 든 강제11호증의 6,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호증의 5(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1(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6, 7(각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백승철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의 최인천은 1981년 10월 8일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가)원고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위 소외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80나3246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을 수임하여 그 소송업무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결과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 250,000원 상당의 손해와 (나)원고가 또한 위 최인천으로부터 위 소외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을 수임하고도 소송 위임장도 내지 않고 소각하판결이 났는데도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소송위임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 320,000원 상당의 손해등 합계 금 770,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소1200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년 6월 10일 같은 법원으로 부터 위 (가)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최인천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나)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위 최인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1980년 9월 26일 원고에게 위임하면서 착수금 500,000원 중 금 3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전혀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위 최인천이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게 하여 원



고가 위와 같은 위임사무처리사무를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위 최인천이 지급한 착수금 320,000  
원과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한 금 370,000원  
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  
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1982년 6월 11  
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변호사 태만으로 패소  
하면 수입료 돌려줘야』라는 제목으로 「위 최인  
천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송수행을 잘못했다  
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위 토지인도청구사건(서  
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에 있어서 한번도  
법정에 나가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1심  
에서 소각하판결을 받아 패소했는데도, 원고는  
항소조차 하지 않고 이를 확정시켰으며, 위 서  
울고등법원 80나3246호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함  
에 있어서는 예비적 청구는 취하하고 영뚱하게  
상대방인 서울특별시측에 유리한 준비서면을 제  
출하여 이것 역시 패소토록 했다고 주장했었  
다」, 「위 최씨(최인천)는 이 변호사(원고)를 상  
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두사건의  
수입료 금 570,000원(토지인도사건 320,000원,  
손해배상사건 250,000원)과 위자료 등 금 770,  
000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중 금 370,000  
원(토지인도사건 수입료 320,000원, 위자료 금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  
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  
가 보도되었고, 그 다음날짜 조선일보, 서울신  
문 등 각 일간신문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  
었으며, 위 중앙일보에서는 신문사설에서까지  
위 사건을 취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보도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위 주부생활 잡지의 독  
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다는 요청이 있자 피고 회사 편집부에서는 위 최인  
천의 수기를 『주부생활』 1982년 7월호에 실기로  
결정하는 한편 위 편집부 기자인 소외 유신숙으  
로 하여금 위 최인천의 수기를 받아오도록 지시  
하여 위 유신숙이 1982년 6월 17일경 위 최인천  
을 찾아가 이를 부탁한 사실, 위 유신숙이 같은  
해 6월 21일경 위 최인천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분량이 많고 문맥이 맞지 않으며 원  
고에 대한 과격한 표현이 많아 위 최인천의 동의  
를 얻어 위 수기의 요지와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  
는 범위내에서 문장을 다듬고 수정을 한 후 타이

들과 소제목을 붙인 다음 피고 회사에서는 같은  
해 6월 25일경 위 최인천의 수기가 담긴 『주부생  
활』을 같은 해 7월호를 인쇄하여 같은 해 7월 1  
일 이를 전국 일원에 반포한 사실은 이를 각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강제1호증의 1, 2, 강제  
11호증의 5, 6, 을제1호증의 6, 7과 각 성립에 다  
툰이 없는 강제4호증(결정), 강제5호증의 1(판  
결), 같은 호증의 2(확정증명원), 강제11호증의  
4(진술조서), 강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등본),  
각 원본 존재 및 성립에 다툰이 없는 강제8호증  
의 5(변론조서 사본), 같은 호증의 6(판결사  
본), 강제9호증의 6, 강제10호증의 4(각 변론조  
서 사본), 각 증인 박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  
립이 인정되는 강제8호증의 2(메모), 같은 호증  
의 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 강제9호  
증의 2(초고), 같은 호증의 5(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 강제10호증의 3(소송위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80  
년 9월 26일경 위 최인천으로부터 위 소외인의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수  
임을 한 후 위 최인천으로부터 재판부의 석명촉  
구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위 사건관계기록과 원  
고가 역시 위 최인천으로부터 수입한 위 소외인  
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80나3264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  
80가합5058호 사건은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  
비적 청구와 그 청구가 중복되어 2중의 소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 위 최인천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사건의 1980년 10월 16일 변론기일  
에는 위 최인천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되 재판  
부의 석명촉구가 여전하면 더 이상 위 사건 소송  
수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짓기로 합의하고  
위 최인천이 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으나 위  
소송이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중  
복소송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재판  
부의 석명촉구가 있자 위 최인천은 2중의 소로  
서 부적합하다는 원고의 의견에 동의하여 원고  
는 위 사건의 소송이행을 하지 않고 나머지 착수  
금을 받지 않는 대신 위 최인천이 별도로 서울특  
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80구438호

토지지목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을 수입하여 이  
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소송업무를 수  
행하였으며, 위 80가합5058호 사건은 1980년 11  
월 13일 원고가 예상한 대로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중복제소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81가소12004호 사건의  
제1심판결 중 그 사건의 피고인 원고 패소부분  
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그 항소법원  
인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3년 3월 25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위 최인천의 청구를 기각하  
는 판결(같은 법원 82나1235판결)을 선고하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일간신문 지상  
에는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소12004호 손해  
배상청구사건 중 위 최인천의 패소부분이 있었  
다는 점 및 그 내용이 보도되었음에 반하여 위  
주부생활 1982년 7월호에는 위 수기의 내용에는  
물론 그밖의 편집자의 주해등 형식에 의하여서  
도 이러한 점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사실 및 피  
고는 위 수기의 게재에 즈음하여 위 수기의 내용  
의 진실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확인하지는 않았  
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  
에 위 수기의 내용이 일간신문 지상에 보도된 기  
사내용보다 더 나아가 원고가 상대방 대리인과  
공모하여 의뢰인인 위 최인천에게 불이익을 주  
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합쳐  
보면 피고의 위 수기 게재가 이미 일간신문 지상  
에 위와 같은 기사가 보도된 후에 된 것이고,  
「주부생활」잡지의 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  
을 뿐만 아니라 수기의 형식을 취하고 과격한 표  
현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과는 다른 것이고 원고에게 확인하  
거나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최인천이 위 소송과정에서 위 수기에 서술한  
내용이 포함된 주장을 하여 그 주장이 법원에 의  
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져 원고가 전부 패소한 판  
결이 선고확정된 것처럼 그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한 것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가 위 수기를 진실에 터잡아 오로지 공공의 이익  
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수기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작성자 또는  
진술인의 이 점에 관한 견해를 기재 또는 진술한

것에 불과한 을제1호증(불기소결정), 같은 호증  
의 2(경위서), 같은 호증의 4, 5(각 진술서), 같  
은 호증의 6, 7(각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호증  
의 9(각 결정), 같은 호증의 10(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강제11호증의 5, 6(각 피의자 신문조  
서)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백승철의 일부 증언  
은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러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가 발행하는 「주부생활」잡  
지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최인천의 수  
기를 게재하여 이를 반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직업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이로 인  
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위자료 액  
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  
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원고의 법조계에서  
의 위치 및 저명도, 피고가 이 사건기사를 집필  
하게 된 목적 경위 및 위 잡지의 발행부수,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 등 제반사정을 참작  
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을 지  
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  
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  
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984. 4. 4.

재판장 판사 송 재 현  
판사 공 재 한  
판사 이 현 승

# 他人의 名譽를 毀損해도 公共의 利益에 관한 것이고, 眞實이라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不法行爲가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소송

### 事實概要

보도기관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도기관으로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 보도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8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1984년 4월 11일,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 대표 李義香씨가 東亞日報를 상대로 낸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한 특별한 조사 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감안할 때, 취재근거에 대한 고도의 확실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 원고 李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李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원고 李義香씨는 東亞日報(1982년 5월 27일자 11면)에 농성사진과 함께 게재된 「不具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會費 착복」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1982년 7월 16일 사과문 게재와 함께 배상금 10억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의 기사로 원고 李義香씨의 명예 및 신용이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법성이 없다고 전제, 문제의 기사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게재된 것이 명백하여 설사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

지 않더라도, 보도기관으로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은 東亞日報에 동 기사가 게재되자, 원고 李씨가 지난 1982년 6월 2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으나(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5호 118면 참조), 피신청인측의 불응으로 불성립되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는 1982년 11월 4일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東亞日報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 東亞日報는 1982년 12월 11일자 1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東亞日報는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1983년 11월 17일 1심판결 정정보도문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받았다.

### 判 決 文

사 건 : 82가합4734 정정보도청구

원 고 : 이 의 향 (李義香)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1367의 1

피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상 기, 오 재 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변론종결 : 1984. 3.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피고 발간의 동아일보 11면에 5단 16센티미터 크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사과문을 게재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1.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82년 7월 16일 본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소장에 원고를 「이의향」으로 표시하고 변론이 개시되어 동인이 소송행위를 하여 오다가 1983년 11월 16일에 이르러 원고를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로 변경하고 그 대표자를 이의향으로 하는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였는 바, 무릇 당사자 표시의 정정은 최초의 당사자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에 오기 또는 불확정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사자의 변경은 소의변경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변경절차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 원고를 자연인 이의향으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로 표시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은 전혀 인격을 달리하는 당사자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하 원고 이의향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본건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피고가 발행하는 1982년 5월 27일자 동아일보 제11면의 기사란 중 좌측 하단 부분에 「불구도 서러운데...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이라는 제목하에 3단 8센티미터 크기의 별지 제1목록 기재기사가 3단 11센티미터 크기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기사는 그 내용과 같은 농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농성자들의 주장을 기사화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정확한 의미내용에 불구하고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본문의 내용 외에 특히 제목 및 전문의 내용, 배치, 활자의 크기, 사진의 유무, 내용, 본문의 길이, 게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것인 바, 본건 기사가 비록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장애자들이 1982년 5월 27일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과 위 농성자들의 주장을 기사화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제목에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가 마치 장애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속여 회비를 착복하였다는 단정적인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동아일보가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대신신문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본건기사가 그 사회면에 게재되어 막대한 수의 독자에 대하여 발행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넓게 보도 공표됨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사과문의 게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사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주요부분에 오류가 없고, 그 보도과정에서 있어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43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강제44호증(판결), 강제45호증(확정증명원), 을제2호증의 1 내지 4(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희명, 등 김석진의 각 증언에 당원 82다카27454 정정보도사건 기록에 대한 검중결과(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심신장애자들에게 재활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알선하여 장애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1981년 7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기독교청년회관

(YMCA) 빌딩 405호실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이 되었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위 협회에서 장애자들에게 각자의 희망에 따라 영어, 일어, 초상화, 동양매듭, 표구 등 자활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적당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 있어 당초부터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홍보를 했던 대부분의 과목들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영어 초상화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였으나 그 강의도 심신장애자인 강사나 그밖에 무료봉사를 자원하는 강사들에 의하여 그 며칠동안만 행하여져서 그 내용이 부실하였고, 장애자들에 대한 취업의 알선도 되지 못하여 그 실적이 극히 미미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홍보를 보고 위 협의회를 찾아온 장애자들에게 위 협의회에 가입하면 강좌를 무료로 해주고 취업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중 30여명으로부터 입회비 명목으로 금 5,000원 내지 10,000원씩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취업의 알선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협의회가 주관한 초찬기도회, 심신장애자를 위한 기도회, 1일찾집 등을 통하여 들어온 수입금도 장부를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실제 장애자를 위한 사업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데 불만을 품은 소외 김진태등 장애자들이 1982년 5월 25일 위 협회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위 기사내용과 같은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여 당국의 수사와 협회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시위를 벌이고 경찰서에 원고를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피고 회사의 사회부 기자 소외 황호택은 같은 달 26일 상사로부터 위 농성사건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에 임하여 조사중인 위 고소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어 위 농성현장으로 가 농성중인 30여명의 장애자들로부터 그 호소를 들은 다음, 그중 8명으로부터는 각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한사람씩 입회동기 및 경위, 입회비를 낸 사실, 기만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 등을 청취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을 청취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택등으로 수차 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 부재중이라고 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위 장애자들의 주장에 확신을 갖고 본건 기사를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강제43호증의 1, 2 강제44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위 증인들이 일부증언 및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밖에 원고가 강사들에게 강의료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기독교단체 등으로부터 위 사업명목으로 찬조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거나, 유명화가들로부터 장애자들을 위하여 기증받은 그림들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였다 등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위 을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협의회 설립 이래 대부분의 운영비를 사재로 충당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행위에 관련된 자에 있어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위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바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에 고도의 확실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개인의 명예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보도기관을 위촉시켜 민주정치의 지주가 되는 보도의 자유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책임조각 사유로서의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용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 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기사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된 것임은 본건기사의 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나 본건 기사 중 원고가 장애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착복하였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준 점에 관하여는 그것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만큼 본건기사의 단순한 부수적 내용으로 경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이것이 전적으로 진실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그 입증의 부족하다 할 것이나(결국 본건 기사 중 진실에 합치되는 부분은 장애자들이 농성을 벌였다는 사실과 회비를 받고도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직도 시키지 않았다는 부분 뿐이다), 위 황호택은 전시 인정과 같이 본건 기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장애자들의 진술의 개략을 듣고, 실제 위 농성현장에 임하여 위 장애자들로부터 그 주장을 청취한 후 그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본건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명예훼손은 그 책임이 조각되어 본건 기사에 의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

는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그밖에 피고회사 소속의 기자 3명이 1982년 8월말경 위 협의회 사무실로 찾아와 직원들의 근무 모습과 사무실 구조 등을 촬영하는가 하면 같은 해 7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종용에 의하여 서울시경 소속 형사 2인이 찾아와 원고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으니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 소속의 기자나 서울시경 소속 형사 2인의 직무집행이 사회상규를 벗어나 위법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회명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84. 4. 11

재판장 판사 김 중 화  
판사 소 순 무  
판사 노 영 보

### 報道事實을 인정할 證據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訂正報道文을 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신문보도 정정보도 명령사건

#### 事實概要

보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새한신문(1983년 12월 5일자 3면)은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 제하로 「복지고등학교 교장 安滄蘭씨가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 발부과정에서 평균 60점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지원서를 발부치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자, 노재현 교감등 3학년 담임 4명이 안교장에게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안교장은 당초 방침대로 강행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학부형들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발급하도록 하자, 학교측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감사가 노교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으나 노교감이 이에 불응하자, 노교감을 직위해제처분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신청인 복지고등학교 교장 안채란氏는 저작 학생에게 응시지원서를 발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노교감의 징계사유는 직무이탈, 인사발령에 항명, 현직교사로서의 배임행위, 소속상관에 대한 신상모독행위 등이 지 결코 학교장의 부당한 지시에 항의하여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한신문은 노교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신청인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1983년 12월 21일 言論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2호 94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2차 중재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 중재가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1984년 1월 16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4년 5월 25일 「피신청인은 노재현 교감이 복지고등학교 교장 安滄蘭의 84년도 대입학력고사원서 발부 제한지시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이로 인하여 물의가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보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한신문에 게재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신청인은 1984년 6월 14일 항소하고서 새한신문 1984년 7월 16일자 3면에 1심판결에 의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노승두 부장판사)는 1985년 8월 16일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피신청인은 다시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재판장 정기승 대법원판사)는 1986년 1월 28일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 확정하였다.

1審 判決文

사 건 : 84카1598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신청인 : 안 채 란 (安滄蘭, 복지고등학교장)  
 의정부시 용현동 산 33의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동 신창  
 동

피신청인 :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새한신문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5  
 대표자 이사 (발행인겸 편집인)  
 류 형 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수

변론종결 : 1984. 4. 27.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새한신문」 제 3면 중앙부분 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신청인 이름은 6호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복지고등학교나 복지고등학교장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교육에 공용된 영조물 시설 또는 그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1984. 1. 16.자 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의 신청인은 복지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자연인 안채란 임이 명백하므로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

다(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라 할 것이므로 그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하겠다).

2.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12. 5.자 새한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 3 생에 학력고사 원서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라는 제목 아래, 복지중고 안채란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하여 노재현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다. 안교장은 이같은 사태를 노재현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측은 10. 3.자로 동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징계위원회를 소집,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노교감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교련은 노교감의 교련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약 5 내지 16센티미터, 세로 6단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학교법인 복지학원으로 부터 억울하게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을 받고 교권침해를 당한 신청의 노재현 교감의 정식절차를 거친 교권침해진정에 대하여 여러가지 증빙자료와 교권과장 조윤철을 1983. 10. 7. 및 8. 양일간 복지고등학교에 파견,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 사건발생의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후 진상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위 기사내용에 반하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의 84년도 학력고사 원서발부 제한 지시에 대하여 노재현 교감이 항의를 하고 이로 인하여 물의가 발생되었음을 이유로 노교감을 파면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소울 3호증(재심청구서) 소울6,7호증(각 진정서), 소울 8호증(진상

조사실시), 소울 9호증(진상조사보고), 소울23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 내용, 증인 노재현의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보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7, 13호증(인사발령통지서), 소갑14호증(처분사유 설명서, 소울2호증과 같다.), 소갑16호증(통지서, 소울4호증과 같다.), 소갑17호증(재심청구서, 소울3호증), 증인 김형두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4호증(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신청), 소갑5호증(제청승인), 소갑6호증(이사회 회의록), 소갑11호증(징계의결서), 소갑12호증(징계회의록), 소갑15호증(결과보고), 소갑18호증(재심회의록), 소갑19호증(징계재심결정문)의 각 기재 내용, 증인 김형두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의 노재현 교감은 1983. 10. 4. 신청의 학교법인 복지학원으로부터 교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대한교육연합회 등 관계기관에 복지중고등학교장을 비방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결과적으로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게 된 사실, 이에 신청의 복지학원은 1983. 10. 24.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바, 노교감의 위 진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분에 배치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위 노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을 결정하였고, 노교감의 재심청구 역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 발행의 정기간행물인 새한신문에 게재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5. 25.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이 상 규  
판사 이 형 하

정 정 보 도 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발행의 1983년 12월 5일자 새한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라는 제목하에 복지중고 안채란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하여 노재현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다. 안교장은 이 사태를 노재현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거부당하자 학교측은 10. 3.자로 동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징계위원회를 소집,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 사유로 노교감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교육연합회는 노교감의 교권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노교감은 1983. 10. 4. 학교법인 복지학원으로부터 교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부족, 근무태도의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대한교육연합회 등 관계기관에 복지중고등학교장을 비방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적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 이에 복지학원은 1983. 10. 24.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바, 노교감의 위 진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분에 배치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위 노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을 결정하였고, 노교감의 재심청구 역시 각하되었으므로, 노교감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안교장이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를 발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 그 부당함을 항의한 노교감을 파면한 것인 양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984. 5.

정정보도 신청인 안 채 란 (복지중고등학교장)  
의정부시 용현동 산 33의1

2審 判決文

사 건 : 84나2524 신문보도정정보도명령  
신청인, 피함소인 : 안 채 란(복지중고등학교장)  
의정부시 용현동 산 33의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신창동  
피신청인, 함 소 인 :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5  
대표자 이사(새한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박 일 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하죽봉  
이정훈, 김두식

변론종결 : 1985. 7. 12.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5. 25. 선고  
84카1598 판결.

주 문 :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새한신문」 제3면 중앙부분 중 세로 6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 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6호활자로 그 좌측에 6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먼저, 피신청인은, 이 건 신청인인 복지중고등학교나 복지중고등학교장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교육에 공용된 영조물시설 또는 그 관리자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다투나, 이 건 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신청인은 복지중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자연인 안채란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본다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라도, 학교는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 하겠다).

2.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 12. 5.자 새한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 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라는 제목 아래, 복지중고 안채란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하여 노재현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다. 안교장은 이 같은 사태를 노재현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이를 거부하자 학교측은 10. 3.자로 동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징계위원회를 소집,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노교감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교련은 노교감의 교권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약 5 내지 16센티미터, 세로 6단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도기사에 적시된 복지중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은 위 보도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위 기사 중 교장인 신청인 개인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라 「학교측의 부당한 파면」이란 내용의 기사부분에 의하여도 위 학교 교장직에 있는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위 신문에다 신청인의 반박문(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보도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함에 대하여, 첫째로, 피신청인은, 위 보도기사

는 공공단체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산하 교권옹호위원회의 공개회의를 충실히 보도한 것에 다름아니므로, 이 건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보도기사의 내용과 형식 자체를 검토해 보더라도, 위 기사는 위 위원회의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신청인은, 위 보도기사는 진실한 것이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신청인측 소명자료인 소울제 3, 6, 7, 8, 9, 10호증, 제11호증의 1, 2, 3, 제12호증의 1 내지 7, 제14, 15, 21, 23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노재현, 당심증인 이구일, 이남우의 증언과 그 반대증거인 신청인측 소명자료인 소갑제 4, 6, 9, 11, 12, 14, 15, 18, 19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3, 제22호증의 1, 2, 제23, 24호증, 제26호증의 3, 4, 5의 기재, 원심증인 김형두, 당심증인 이필수의 각 증언, 그리고 당원의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등을 대비, 검토하여 보면, 반드시 위 보도기사가 진실에 합치되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선뜻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새한신문에 별지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이 건 신청은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정정보도문의 내용에 있어 당원과 일부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8. 16.

재판장 판사 노 승 두  
판사 성 기 창  
판사 이 창 구

정 정 보 도 문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발행의 1983년 12월

5일자 새한신문 3면 중앙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란 제목하에 복지중고 안채란 교장이 평균 60점 이하의 저학력 고3생에게는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가 9월 28일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자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하였는 바, 안교장은 이 사태를 노재현 교감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한 후, 학교측은 10월 3일자로 동인을 직위해제하고, 10월 22일 징계위원회에서 동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안교장이 저학력 고3생에게 지원서를 발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은 학생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노교감의 파면도 교장에게 항의한 것을 사유삼은 것이 아니라 평소의 직무태도불량등을 사유삼은 것이므로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1985. 8.

정정보도 신청인 안 채 란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85다카1973

신 청 인 : 안채란(복지고등학교장)

의정부시 용현동 산 33의 1

피신청인 :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새한신문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5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류 형 진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년 8월 16일 선고 84나2524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을 본다.

(1) 언론기본법 제49조, 제5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법원에 정정보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당사자 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 등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인 안채란은 피신청인이 설치 경영하는 새한신문의 왜곡된 사실보도로 말미암아 복지고등학교장으로서의 신청인의 명예와 권위가 훼손 추락되었음을 이유로 정정보도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그 신청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자연인으로서 정정보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위 새한신문의 사실보도내용은 자연인인 신청인이 아니라 복지고등학교라는 단체에 관한 것이어서 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위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복지학원 또는 복지고등학교가 될지언정 신청인 개인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보도내용은 소론 주장과는 달리 복지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에 관한 것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가사 신청인이 위 사실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흠결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니 위 논지는 이유없다.

(2) 언론기본법 제49조 제 1항에서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지의 여부는 피해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원심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3년 12월 5일자 새한신문에 『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서발부 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라는 제목 아래 복지중고 안채란 교장이 동교 졸업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자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

록 하였는데 안교장은 이러한 사태가 노재현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으나 동인이 불응하자 학교측은 동인을 직위해제하였다가 파면에 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을 기재한 사실을 확정된 후 위 보도기사에 적시된 복지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은 위 보도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된 보도내용에 의하면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된 복지고등학교 교장인 신청인은 부당하게 학력고사 지원서 발부를 제한하고 이에 항의한 교감을 학교측으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직위해제 및 파면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신청인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위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으니 언론기본법 제 49조 제 1항에 규정된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원심판시는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점을 본다.

언론기본법 제49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충실한 사실보도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례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실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소론주장과 같이 교련옹호위원회의 내용에 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점을 본다.

언론기본법 제49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

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위 규정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거니와, 언론사측으로서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절로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신청인의 보도내용이 반드시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목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며, 그 판단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으니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년 1월 28일

□

재판장 대법원판사 정 기 승  
 대법원판사 전 상 석  
 대법원판사 이 회 창

# 事件名과 請求趣旨가 다른 法院의 判決을 充實히 報道했다면 이에 대한 訂正報道를 要求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事實概要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바가 없고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일보(1984년 4월 15일자 11면)는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해도 진실 심증있으면 책임없다』라는 제하의 기사로 李義香씨가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李義香씨는 자신이 패소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문 게재,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이었고, 그 전에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에서는 1, 2심 모두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일보가 자신이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에서 패소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1984년 4월 19일 言論仲裁委員會에 한국일보를 상대로 중재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3호 80면 참조).

중재결과, 한국일보사가 言論仲裁委員會의 중재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아 중재가 불성립되자, 李義香씨는 1984년 5월 1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984년 7월 13일 李義香씨가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에서, 「한국일보에 게재된 기사는 법원의 판결 그대로 발췌 게재한 것이다. 訴名 내지 사건명은 당해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한번 정해지면 청구원인의 내용 및 그 변동에 관계없이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경될 수 없는 것일 뿐더

러, 본건기사의 구성 및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사건명은 정정보도이나 그 내용은 잘못된 기사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것임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본건기사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우기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중 전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李義香씨는 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문호 부장판사)은 1984년 6월 29일 신청인이 이 사건기사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1審 判決文

사 건 : 84카17261 정정보도청구

신청인 : 이 의 향(李義香)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67의 1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자 발행인 홍 유 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병 기

변론종결 : 1984. 6. 29.

주 문 : 신청인의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한국일보」 제 11면 중앙에 6단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정정보도문(訂正報道文)이라는 제목을 특호활자(한자)로 우측 6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 중앙에 이의 향 심장협회장 승소 확정(李義香 心障協會長 勝訴 確定)이라는 제목을 세로 「컷」(한자)으로 6단에 걸쳐 게재하며, 그 좌측에 『본보 84. 4. 15. 한국심장장애자선도선교협회의 회장 이의향(李義香)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으로 1호활자로 2줄로 6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별지목록 기재의 본문내용을 5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4. 4. 15.자 한국일보 11면에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해도 진실 심증 있으면 책임없다』는 제목하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8부(재판장 김중화 부장판사)는 14일 신청인이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 제목의 기사(1982. 5. 27.자 동아일보 제11면에 게재된 기사)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이며 그로 인해 침해당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과문을 게재하고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는 기사의 내용 외에 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판단기준이 되므로 제목, 기사배치, 활자크기, 사진의 유무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나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그 진실성이 증명되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사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도기관으로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역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문제의 기사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된 것이 명백하고 보도기관이 위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보도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10 내지 7.5센티미터, 세로 7단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본건 신청원인으로서, 피신청인은

본건기사에서 신청인이 모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서울민사지법 합의 8부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그 소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이었고, 신청인이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심(당원 82카 27454) 및 2심(서울고등법원 82나4188)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양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청구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기사는 당원 합의 제8부 판결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하등의 피해를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1, 3호증(각 신문), 소갑2호증, 소갑3호증(각 판결), 소갑4호증(확정증명), 소갑1호증의 1, 2(기록표지), 소갑2호증(소장)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의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발행의 1982년 5월 27일자 동아일보 제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이라는 제목하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와이.엠.씨.에이(Y.M.C.A)빌딩 405호 한국심장장애자선도선교협회의(회장 이의향 48·여)가 장애자들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장애자 수강생과 교사들 30여명이 협회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농성 현장사진과 함께 보도되자 신청인은 위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하여 언론기본법 소정의 중재절차를 거쳐 당원 82카 27454호 정정보도신청을 하는 한편 1982년 7월 16일 당원 82가합4734호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정정보도신청사건(82카27454)에서는 1982년 11월 4일 당원 합의 제16부가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동년 12월 11일자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고 그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82나4188)에서도 1983년 11월 7일 신청인이 승소(원판결의 정정보도문 내용이 일부 변경됨)하여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반면 위 정정보도청구사건(82가합

4734)에서는 신청인은 당초 「정정보도청구」를 소명(訴名)으로 하여 위 동아일보 게재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써 정정보도 및 사과문의 게재를 청구하였다가 그뒤 사과문의 게재 및 금 10억원의 위자료청구로 변경하였는데 당원 합의 제8부는 1984년 4월 11일 앞서 본건 기사내용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한국일보에 게재한 본건기사는 당원 82카27454호 정정보도신청사건 혹은 그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원 82가합4734호 정정보도청구사건에 관하여 합의 제8부가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발췌 게재한 것이고, 소명(訴名) 내지 사건명은 당해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한번 정해지면 청구원인의 내용 및 그 변동에 관계없이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경될 수 없는 것일 뿐더러 본건기사의 구성 및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사건명은 정정보도이나 그 내용은 잘못된 기사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청구(사과문 게재)에 대한 판결 내용을 보도한 것임을 쉽사리 알아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본건기사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더우기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중 전반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본건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본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년 7월 13일

재판장 판사 허 정 훈  
판사 이 상 규  
판사 이 형 하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문내용 : 본보 1984년 4월 15일자 11면 사회면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돼도 진실 심증있으면 책임없다」 제하의 기사 중 한국심신장애자선도

선교협의회 대표자 회장 이의향(李義香)씨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8부에서 기각됐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합니다.

이의향씨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982년 11월 4일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6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 합의 12부(재판장 김승진 부장판사)에서도 승소, 확정되었으며 동아일보는 이미 1982년 12월 11일 11면에 3단 8.5센티미터의 크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2審 判決文

사 건 : 84나3255 정정보도청구

신청인·항소인 : 이 의 향(李義香)

서울 강남구 반포1동 444의 1  
삼호가든 9동 602호

피신청인·피항소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자 발행인 홍 유 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 명 기

변론종결 : 1984. 12. 28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7. 13. 선고,  
84카17261 판결.

주 문 :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한국일보」 제11면 중앙에 6단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특호 활자(한자)로 우측 6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 중앙에 이의향 심장협회장 승소 확정이라는 대체목은 세로 「컷」(한자)으로 6단에 걸쳐 게재하며, 그 좌측에 『본보 84. 4. 15.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 회장 이의향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은 1호활자로 2줄로 6단에 걸쳐 게재하고, 그 좌측에 별지목록 기재의 본문내용을 5호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한 1984. 4. 15.자 한국일보 11면에 말미의 별지기사와 같이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돼도 진실 심증있으면 책임없다」는 제목하에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8부(재판장 김종하 부장판사)는 14일 신청인이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불구도 서러운데... ,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착복』 제목의 기사(1982. 5. 27.자 東亞日報 제11면에 게재된 기사)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기사이며 그로 인해 침해당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과문을 게재하고 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는 기사의 내용 외에 독자에게 주는 인상도 판단기준이 되므로 제목, 기사배치, 활자크기, 사진의 유무 등을 종합하면, 위 기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여지나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그 진실성이 증명되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사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도기관으로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 데 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역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문제의 기사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된 것이 명백하고 보도기관이 위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보도행위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하여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10 내지 7.5센티미터, 세로 7단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기사에서 신청인이 모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서울민사지방법 합의 8부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사실 그 소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이었고, 신청인이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심(서울민사지방법원 82카27454) 및 2심(서울고등법원 82나4188) 모두 승소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양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보도청구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기사는 위 법원 합의 제8부의 판결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하등의 피해를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1, 3호증(각 신문), 소갑2 호증, 소을 3호증(각 판결), 소갑4 호증(확정증명), 소갑7 호증(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 소갑8 호증(항소장), 소을 1호증의 1, 2(기록표지), 소을 2호증(소장)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특히 당심 제1차변론)를 종합하면, 신청의 주식회사 東亞日報 발행의 1982. 5. 27.자 東亞日報 제11면에 『불구도 서러운데... ,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하에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와이.엠.씨.에이빌딩 405호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회장 이의향 48·여)가 장애자들에게 재활기술을 가르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장애자 수강생과 교사들 30여명이 협회사 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농성현장사진과 함께 보도되자, 신청인은 위 東亞日報社를 상대로 하여 언론기본법 소정의 중재절차를 거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신청(82카27454)을 하는 한편, 1982. 7. 16. 같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82가합4734)을 제기한 사실, 위 정정보도신청사건(82카27454)에서는 1982. 11. 4. 같은 법원 합의 제16부가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동년 12. 11.자 東亞日報에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고 그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82나4188)에서도 1983. 11. 7. 신청인이 승소(원판결의 정정보도문 내용이 일부 변경됨)하여 그 무렵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반면 위 정정보도청구사건(82가합4734)에서는 신청인은 당초 「정정보도청구」를 소명으로 하여 위 東亞日報 게재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 및 사과문의 게재를 청구하였다가 그뒤 사과문의 게재 및 금 10억원의 위자료청구로 변경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제3부는 1984. 4. 11. 앞서 본 이 사건 기사내용과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이회명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한국일보에 게재한 이 사건기사는 위 법원 82카27454 정정보도신청사건 및 그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법원 82가합4734 정정보도청구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합의 제8부가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발췌 게재한 것이고, 소명 내지 사건명은 당초 신청인이 소장에 기재한 대로 된 것이고, 소명이나 사건명은 당해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명칭으로서 한번 정해지면 청구원인의 내용 및 변동에 관계없이 이 사건 종결에 이르기까지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신청인이 모 일간지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라고 한 것은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그 사건명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결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기사의 구성 및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사건명도 사실과 같이 정정보도청구라고 표현하였고 그 내용도 잘못된 기사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청구(사과문 게재)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도한 것임을 쉽사리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기사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더우기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중 전반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

은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 18

재판장 판사 김 문 호  
판사 김 명 길  
판사 현 순 도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문내용 : 본보 1984. 4. 15. 자 11면 사회면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돼도 진실 입증있으면 책임없다』 제하의 기사 중 한국심신장애자선도선교협의회 대표자 회장 이의항씨가 東亞日報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8부에서 기각됐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합니다.

이의항씨가 東亞日報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는 1982. 11. 4.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16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에서 승소한 데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 합의 12부(재판장 김승진 부장판사)에서도 승소 확정되었으며, 東亞日報는 이미 1982. 12. 11. 11면에 3단 8.5센티미터의 크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

著作權이 完全히 成立하기 前인 翻譯原稿라도  
他人이 原作을 별도로 翻譯하면서 이를  
無斷으로 利用하는 것은 違法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위자료청구소송

事實概要

번역자가 원작자와의 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번역한 경우, 번역자의 승락을 받지 않고 타인

의 번역원고를 참고하여 좋은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도 상당부분은 어휘나 문장 구성을 일부 바꿔 자신의 독창적인 번역물로 출판한 행위는, 비록 원작자의 동의를 받았다 할

지라도, 번역자의 법률상 보호해야 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제9부는, 번역문학가 安正孝씨가 재단법인 韓國文學振興財團(이사장 毛允淑)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및 사과문게재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재단법인 韓國文學振興財團은 원고 安씨에게 위자료로 金3백만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安씨는 韓末淑씨의 작품 「아름다운 靈歌」를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英文으로 번역하기로 한 韓國文學振興財團과 1982년 10월경 작품번역계약을 맺고, 이 작품을 번역, 미국인 바바라 민츠 여사의 校閱을 거친 후, 계약에 따라 韓國文學振興財團에 번역원고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3백만원을 받았다. 원작자 한말숙씨는 이 번역원고를 미국인 스잔 크라우더에게 다시 校閱을 부탁, 스잔 크라우더는 이 번역이 원작의 문학성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열을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다시 번역하겠다고 원작자인 韓씨의 승락을 얻어 작품을 번역하였고, 韓國文學振興財團은 스잔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이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그러자 安씨는, ▽ 韓國文學振興財團이 자신의 번역원고를 자신의 동의없이 스잔 크라우더에게 제공, ▽ 同人이 자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여 좋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 기타 다른 부분의 경우에도 어휘나 문장구성만을 일부 바꾼 채, 이 작품을 재번역함으로써 표절행위를 하게 하는 한편, ▽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스잔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번역본을 출간,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본 소송을 낸 것이다.

이 판결은 작품의 번역에 관련하여 번역자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와 번역자의 법률상 보호문제에 관한 국내의 첫 판결이다.

判決文

사 건 : 83가합6051  
원 고 : 안 정 효  
피 고 :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

변론종결 : 1984. 6. 29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백만원 및 이에 대한 1983년 11월 1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물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중 금2백만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물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발간하는 일간 조선일보 및 코리아타임즈지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광고문을 1회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원고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및 코리아타임즈지의 문화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문학작품의 번역을 업으로 하는 번역문학가이고, 피고는 문화공보부의 감독하에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인 바, 피고 재단은 1982년 10월경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로부터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의 추천의뢰를 받고 소의 한말숙작 「아름다운 영가」를 1983년 2월말까지 번역하여 그 후보작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위 「아름다운 영가」를 영역할 번역문학가를 물색하다가 원작자인 소의 한말숙의 동의를 받아 1982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인 김동리 원작의 을화를 번역한 일이 있는 원고에게 위 번역을 의뢰하여 원·피고는 1982년 10월 23일 「① 원고는 1983년 1월 20일까지 번역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번역비는 금2백만원으로 하되 계약과 동시에 금1백만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번역이 완료되고 피고에게 인도한 후 하자가 없을 때 지불한다. ③ 원고는 번역원고를 외국인에게 교열을 받거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피고도 또한 교열을 받을 수 있다. 교열 후 정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피고의 의견에 따르며 제책과정에서 원고는 교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재판 발행시는 원고에게 3퍼센트에 해당하는 번역본 인세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번역 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번역의뢰에 따라 곧바로 번역에 착수하여 번역을 끝마치고 제명을 「Song of Soul」이라고 붙인 후 미국인 바바라 민츠 여사의 교열을 받아 1983년 1월 18일 위 번역원고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번역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1982년 12월 6일, 같은 해 12월 23일, 1983년 1월 12일에 각각 1백만원씩 합계 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는 위 아름다운 영가의 원작자인 한말숙의 동의를 얻어 번역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번역물에 대하여 독점적, 배타적인 저작권을 취득하였는 바, 피고는 그 후 소외 스타 크라우더(Suzanne Crowder)에게 위 아름다운 영가에 대한 별도의 번역을 의뢰하면서 동 소외인에게 원고의 번역원고를 교부하여 동 소외인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는 또 위 스타 크라우더의 번역원고를 교부받아 그것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 스타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위 아름다운 영가의 영역본인 「Hymn of the Spirit」를 출판하고 원고의 번역원고는 출판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위 번역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1천만원의 배상과 아울러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공고문의 게재를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피고간에 아름다운 영가의 출판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인세가 아닌 일시금을 지불하였고 또한 그 금액이 단순한 저작권의 사용허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액에 해당하므로 원, 피고간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위 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인 위탁제작계약이거나 저작권양도계약이므로 이 번역물의 저작권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에게 있으며 따라서 약정한 번역료를 모두 지급한 이상 저작권의 침해란 있을 수 없고, 나아가 스타 크라우더의 번역은 독창적인 것이지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진정 성립에 관하여 다툼

이 없는 갑 2호증의 1 내지 4(각 최고서) 갑 3호증의 1 내지 3(각 답변서) 갑 4호증의 1 내지 3(각 신문) 갑 4호증의 7(신문) 갑 7호증(번역 원고) 갑 8호증(영문책자)의 각 기재와 증인 스타 크라우더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1983년 1월 18일 원고로부터 아름다운 영가의 영문번역원고를 교부받아 이를 미국인 스타 크라우더에게 교열을 의뢰하였는 바, 위 스타 크라우더는 원고의 번역원고를 2, 3일 교열하다가 원고의 번역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읽으면 원작의 문학성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 번역원고의 교열을 거부하고 별도로 직접 번역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한편 원작자인 소외 한말숙도 원고의 번역원고를 읽어 본 후 자신의 문학성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원작의 품격을 유지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번역원고를 출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1983년 2월초 위 스타 크라우더에게 새로이 위 아름다운 영가의 번역을 의뢰하였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이 별도의 번역을 의뢰한 후에도 동 소외인에게 그전에 교열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원고의 번역원고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사실, 소외 스타 크라우더는 미국 사우드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면서 1학기 동안 매주 6시간씩 창작강좌를 수강하였는데 1977년에 내한한 후 1980년까지 평화봉사단원으로 종사하다가 1981년부터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의 전문위원 및 우리정부를 외국에 홍보하는 서적의 영역을 교열하는 일에 종사하여 우리말 중 쉬운 일상어는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 건 번역 이전에 소외 한말숙작 「어떤죽음」을 영역하여 코리아타임즈로부터 번역문학상 가작상을 수상한 일이 있었는 바, 동 소외인이 위 아름다운 영가를 영역하면서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로 하여 표현이 좋거나 별다른 흠이 없어 무난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도 어휘를 다른 것으로 쓰거나 문장의 구성을 조금 바꾸는 등의 방법을 써서 1983년 6월경 별도의 번역원고를 완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1983년 3월 12일경 피고가 원고의 번역원고 2

부를 복사하여 소외 스타 크라우더에게 송부한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에게 스타 크라우더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983년 4월 6일경 피고로부터 소외 스타 크라우더가 교열하였다는 원고의 번역원고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위 스타 크라우더의 행위는 교열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번역원고 중 표현이 좋은 부분이나 독창적인 부분도 마구 고쳐 오히려 원번역의 취지를 해치고 각주가 붙는 등 소설의 형식으로서의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번역원고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스타 크라우더의 공동명의로 번역본을 출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권은 원고의 명의로, 다른 한 권은 스타 크라우더의 명의로 출간할 것을 제의하였는 바, 원고가 자신의 번역원고에 약간의 손질을 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스타 크라우더가 번역을 계속하여 동일 명의로 번역본이 출간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1983년 4월 26일 피고에게 서면으로 위 번역작업의 중지와 자신의 번역원고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1983년 7월 스타 크라우더의 명의로 아름다운 영가의 번역본 「Hymn of the Spirit」를 출판한 후 1983년 7월 22일 원고의 번역원고사본 중 일부를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 2호증(각서) 을 8호증(이유서) 을 9호증(의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스타 크라우더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번역저작권은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그 번역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별다른 공표나 등록절차 없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원작자인 소외 한말숙의 동의를 얻어 번역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이 건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건 번역원고의 교열을 타인에게 의뢰할 수 있고 교열 후 정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의 의견에 따르도록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번역을 마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는 하였지만 원작자인 소외 한

말숙이 원고의 번역에 이의를 제기하며 원고의 번역본의 출판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로부터 위 번역원고의 교열을 의뢰받은 소외 스타 크라우더가 또한 원고의 번역원고에 대한 교열을 거부하여, 결국 아직 원, 피고간의 협의에 의한 교열과 정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번역물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번역저작권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번역물에 아직 2차적인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각컨대 원고의 위 번역원고는 원고의 정신적 노동과 그 창작성의 산물로서 원고는 위 번역물에 대하여 원고의 승락없는 타인의 이용이나 임의개작으로부터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소외 스타 크라우더가 원고의 승락을 얻음 없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여 그중 좋은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도 상당부분은 어휘나 문장구성을 일부 바꿔 자신의 독창적인 번역물로서 출판한 행위는 원고의 위 법률상 보호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는 비록 처음에는 위 스타 크라우더에게 원고를 교열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며칠 후 교열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동 소외인과의 별도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번역원고를 위 소외인에게 그대로 보관시킬 경우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외의 틈을 내어 같은 원작을 번역하는 위 소외인이 번역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한국의 문화, 풍속과 특수한 의식세계에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특수어휘에 익숙치 못한 관계로 자연히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게 되리라는 사정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3년 4월 26일에는 원고로부터 번역원고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 요구를 무시한 채 스타 크라우더에게 계속 맡겨두었다가 동 소외인의 번역이 완성되어 번역본이 출간된 후인 1983년 7월 22일에야 원고의 번역원고 사본(그것도 일부만)을 반환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소외 스타 크라우더가 무단히 원고의 번역원고를 이용함에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나아가 위 소외

인의 번역원고를 출판하였는 바 피고의 위 행위 는 소의 스잔 크라우드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고의가 아니면 과실로 방조한 위법행위에 해당 하고, 피고의 위 위법행위는 번역 문학가로서 자신의 번역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되고 그 것이 타인에 의하여 무단히 이용되거나 개작되 지 않을 것을 바라는 원고의 명예감정을 훼손하 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 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건 피고의 위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정신적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위자되 는 데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사과광고문을 게재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 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의 태양 및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원, 피고간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3백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3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 본송달일일이 기록상 명백한 1983년 11월 10 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 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 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 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7. 24

재판장 판사 정 귀 호  
판사 서 기 석  
판사 조 관 행

□

## 어머니의 名譽가 毀損된 경우, 子女들에 대하여도 名譽毀損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父母·子女 關係라는 事實이 摘示되는 등의 相当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위자료청구소송

### 事實概要

허위 날조된 사실을 내포한 책자를 저술, 일 반에 배포함으로써 직계존속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자녀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가?

서울민사지법 朴燦柱 판사는, 이두식씨 외 5 인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卓明煥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등 청구소송에서,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와 명예감정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명예 훼손은 고도의 개인적인 속성을 갖는다고 설시 하고, 원고들의 어머니에 대한 부도덕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인 원고들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나 과실 의 에 부모와 자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 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므로, 원고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 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 시, 원고들의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이씨등은, 卓明煥씨가 1979년 「통일교의 실상과 허상」이라는 책 가운데서 어머니인 양씨 와 통일교 교주인 문선명씨의 관계를 밝히자, 이들 내용이 모두 허위의 사실로써, 고인이 된 어머니는 물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위자료로 金5십만원씩(원고 1인당)을 지급하라 는 본 소송을 냈었다.

### 判 決 文

사 건 : 83가단7668 위자료등

원 고 : (1) 이 두 식

부산시 동래구 장전 1동 99의 8

(2) 이 영 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9동 16호

(3) 이 두 송

서울 동작구 상도1동 126의 8

(4) 이 두 삼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3의 8

(5) 이 두 림

창원시 대원동 42의 1 동양아파트

A동 401호

(6) 이 영 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2의 1

양우아파트 다동 402호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수

피 고 : 탁 명 환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삼풍상가

525(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변론종결 : 1984. 9. 17

주 문 : 1.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 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파 이에 대한 이 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분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 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 피고가 국제종교문제연구소를 설립하 여 그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1979. 11. 25 「통일 교(統一教)의 실상(實相)과 허상(虛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저술하여 배포한 사실, 피고는 위 책자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창설 경 위와 국내의 활동상황에 관하여 언급하는 중에 『세칭 이대(梨大)사건의 전말』이라는 소제목 아래 「이대사건의 실마리는 대개 아래와 같다. 53년말 문교주가 대구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야말로 잠바차림에 고무신을 신은 핫바지차림

의 초라한 물결로 상경하여 몸하나 의지할 수 있 는 곳을 찾아 헤맬 때인 1954년 4월초에 구세주 격인 여인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이대 음대 성 악교수였던 양윤영(梁允永)여인이었다. 그녀는 을지로6가에 있던 자기집 뒷방에 문교주의 거처 를 마련해 주고 기숙시켰다. 이때 양윤영은 남 편이 증병을 앓아 누워 있었으므로 결혼생활은 불행하기 이룰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든 남편은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문교주에게 훌 락 빠져버렸고 급기야 남편이 죽자 조금도 슬픈 기색이 없이 웃으면서 자기야말로 주님을 만났 으므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털어놓았다고 한 다. 문교주와 양윤영은 양의 남편이 살았을 때 부터 심상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중략) 양 윤영도 죽고 말았다」라고 적시(摘示)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 는 감계 1호중(계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등은 모두 위 양윤영의 자녀들인 사실이 인 정되고 반증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적시사실들은 모두 허위사실들로서 피고가 위 책자를 저술, 발간하여 각 종교계와 지상에 배포하고 이들 내 용이 일반잡지나 주간지에까지 홍미위주로 게재 소개됨으로써 당사자인 위 양윤영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등인 원고등마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 으로 인격을 손상당하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 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등 주장의 인 격에 관한 권리는 넓게는 생명, 신체, 건강, 자 유라는 제 이익을 포함한 개념이라 하겠으나 좁 게는 대상되는 인물의 품성, 덕행, 명성 등 소위 명예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및 이에 대한 동인의 감정(명예감정)을 중핵(中核)으로 하는 것으로 서 원고등이 침해되었다 주장하는 인격에 관한 권리도 이러한 명예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명 예감정이익이라 할 것인 바, 우선 당사자들 사 이에 다툼이 없는 위 적시사실이 과연 허위사실 인가의 점은 접어두고라도 동 적시사실은 모두 위 양윤영에 관한 것들 뿐으로서 원고등을 대 상 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등이 위 양윤영의 자녀들임을 명시하거나 암시하지도 아니하는 이 상은 피고의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직접 당사

자가 되는 위 양운영의 명예가 훼손되느냐의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적시와 같은 명예라는 고도의 개인적인 속성에 비추어보면 바로 원고등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피고가 위 책자를 저술하여 발간, 배포하면서 위 적시사실로 인하여 위 양운영의 자녀들까지 주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소의 활동장애가 뒤따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적시행위와 원고등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의 훼손 사이에는

법률상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등은 통상 손해의 형태로건 특별손해의 형태로건 배상받을 수는 없다 하겠으니 원고등의 이 건 청구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등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0. 15

판사 박 찬 주 □

### 廣告는 訂正報道請求權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事實概要

광고로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林圭雲 부장판사)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인 卓明煥씨가 基督新報에 게재된 광고의 내용은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라며 기독교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광고는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 주장만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일 뿐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고, 또 광고는 유료인데 반해 정정보도는 무료이므로,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때에는 광고주나 언론기관을 상대로 일반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라면 몰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卓씨는, 基督新報(1984년 8월 25일자)광고란에 「탁씨가 광고주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노회장 金晚圭)의 임시회의장인 수도중앙교

회에 불법침입하여 회의를 방해하고 회원을 구타했다. 이 사실을 탁씨가 발행하는 「現代宗教」誌 1984년 9월호에 허위로 왜곡 보도하는 등 고의적으로 교단에 도전하였다」는 내용의 의견광고가 게재되자, 이들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임에도 基督新報는 이에 대한 조사확인없이 그대로 게재하였으므로, 광고게재에 따른 주의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정보도하라며 1984년 8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4호 86면 참조).

중재결과, 쌍방 모두 진실이라고 주장하여 중재가 불성립, 신청인은 1984년 9월 1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1984년 11월 30일 청구가 기각되자 1985년 1월 11일 항소하였는데, 1985년 4월 3일 소를 취하하였다.

#### 判決文

사 건 : 84카34374 정정보도

신청인: 탁 명 환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의 68, 삼풍빌딩 523

피신청인: 기독교보사 발행인 배 재 운

서울 용산구 동자동 35의 14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익 보

변론종결: 1984. 11. 2.

주 문: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신청인은 별지1 기재 사과광고문을 기독교보 1면 아래쪽에 5단 전면의 크기로, 제목은 고딕체 특호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3호활자로, 말미의 기관명과 대표자 이름은 고딕체 2호활자로 하여 2회 게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위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게재시까지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로서 구하라.

이 유: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4. 8. 25. 자 기독교보(제566호) 제 4면 하단 광고란에 광고주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만규, 노회임원 및 노회원 일등으로 된 별지2 기재 내용을 담은 광고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기독교보에 공표된 위 광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 사과광고문(언론정정보도청구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과광고문을 정정보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의 게재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광고로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도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건대, 광고는 언론이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

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 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광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30.

재판장 판사 임 규 운  
판사 박 해 성  
판사 유 승 정

#### 신청인이 요구한 사과문

본보 1984년 8월 26일자 8면 하단에 전5단 광고로 게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주류측 평동노회장 김만규씨의 「탁명환씨는 공개 사죄하라」는 광고의 내용은 확인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의 사항들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및 월간 현대종교사라는 특정 기관의 공신력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탁명환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키는 중요한 내용들로 그 진위를 해명해 드립니다.

1. 「국제종교문제연구소와 월간 현대종교의 대표 탁명환 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제89회 1차 임시노회에 불법침입하여 3시간 40분간 난동하고 예배방해하며 집단폭행과 강단침범하고 모략증상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노회 회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김만규씨의 광고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무맹랑한 증상모략임이 밝혀졌고,

2. 현대종교지의 선량하고 충직한 기자들을 「불량폭력배로」 취재차 노회에 방문한 것을 「불

법침입」등으로 악의에 찬 표현을 하고 있음은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3. 「탁명환 소장의 이단시비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나 그동안 탁명환 소장이 이단과 사이비종파를 추적조사 규명하여 교계에 알림으로 이단과 사이비 종파의 교계침투를 방지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은 우리교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4. 퇴장에 불응했다거나 노회장에게 상식 이하의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조작된 주장은 평소 탁명환 소장의 성품이나 인격, 그리고 돈독한 신앙심으로 미루어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상 몇 가지 열거한 사항 외에도 광고문 전체가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표현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악의에 찬 욕설로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날조된 것들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및 월간 현대종교사 그리고 탁명환 소장과 그 직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심대하게 훼손시킨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1984년 월 일

기독신보사  
발행인 배재운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대표 탁명환 귀하  
월간 현대종교

보도문 요약

1. 신청인은 1984년 7월 23일 하오 2시 50분경 불량폭력배 7인등과 함께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제89회 1차 임시노회에 불법침입하여 3시간 40분간 난동하고 예배방해하며 집단폭행과 강단침범하고 모략중상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노회 회무를 방해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노회원에게 전화로 공갈 협박하였다.

2. 신청인 일행은 본 노회와 하동의 상관이 없는 자들이며 아울러 본 노회가 초청한 인사도 아니요 또한 취재허가도 한 일이 없음에도 취재

자유를 부르짖고 불법으로 노회 회무처리에 개입하고 퇴장을 종용하는 노회원을 집단구타하고 도리어 공갈협박하여 집단으로 강제연행하겠다고 위협하였으니 국제종교문제연구소는 취재권(프레스 카드)이 없는 사설단체이며 기자도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사설기관의 고용원이다.

3. 자칭 교수요 목사(미국에서)인 신청인은 본 교단을 헐뜯는 강연을 하면서 「큰 교단 목사」는 다 교만하여 「지옥에 가니 목사들 뿐이요 정치꾼 노회장 총회장은 지옥 아랫목에 다 있더라」고 하여 교단과 목사직에 공공히 도전하는 자이다.

4. 신청인은 본 노회 임시노회에 안전에 공연히 개입하여 시시비비를 나누고 사회하는 노회장에게 이단집단에 가서 안수를 받고 2천5백만원의 돈을 받아 먹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5. 신청인은 그가 즐겨 지적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1981년 2월 19일 목요일집회에 가서 1시간 30분간 강의하고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회라고 입에 침을 풀리며 외쳤고, 거액의 돈과 책을 판 사실을 녹화 필름이 증명하고 있으니 신청인의 이단시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6. 신청인은 노회에서 난동을 부린 후 다시 노회장에게 백주의 대로에서 포니웨곤승용차로 급질주하여 위험하고 「야 이 새끼 저주받아 돼져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펄 꺼꾸라져라」고 저주하고 달아났다.

7. 신청인은 그가 발행하는 현대종교 9월호에 장장 12페이지에 걸쳐 본 교단과 본 노회 및 노회원, 노회장을 중상모략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거기에는 52번 거짓말을 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유포시킨 바, 그중 위 현대종교 115페이지의 교회간판이란 전혀 거짓으로서 306호의 교회교패와 406호 노회장의 주택을 복합사진술의 기교로 조작한 것이다.

8. 신청인은 음란문서 제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22차례 범죄경력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공명을 세운답시고 전국 기도원 철폐를 주장하고 신학교 난립을 막는다고 하여 각 교단이 운영하는 기존 신학교를 교단이 아닌 문교법에 묶게 하여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신학교 운영으로 전과자의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다. □

# 廣告는 訂正報道請求權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임규운 부장판사)는, 1984년 11월 30일 탁명환씨가 敎會聯合新報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소송사건에서, 광고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탁명환씨는 敎會聯合新報(1984년 8월 26일자 2면 광고란)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만규, 노회임원 및 노회원 일동 명의로 탁명환에 대한 규탄성명 광고가 게재되자, 이 광고 중에는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1984년 8월 2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14호 89면 참조).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불응, 중재가 불성립되자 1984년 9월 17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1984년 11월 30일 기각판결을 받았다. 탁명환씨는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으나, 1985년 4월 3일 이를 취하하였다.

## 判決文

사 건 : 84카34375 정정보도

신청인 : 탁 명 환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의 68,  
삼풍빌딩 523호

피신청인 : 주식회사 敎會聯合新報 발행인 겸 편집인 조두금

서울 성동구 행당동 319의 36

변론종결 : 1984. 11. 2.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신청을 기각한

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재의 사과광고문을 敎會聯合新報 1면 아래쪽에 5단 전면의 크기로, 제목은 고딕체 특호활자로, 내용은 명조체 3호활자로, 말미의 기관명과 대표자 이름은 고딕체 2호활자로 하여 2회 게재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위 사과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게재시까지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로 구하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4. 8. 26. 敎會聯合新報(제834호) 제 2면 하단 광고란에 광고주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만규, 노회임원 및 노회원 일동으로 된 별지 2 게재내용을 담은 광고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敎會聯合新報에 공표된 위 광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 사과광고문(언론정정보도청구사건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과광고문을 정정보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의 게재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1일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위 자료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광고로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도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광고는 언론이 광

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광고는 언론이 그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의 게재로 피해를 입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광고는 언론기본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광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30.

재판장 판사 임 규 운  
판사 박 해 성  
판사 유 승 정

신청인이 요구한 사과문

본보 1984년 8월 26일자 8면 하단에 전 5단 광고로 게재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주류측 평동노회장 김만규씨의 「탁명환씨는 공개 사죄하라」는 광고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의 사항들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및 월간 현대종교사라는 특정기관의 공신력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탁명환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키는 중요한 내용들로 그 진위를 확인 해명해 드립니다.

1. 「국제 종교문제연구소와 월간 현대종교의 대표 탁명환 소장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제89회 1차 임시노회에 불법침입하여 3시간 40분간 난동하고 예배방해하며 집단폭행과 강단 침범하고 모략중상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노회회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김만규씨의 광고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무맹랑한 중상모략임이 밝혀졌고

2. 현대종교지의 선량하고 충직한 기자들을 「불량폭력배」로 취재차 노회에 방문한 것을 「불법침입」등으로 악의에 찬 표현을 하고 있음은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3. 「탁명환 소장의 이단시비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하나 그동안 탁명환 소장이 이단과 사이비종파를 추적 조사규명하여 교계에 알림으로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의 교계침투를 방지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크게 공헌한 사실은 우리 교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며

4. 퇴장에 불응했다거나 노회장에게 상식 이하의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는 등의 조작된 주장은 평소 탁명환 소장의 성품이나 인격, 그리고 돈독한 신앙심으로 미루어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5. 특히 중대한 사실은 반공애국정신이 투철한 탁명환 소장을 공산당으로 모략한 것이다. 분단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특수상황하에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더구나 공인으로 활동하는 특정인을 공산주의자로 중상함은 인권이나 명예 이전에 사활에 관계되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이 사실을 엄중조사하여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악질적인 모략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현 제5공화국의 지상과제인 정의사회구현과 국민화합이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부합되는 것으로 마땅히 중시되는 것이다.

이상 열거한 몇가지 사항 외에도 광고문 전체가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표현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악의에 찬 폭설로 일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날조된 것들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및 월간 현대종교사 그리고 탁명환 소장 과 그 직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심대하게 명예를 훼손시킨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1984년 월 일

교회연합신보사  
발행인 조 두 금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대표 탁명환 귀하  
월간 현대종교 □

# 團體의 長인 個人에 關係된 報道的 訂正報端請求는 團體의 名義로 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정정보도청구소송

## 事實概要

단체의 장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단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재판장 임규운 부장판사)는, 1984년 11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만규씨가 월간 現代宗教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월간 現代宗教 1984년 9월호에 게재된 기사는 신청인 노회의 노회장인 소의 김만규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의 기사일 뿐이지, 단체인 신청인노회에 대하여 피해를 가한 기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노회명의로 된 신청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만규씨는, 월간 現代宗教(1984년 9월호)에 『예장합동측 P노회 이단의 음모에 휘말려!』 제하의 기사가 게재되자, 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1984년 9월 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 14호 94면 참조). 중재결과 중재가 불성립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84년 11월 23일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1985년 5월 10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 判決文

사 건 : 84카35089 정정보도

신 청 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서울 강동구 상일동 주공아파트  
707동 406호

대표자 노회장 김 만 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력 진

피신청인 : 월간 현대종교사 발행인 탁 명 환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의 68

변론종결 : 1984. 11. 2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현대종교」 제 1면 표지의 중간부분에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2호활자로, 그 우측에 『본지 1984년 9월호 예장합동측 P노회 보도에 관하여』라는 소제목은 3호활자로 3단에 걸쳐 게재하고, 같은 「현대종교」의 목차란 다음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가로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1호활자로, 그 내용문 및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4호활자로 2면에 걸쳐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 월간지인 「현대종교」의 1984년 9월호의 전면표지에 「진상폭로」, 「예장합동측 P노회 이단침투 음모에 휘말려」라고 게재되고, 본문 107면부터 제115면까지에 「예장합동측은 P노회 이단 음모에 휘말

려!』라는 제목과, 『과연 박윤식 집단은 합동교단에 가입될 것인가? 노회장 지시 받은 폭력전과 목사 취재기자에 폭행』이라는 부제목 아래 「1984년 7월 23일 xx교회(도봉구 수유x동 소재)에서 예장합동측 P노회 제89회 8차임시노회가 열렸는데 흑막이 있었다. 그 흑막이란 노회장 K목사가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에 대한 노회 영입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회장 K목사는 독단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반대파를 강제로 퇴장시켰다. 박윤식목사는 이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제명처분되었다. 노회장 목사는 돈에 매수되어 이러한 박윤식목사를 건전한 교단에 가입시키려 음흉한 계계를 꾸민 것이다」라는 요지와 「노회장의 지시를 받은 노회원들이 현대종교지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하였다」라는 요지와 「K목사는 인간적으로 부도덕한 인물로서 근 20년간이나 같이 살아온 조강지처를 현신짝처럼 버리고 불륜한 행각을 했다. 통일교 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통일교 관련사건으로 전에 소속되어 있던 노회에서 징계위에 회부되어 제명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구제책으로 이명을 중용받아 이명했고 목사의 주거 아파트 출입문에는 소속교단도 아닌 다른 교단 교회의 교패가 붙어 있는 등 신앙이 무절조하다. K목사는 박윤식목사의 충복이다. 정통보수 교단에 K목사와 같은 부실한 목사로 말미암아 여하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할 줄 믿는다.」라는 요지의 기사가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벌론에 나타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기사 중 「P노회」는 신청인 노회를, 「K목사」는 소외 「김만규목사」를 가리키는 것임은 편견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또는 위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별 어려움없이 알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기사에 의하여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 노회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사는 소외 박윤식 및 신청인 노회의 노회장인 소외 김만규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의 기사일 뿐이지 단체인 신청인 노회에 대하여 피해를 가한 기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위 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신청인 노회의 대표자인 소외 김만규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단

체인 신청인 노회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도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이 발행한 「현대종교」 1984년 9월호에 게재된 위 기사의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신청인 노회가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여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30

재판장 판사 임 규 운  
판사 박 해 성  
판사 유 승 정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에 대하여」  
지난 1984년 9월호 현대종교 제107면 내지 제115면에 걸쳐 『예장합동측 P노회, 이단의 음모에 휘말려!』라는 제목 및 『과연 박윤식 집단은 합동교단에 가입될 것인가?』, 『노회장 지시 받은 폭력전과 목사 취재기자에 폭행』이라는 소제목 아래,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가 1984년 7월 23일 서울 도봉구 수유 2동 270-241에 있는 수도중앙교회 예배당에서 집회한 제89회 1차 임시노회는 흑막이 있었다. 그 흑막이란 대성교회 박윤식씨를 노회장 김만규목사가 노회 영입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노회장 김만규목사는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독단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반대파를 강제로 퇴장시켰다. 박윤식목사는 이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제명처분되었다. 노회장 김만규목사는 돈에 매수되어 박윤식목사를 건전한 교단에 가입시키려 음흉한 계계를 꾸민 것이다」라는 요지와 「노회장의 지시를 받은 노회원들이 현대종교지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하였다」라는 요지와 「노회장인 김만규목사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김만규목사는 인간적으로 부도덕한 인물로서 근 20년간이나 같이 살은 조강지처를 현신짝처럼 버리고 불륜한 행각을 했다. 통일교 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통일교 관련사건으로 전에 소속되어있던 노회에서 징계위에 회부돼

제명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구제책으로 이명을 중용받아 이명했고 김만규목사의 주거 아파트 출입문에는 소속교단도 아닌 다른 교단 교회의 교패가 붙어있는 등 신앙이 무절조하다. 김만규목사는 박윤식목사의 충복이다. 정통보수교단에 김만규목사같은 부실한 목사로 말미암아 여하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할 줄 믿는다」라는 요지 등이 기사로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대성교회 박윤식목사는 이단이 아니고 노회장 김만규목사는 박윤식목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이 없고 박윤식목사를 평동노회에 영입하려한 바 없어 아무런 흑막이 있을 수 없는 집회이며, 노회장 김만규목사가 회의를 독선적으로 진행한 바 없고 반대파를 강제로 퇴장시킨 사실이 없으며 비공개인 노회에 현대종교지 취재기자가 청하는 외부인사가 참관하므로 노회장이 퇴장을 명하였으나 불응하고 현대종교지 발행인 탁명환과 취재기자라 칭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침입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폭력을 자행한 사실이 있으며, 김만규목사에 대한 인신공격기사 중 부도덕하다는 점은 김만규목사의 전처 이재순이 김만규목사의 당뇨병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함에 불만을 품고 1979년 2월 20일 무단가출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어 부득이 대구지방법원에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1981년 11월 6일자로 동원의 이혼심판을 받아 호적정리를 하고 위 이혼심판 약 1개월 후에 재혼하였던 것이므로 부도덕하다고 비판받을 이유가 없는 사실, 김만규목사는 통일교의 자금을 받아 해외여행을 한 바도 없고 통일교 관련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바 없는 사실등이 밝혀졌으며, 특히 김만규목사가 거주하는 주공아파트 707동 406호 출입문에는 교회의 교패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데도 출입문에 부착된 406호 사진 위에 다른 사람이 사는 306호실 출입문에 부착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강남제일교회」의 교패사진을 교묘하게 붙여 마치 김만규목사의 아파트 출입문에 교패가 붙어 있는 양 사진을 조작하여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1984년 9월호 현대종교지의 이진 기사는 허위이다.

정정보도 신청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동노회  
노회장 김 만 규 □

□ 獨逸判例

競争紙에 대한 不當한 비판

聯邦大法院 1981. 10. 30자 판결  
— IZR 93/79 사건 —

適用法條

獨逸基本法 제 5조 제 1항 및 제 2항 : 不正競争防止法 제 1조

判決要旨

1. 言論機關이 競争紙를 비판한 경우에,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또한 公共의 利益에 관계되는 事件을 보도해야 할 言論의 임무를 고려하면 그 관계자들이 競争者들이고 또한 표현된 비판이 자기자신의 營業을 촉진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이로써 바로 競争意思가 推定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競争意思를 確定하기 위하여는 競争關係의 고려 이외에도 이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모든 事實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2.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비판의 기준이 되는 근거에 대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인용도 없이 競争紙를 헐뜯는 言論批判은 不正競争防止法 제 1조의 의미에 있어서 競争에 反하는 것이며, 獨逸基本法 제 5조 제 1항에 基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基本權에 의해서 보호되지 아니한다.

事實概要

原告는 E. 슈피겔(E. Spiegel)이라는 題號의 週刊紙인 「株主를 위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바, 위 신문은 투자추천 및 증권정보를 취급하

고 있으며, 일반잡지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 1 피고는 일반잡지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月刊 經濟紙인 C 및 증권정보지인 C. 페어트라우리히(C. Vertraulich) 및 C. 데페세(C. Depesche)의 발행인 겸 출판인이다.

제 2 피고는 C의 책임편집인이고, 제 3 피고는 C. 페어트라우리히 및 C. 데페세의 편집인이다. C. 페어트라우리히는 매월 발행되고, C잡지의 예약자에게 발송되며, C. 데페세는 주간지로서 예약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다.

피고들은 1977년 11월, 12월에 그들이 발행 및 편집하는 신문에서 소위 대은행의 株式( Restquoten : Reichsmark라고 불리워지는 드레스트너(Dresdner)은행, 도이취(Deutsch)은행, 콤메르츠(Commerz)은행(舊銀行)의 舊株式)의 평가의 관해서 의견을 이야기 하고, 그때에 原告의 증권잡지 및 그 잡지의 單獨理事의 商學士 B. H.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정보잡지인 C. 페어트라우리히(C. Vertraulich)의 1877년 12월 9일자 12호의 제 1면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져 있다.

「대은행의 주식. 아직도 라이히스마르크(Reichsmark)라고 불리워지는 대은행의 舊株式, 소위 레스트쿠보텐(Restquoten)을 둘러싸고 지난 수주일 동안 심한 投機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하므로 알려진 바로 그 E. 슈피겔(E. Spiegel)잡지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현실은 레스트쿠보텐(Restquoten) 소유자에게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레스트쿠보텐은 그 당시 아주 전망이 나쁜, 정치적인 희망의 증권이었다.

마찬가지로 1977년 11·12월호의 C. 데페세 잡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독일 대은행의 레스트쿠보텐(Restquoten)에 관련된 투기는 현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동안 그 투기를 일으켰던 장본인으로서 는 B.H.氏 및 E. 슈피겔 잡지임이 드러났다.

나아가 1977년 12월 23일자의 C잡지 자체에도 「마지막 잉여」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그동안 터무니없는 투기를 일으켰던 장본인으로는, 증권가에서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알려진 증권잡지인 E. 슈피겔의 發行人인 B. H.氏임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H氏는 투기꾼인 H.D.K.氏가 D은행에 대하여 제시하였다는 소문이 있는 入札價格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끝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原告는 자기의 신분을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표현을 營業上 競争을 위한 허위 사실의 主張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장이 根據없는 것이고 또한 불필요하게 무조건적으로 원고를 헐뜯는 것이므로 이러한 主張의 배포는 競争에 反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原告에 의해서 開始된 절차는 競争에 反하는 주장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被告들은 문제된 기사는 사실에 反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競争을 위한 목적으로 씌어진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被告들은 단지 獨逸基本法 제 5조에 基한 言論 및 출판의 자유의 基本權을 행사하여 공익에 관한 사건을 적시한 것이고 公共의 여론형성에 기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被告들은 또한 原告의 잡지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正當한 것이고, E. 슈피겔잡지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증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地方法院은 신청에 따라서 被告들로 하여금 문제된 기사를 중지하라고 판결하였다. 被告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非常上告를 제기하여 原告의 訴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上告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判決理由

地方法院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原告의 중지신청은 不正競争防止法 제 1조에 따라서 正當하다. 被告들은 競争者로서 行동을 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不正競争防止法의 規定에 따라서 規制되어야 하기 때문에, 被告들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基本權을 행사한 것이라고 主張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동일한 독자층을 상대로 하는 경쟁자들이다.

따라서 被告들이 원고를 믿을 만하지 못하다거나 또는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것이 원고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증권거래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구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증권잡지의 신뢰성, 즉 그 잡지의 투자추천의 신빙성 또는 신뢰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에 被告들은 競争意思를 가지고 행동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競争意思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兩當事者가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에 기인하는 사실상의 推定뿐만 아니라 原告의 잡지를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신적인 意思對立이나 또는 어떠한 公共의 이익의 確保와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兩當事者가 독자확보를 둘러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이 그 根據가 되는 것이다. 被告들의 잡지에 실린 위 기사들은 公정한 競争의 원칙과는 서로 조화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문제된 기사가 價値判斷에 관한 것인지 또는 진실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事實主張에 관한 것인지 및 被告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종류의 기사는 公衆의 눈으로 보면 競争者를 헐뜯는 것이고 또한 競争者의 營業上의 명성에 원칙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事實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競争者의 比방이 바로 자기 자신의 營業에 해당된다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不正競争防止法의 입장



에서 이러한 기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本件의 경우에는 사정이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被告들의 原告에 대한 공격은 合法的인 競業도 아니고 쌍방의 능력의 허용되는 비교도 아니었던 것이다. 被告들은 이에 대한 사실을 적시함이 없이 그들의 잡지에서 原告를 무조건으로 비방하였다. 被告들이 原告의 레스트쿠보텐 추천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들의 기사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被告들은 根據를 제시함이 없이, 原告가 오래전부터 또한 원고의 레스트쿠보텐 추천과 관계없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競業者를 비방하는 영업자는 競業狀態의 왜곡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根據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된 기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被告들이 원용하고 있는 독자들의 정보이익을 위해서도 이러한 것은 요구되는 것이다.

## II

위 判決에 對한 上告는 認容되지 않았다.

1. 兩當事者가 서로 競業關係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地方法院의 태도는 正當하다. 1審이 확정하고, 또한 上告에 의해서도 다투어지지 아니한 사실에 의하면 兩當事者의 간행물은 同種의 내용 특히 증권정보 및 투자추천을 가지고 동일한 독자층을 상대로 하고 있다.

C 잡지와 마찬가지로 原告의 잡지도 역시 경제전문지로서 C. 페어트라우리히(C. Vertraulich)나 C. 데페세(C. Depesche)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증권거래 및 투자추천에 관한 안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C잡지와 마찬가지로 原告의 잡지가 일반잡지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음에 反하여 증권정보지인 C. 페어트라우리히 및 C. 데페세가 오로지 예약에 의해서만 판매된다고 하는 점은 競業關係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잡지의 판매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兩當事者는 경영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되는 동일한 독자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被告들의 문제된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競業行爲에 해당된다는 地方法院의 견해 역시 아무런 의문이 없다. 문제로 되고 있는 기사는 경험치상 공격받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서 반대편 당사자, 즉 여기에서의 被告들의 판매상태를 有利하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 점도 또한 上告에서 다투어지지 않고 있다.

3. 原告의 희생 위에서 被告들의 영업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관적으로도 문제로 되기 때문에 被告들이 경영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하는 地方法院의 견해에 對한 上告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上告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兩當事者가 競業者의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競爭意思가 있다고 推定될 수는 없다. 競爭狀態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競業者의 능력에 대한 시비는 자기 자신의 영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推定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被告들은 단지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경제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건에 관해서 보도하고 그럼으로써 여론형성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및 意思發表를 보도하고 公衆에게 주지시키는 것은 獨逸基本法 제5조 제1항에 의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기본권에 의해서 憲法的으로 보장된 言論의 임무인 것이다. 이러한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不正競爭防止法의 規定에 의해서 제한되어 질 수는 없는 것이며 위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基本權의 특별한 의미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으로서도 上告는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 물론 被告들의 競業意思는 당사자들이 서로 競業關係에 있다는 것으로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競業者가 영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타인의 희생 위에 자기 자신의营业을 촉진하기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競業意思의 존재를 사실상 推定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아서 생활경험에 일치하는 것

이다. 그러나 本件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상의 推定이 자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件의 문제된 被告들의 기사에 있어서는 言論의 기사가 문제로 되고 이 경우에는 公衆에 대하여 公益에 관한 사건을 보도하고 또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는 言論의 특별한 사명에 비추어서, 관계인들이 競業關係에 있다는 것으로부터 당연히 競業意思의 존재가 推定되어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言論企業이 公益에 관계되는 事件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경우에 競業意思의 개념을 너무 넓게 이해함으로써 의견 및 정보의 자유가 침해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요구되거나 憲法上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까지 公益에 관계되는 事件의 보도를 制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언론보도의 경우에 있어서 競業意思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 요구되며, 이것은 이러한 기사가 競業者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言論으로 하여금 公益에 관한 보도나 여론형성에의 참여를 일반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被告들의 競業意思가 앞에서 본 바의 기준에 따라서 부정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地方法院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被告들은 문제된 기사에서 기준이 되는 根據(예를 들면, 被告들이 訴訟에서 비로소 주장한, 原告에 의한 H. O 및 L. 주식의 평가에 관한 事實들)를 적시하거나 또는 암시하지도 않고 被告들의 잡지와 경쟁관계에 있는 原告의 잡지를 일반적으로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표시하였던 것이다. 公衆에게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公的인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할 의도가 추측되어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被告들의 위 보도가 정신적 또는 경제정책적인 토론에의 참여희망이나 또는 증권계 소식에 흥미를 가지는 거래층에 대한 정확한 보도에의 利益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 것이고, 이 경우에 競業上의 利得은 전혀 작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단지 부수적인 역할만을 하였다고는 바로 단정될 수 없다. 상세한 根據도 제시함이 없이, 公衆에 대하여 競業者를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는 보도를 하는 것은 세계관적인,

정치적인, 經濟的인 또는 문화적인 종류의 언론간의 알력에 기인한 것이거나 또는 소비자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 및 계몽을 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보도가 독자에게 자기 자신의 영업능력(本件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증권정보 및 투자추천)이 競業者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인상을 줄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本件에 있어서 문제로 된 행위가 言論의 보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被告들이 자기 자신의 營業을 촉진시킬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地方法院이 인정한 것은 法的으로 타당한 것이다.

어떠한 행동이 영업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이나를 정함에 있어서는 行爲者의 營業에 관련된 부수적인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동기가 참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地方法院이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競業上 별로 현저하지 않은 동기가 本件에 있어서 존재하였다고 하는 事實審 法院으로서의 확신을 지방법원은 얻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法律上의 잘못은 아니다. 지방법원은 被告들의 競業意思를 兩當事者가 競業者라는 사실만으로부터 인정한 것은 아니다. 즉 그밖에도 地方法院은 被告들이(아마도 전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닐지라도) 原告의 희생하에서 자기들의 營業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E. 슈피겔(E. Spiegel)잡지를 무조건적으로 또한 아무 根據도 없이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표현한 것은 정신적인 의견대립이나 公共의 利益의 유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동일한 독자층을 둘러싼 경쟁에서 被告들의 개인적인 營業이익만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地方法院이 被告들의 本件 보도를 다른 증권정보잡지와와의 경제적인 경쟁에 있어서 독자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해한다면, 문제된 기사의 성질 및 內容 그리고 이에 표현된 경향에 비추어 보아서 法律上의 理由로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4. 문제된 被告들의 기사가 不正競爭防止法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競業에 反하는 것이라고 하는 지방법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法的인 根

據에 있어서도 역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러한 보도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것이 가치 판단이나 또는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事實上의 주장이나에 대한 판단을 지방법원이 하지 않은 것은 法律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被告들이 이러한 보도를 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만일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실상의 主張이 문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증지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증권잡지나 또는 이러한 종류의 잡지의 발행에 종사하는 기업을 믿을 만하지 못하고 보도하는 기사는 그들의 영업상 활동의 신용을 떨어뜨리고 또한 그들의 존속 및 신뢰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가 사실상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기사의 배포에는 하등의 보호받을 利益이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로 된 기사가 진실에 부합하는 主張에 관련된 것이거나 또는 사실에 관련된 의견진술(예를 들면 本件에 있어서 피고들이 소송과정에서 비로소 주장한 原告의 H.O. 및 L. 주식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사건)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地方法院이 被告들의 행위를 競業에 反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어떠한 事實이 진실이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言論으로 하여금 경쟁자의 신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의견상의 차이에 기해서 관심있는 독자의 계몽을 위하여 競爭紙의 보도 및 견해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이 言論機關에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言論機關은 서술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요구되는 점들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논쟁의 근거가 되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인용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被告들의 本件 행위는 不正競爭防止法上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地方法院이 確정한 事實에 의하면 被告들은 原告의 잡지를 곧바로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였고 더우기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또한 被告들이 문제된 기사에서 취급한 原告의 레스트쿠보텐 추천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비방기사는 原告의 大銀

行 레스트쿠보텐에 대한 평가에 관한 독자들의 객관적인 判斷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原告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위 비방기사는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原告가 전적으로 또는 적어도 레스트쿠보텐 추천에 관련해서는 신뢰성이 전혀 없다고 보도함으로써 原告의 잡지를 전면적으로 각아내린 것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법원이 被告들의 문제된 기사를 原告의 잡지, 즉 원고 자신을 부당하게 각아내린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러한 행위는 이로 인해서 표현된 비판이 근거되는 사정을 정확히 알고 한 것인 경우에는 허용되는 경우에도 不正競爭防止法上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에는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인정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地方法院이 被告들의 행위를 不正競爭防止法의 입장에서 판단한 것은 獨逸基本法 제5조 제1항에 基한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基本權과 서로 모순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被告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결과로 되고 또한 이러한 基本權을 이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문제된 기사가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태도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의 보도에 종속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上告는 이유없는 것이다. 사실 公的인 言論批判이 事實에 의해서 증명되거나 또는 평균적인 독자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獨逸憲法裁判所 및 獨逸聯邦大法院의 判例에 의하더라도, 獨逸基本法 제5조 제1항의 근거하는 의견의 자유의 基本概念 및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은 것이다(VerfG NJW 1976, 1690, 1681, :BGH LM GG Art. 5 Nr. 36=GRUR 1975, 208, 210=NJW 1974, 1762, 1763).

그러나 이와 같은 上告論旨는, 앞서 본 判例들이 정치적·정신적인 토론에 기여하는 언론보도나 公共의 利益에 관한 事件에 관계되는 경우 이었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또한 이해관계인의 계몽에도 기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비방에만 관계되는 경우가 아닌 것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5. 따라서 被告의 本件 上告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棄却되어져야만 했다. □

### 사진의 不法使用에 대한 使用料

함부르크 고등법원, 1982. 4. 8자 判決  
- 3U 36/81사건 -

#### 適用法條

조형예술 및 寫眞作品에 대한 著作權法 제22조 및 獨逸民法 제812조

#### 判決要旨

1. ARD 텔레비전 방송국의 뉴스담당 아나운서의 모습이 위 프로를 규칙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方法으로 어떤 廣告寫眞에 게재되었다면 위 아나운서의 초상권은 침해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肖像權의 不法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被侵害者에게는 不當利得을 根據로 해서 상당한 使用料請求權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被侵害者가 그의 人格權을 스스로 이용하려 했는지 또는 나아가 사실상 이용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問題가 되지 아니한다.

#### 事實概要

原告는 뉴스담당의 수석아나운서이다. 原告는 가구시설업자인 被告에 대하여 자기의 肖像을 廣告目的으로 不法하게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서 使用料를 청구하였고, 이와 함께 被告에 대한 독촉절차에 있어서의 辯護士費用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請求의 근본은 다음과 같은 事實關係에 基한 것이다.

被告는 1980년 8월 8일 일간지인 「A」, 「B」 및 「X」신문에 W라는 도시에서 그의 새로운 점포를 개점하는 내용의 大型廣告를 게재하였다.

위 광고는 4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떤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아나운서의 모

습이 담긴 텔레비전그림으로 되어 있었다. 그 기사의 내용이 그 그림 밑에 씌어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T라는 상호의 被告의 가구점 개점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었다.

「Nordrhein-Westfalen 州에 바캉스물결이 지나간 다음 이제 새로운 물결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W市에 새로운 Witnahme가구점이 개점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끝맺음을 하고 있다. 「끝으로(Zum Aufschluss) 일기예보(W...äh... Wetterkarte)입니다. Mitnahme가구점 애호가들에 대해서는 안정된 고기압이 지배적입니다. 가격은 안락하게 따뜻하거나 호의적입니다. 기타의 전망은 최상입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그 아나운서는 W라는 地名을 본따서 4개의 잘못된 발음을 하고 있다. 즉 「Mitnahme-Möbelhaus」 대신에 「Witnahme-Möbelhaus」 또는 「Mitnahme-Wöbelhaus」라고 하고 「Wetterkarte」 대신에 「W...äh...」라고 하였으며 「Zum Anschluss」 대신에 「Zum Anfschluss」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장의 그림 중 첫번째 그림에는(아나운서에 의하여 일부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 뒷면에 「Trendschau」라는 단어가 있고, 마지막 그림에는 「Wetter-Trends」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다.

原告는 피고가 사용한 위 그림은 원고 자신의 肖像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原告의 肖像權을 침해함으로써 인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使用料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主張한다. 위 사용료로서 原告는 1만2천 마르크를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광고가 50만장이나 인쇄되어 배

포되었고, 또한 原告가 억지로 꾸며서·발음을 잘못된 것 같이 함으로써 原告의 인상이 독자에게 특히 강하게 남은 점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격권의 侵害로 인하여 原告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中止의 意思表示를 被告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 독촉절차에 있어서의 1174.16마르크의 변호사비용도 역시 피고가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地方法院은 原告의 請求를 기각하였다. 이에 反하여 抗訴審은 그 일부에 있어서 이유있는 것으로 判決하였다.

### 判決理由

原告의 抗訴는 適法하고 또한 그 一部分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다.

原告는 피고에 대하여 그 肖像의 사용료의 청구권 및 독촉절차에 있어서의 변호사비용의 청구권을 가진다.

1. 地方法院이 취했던 견해와는 반대로 피고는 그의 광고를 통해서 「조형예술 및 사진작품에 대한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라서 原告의 肖像權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위 광고에 나타난 그림을 보면, 위 ARD 텔레비전 방송국의 저녁뉴스시간을 규칙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는 틀림없이 위 그림이 원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 얼굴의 생김새라든가, 기타 위 그림에서 나타난 여러가지의 특색 및 그 씌어진 문구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이에 대하여 BGH NJW 1979, 2205 판결 참조).

① 아나운서가 혼자서 방송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4대의 텔레비전의 그림, 일기에보의 그림이나 또한 마지막 그림에서 일기의 動向(Wettertrends)이라는 문구의 사용, 첫번째 그림에서의 「Trendschau」라는 표현, 그리고 「Nordrhein-Westfalen에 휴가의 물결이 지나간 후에...」, 「방금 들어온 새로운 보고에 의하면...」, 「끝으로 일기에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의 표현들은 모두 텔레비전을 정기적으로 시청해 온 시청자들에게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뉴스시간」에 방송된 내용과 비슷하다는 분명한 聯想

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② 위 아나운서의 그림은, 여러가지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대중들에 대해서 위 방송국의 뉴스담당 아나운서로 알려진 원고에게 있어서 특징적인 여러가지의 특색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머리모양이라든가, 우뚝 솟은 코, 눈의 모양 등은 모두 別紙 1에 게재된 원고의 肖像畫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 광고그림을 잠시라도 본, 그러나 「조형예술 및 사진작품에 관한 저작권법」 제22條의 의미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의깊은 시청자라면, 그곳에 나타난 아나운서의 모습이 바로 原告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原告가 요즈음은 텔레비전의 뉴스프로에 나올 때에 안경을 끼고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거의 웃지 않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일반대중은 이미 오랫동안 原告가 안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리고 일반대중은 原告가 한번 웃었다고 해서 더군다나 원고가 유명한, 판매부수가 많은 텔레비전 방송프로 잡지의 표지에서 웃는 사람으로 한번 묘사되었다고 해서 이를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위 廣告에서 표현된 사람이 여러번 발음을 잘못했다고 해도 이는 별문제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지하기로 이름난 뉴스방송의 아나운서라 할지라도 광고의 목적으로 제작된 그림에 있어서는 위 廣告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웃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번 발음을 잘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일반대중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리고 被告의 要請에 의해서 발행된 이 사건 그림들은 「조형예술 및 사진작품에 관한 저작권법」 제22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사진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진의 개념을 정함에 있어서는 地方法院의 견해와는 반대로 피묘사자를 광고에 使用하려고 하는 被告의 主觀的인 의사는 문제로 되지 않는 것이다. 地方法院이 BGH NJW 1965, 2148 「Spielgefährtin」事件 判決에 따라서 채택한 이러한 사진개념의 주관적인 요소는 BGH NJW 1979, 2205 判決에 의해서 明文표기되었던 것이다. 의 後者의 判決에 따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法 第22條의 規範目的은 人格權을 본인의 의사에 反해서 그

림의 형식으로 임의로 처분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의 보호를 묘사자(즉 침해자)의 主權의 意思에 종속시키는 것(즉 그의 主觀的 意思에 따라 그 보호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本件 그림은 違法한 것이었다. 그리고 위 그림에 대한 原告의 同意도 없었다. 被告는 위 法 第23條의 例外에 해당되는 규정을 원용할 수도 없다. 原告는 뉴스프로의 이름난 아나운서임에 틀림이 없고 또한 당 시대의 유명인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는 他人이 그의 그림을 그의 意思에 反해서 어떤 상품의 선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認容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BGHZ 20, 345ff, 352-Paul Dahlke; BGH NJW 1979, 2205, 2206; BGH GRUR 1979, 425ff, 427 추극선수의 各 判決 참조).

2. 이와 같이 原告의 肖像權이 不法하게 侵害되었기 때문에 原告는 상당한 액수의 使用料 상당액수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請求權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承認된 바와 같이 不當利得을 이유로 해서 認定되는 것이다(侵害로 인한 利得返還請求權: BGHZ 20, 345ff, 345ff-Paul Dahlke; Senatsurteil in; Schulze OLGZ, 113; Lieb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1980 §812Anm. 225ff; Staudinger Lorenz, BGB 12, Aufl., §812Anm. 29, jeweils m.w.N.). 이러한 請求權은, 原告의 NDR 텔레비전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해서 원고의 모든 영업적인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는 이와 같이 주장하고, 原告는 이를 否認하고 있는 바이지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1) 압도적인 通說에 의하면, 피해자에 있어서의 財産의 減少를 전보하는 것은 침해로 인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Lorenz, Schuldrecht 各論 12 Aufl. S. 533; Staudinger-Lorenz, a.a.o. §812Anm. 24, jeweils m.w.N.-anders noch BGHZ 26, 349ff, 353-Herrenreiter).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목적은 오히려 侵害者에게 귀속해서는 아니될 財産上의 增加를 없애는 것이다(BGHZ 20, 345ff, 354ff-Paul Dahlke

; BGH NJW 1981, 2402ff, 2403).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被害者가 그의 人格權을 스스로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나아가서 사실상 그 人格權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않는 것이다(Staudinger-Lorenz, a.a.O. §818Anm. 29; Schlechtriem, 2. Festschr. für Hefermehl, 1976 S. 445ff, 463).

따라서 原告의 肖像을 가지고 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原告에게 부과된 계약상의 의무는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不當利得에 基한 반환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2) 이에 反해서 위와 같은 견해가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當 法院도 역시 1971년 9월 9일자 判決(Schulze OLGZ 113에 수록)에서, 被害者가 그의 초상을 상당한 대가를 받고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사실상 不可能한 때에는 그의 초상을 불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한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判示한 바가 있다.

위 경우에 當院은 獨逸聯邦大法院의 Herrenreiter 判決(BGHZ 26, 349ff, 352)을 引用하였었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本件에서는 문제로 되지 아니한 不法行爲에 기한 청구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同旨 BGHZ 30, 7ff, 8-Catarina Valente BGHZ 35, 363ff-Ginseng).

어쨌든 獨逸聯邦大法院이 Herrenreiter 判決에서, 原告가 그의 초상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을 이유로 해서 財産上의 不利益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하여 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의 차원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a.a.O.S. 353/354). 부당이득반환채권자가 그 채무자에게 財貨의 利用을 有償으로 허가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적으로 중요시하는, 최근에 Lieb에 의해서 발전된 이론(Münchener Kommentar zum BGB, §812Anm. 214, 215)도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하여서도, 被告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原告가 그의 肖像을 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고 하는 고용계약상의 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인용된 判決들은 초상권을 침해당한 者는 사물의 도리상 어떤 경우에라도 그의 초상을 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Lieb는 侵害된 法益이 객관적으로 보아서, 추상적·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利用이나 換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人格權이 이용가능성 또는 환가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客觀的인 法에 따른 法律的인 성격,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法益保有者의 意思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法益保有者가 제3자와의 사이에서 가지는 구속력은 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獨逸民法 제137조에 化體된 法律思想은 위에 말한 것 이외의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다. 즉 위 法條文은, 부당이득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行使하지 않기로 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第三者 즉 本件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채무자가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利用으로 인한 이득의 액수는 當 法院이 獨逸民事訴訟法 제287조 제2항에 따라 자유로운 心證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명한 TV텔레트리가 그의 이름 및 肖像을 1회 허가없이 어느 지방의 광고란에 게재된 것으로 인하여 1천 마르크를 받았고, 또한 W는 그의 이름 및 사진이 수개월에 걸친 광고캠페인에서 사용됨으로 인하여 1만 마르크를 받은 일이 있다고 被告가 認定한 사실들을 고려해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독일 국가대표축구팀의 주장을 했던 유명한 축구선수의 사진을 운동복에 허가없이 사용했던 것을 이유로 해서 그 선수에게 4천 마르크의 배상을 하도록 했던 뮌헨고등법원의 판결(AfP 1976.103) 및 M이라는 女歌手의 이름을 전국적인 일간지에 그의 승낙없이 배포한 것을 이유로 해서 그녀에게 5천 마르크의 배상을 認定했던 當院의 判決(3U 178/71) 등은 모두 앞에서 말한 것과 그 軌를 같이 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여러 判例들에 비추어서 보면 本件에 있어서 原告가 요구하는 1만2천 마르크의 使用料는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된다.

原告가 독일에 있어서 독일텔레비전 방송계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의 廣告의인 측면에 있어서의 가치는 축구선수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本件에 있어서는 被告는 原告의 사진을 지역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하였으며, 또한 原告의 모습을 약간은 변형해서 이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본래의 모습을 약간 변형시킨 것이 獨逸民法 제812조의 관점에서 個人의 人格權을 특별히 강하게 侵害한 것으로 더 많은 使用料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고찰방법은 人格權의 侵害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요소와 本件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서, 이는 人格權의 侵害의 경우에, 獨逸民法 제823조 및 제847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게 되는 「侵害」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경감시키는 결과로 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當院은 원고에 대해서 使用料로서 4천 마르크를 認定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함부르크의 地方法院이 原告의 사진이 변형되지 않은 형태로 고객들을 위한 잡지에 실린 것을 이유로 原告에게 8천 마르크를 認容했던 判決(74 O 190/76)은 當院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위 判決은 또한 위 액수에 상응하는 原告의 市場價値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原告는 위와 같은 事實들을 주장하거나 立證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을 求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4. 原告의 나머지의 청구는 역시 人格權의 侵害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점으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청구권은 단지 人格權이 현저히 侵害된 경우에만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이다(BGH, NJW 1971, 689ff).

本件에 있어서는 이러한 청구권은 문제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本件에 있어서 原告의 그

림이 약간 만화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는 성격은 그 방식이나 서술에 있어서 흔히 보이는 광고 삽화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本件에 있어서 原告는 그가 그의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느꼈거나, 또는 本광고가 어떤 면에 있어서든지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5. 또한 原告에게는 독촉절차에서 소요된 변호사비용의 상환청구가 허용된다.

## 訂正報道請求權을 行使하였다 하여 取消請求權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뉘른베르크 / 휘르스지방법원 1983. 5. 26자 判決  
- 4D 2547/83事件 -

### 參照條文

獨逸民法 第823, 第824條

### 判決要旨

1. 객관적으로 보아 虛僞인 주장에 대한 取消請求權은 訂正報道文의 게재를 승낙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消滅되지 아니한다.

2. 신문의 보도에 의해서 명예나 信用이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해진 폭로의 否定的인 효과가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다고 推定된다(따라서 反證으로 다룰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

### 事實概要

第1原告는 N.N日刊紙의 발행인이고, 第2原

告의 광고행위는 원고 자신의 초상권에 대한 不法한 侵害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독촉절차를 통해서 原告가 더 이상의 權利侵害行爲를 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것은 확립된 判例에 의하면 原告의 추정적인 利益 및 意思에 합치하는 것이다(BGHZ 52, 393-Fotowettbewerb 사건). 獨逸民法 제683조 제1문 및 제670조의 규정에 따라서 原告는, 그 상황하에서 필요불가결하였던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바, 위 비용에는 변호사 비용도 역시 포함되는 것이다. □

告는 K스포츠잡지의 발행인이다. 제1피고는 R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제2피고는 위 잡지의 責任編輯인이다. 1983년 3월 27일자 R잡지 第10號에는 그 표지에 「WS」라고 표시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바, 그 제목으로는 「N.N과 K는 R잡지에 대하여 사과하였다」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이 기사는 第2被告가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기사는 R잡지의 제9호에 『獨占이 理想主義에 대항해 싸우고 있다』라는 제하에 게재된 기사가 발단이 되어 발생한 당사자간의 분쟁(그 일부는 법정분쟁으로까지 발전되었다)에 관련하여 게재된 것이었다. 위 기사가 게재된 즉시 第1原告는 그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被告들에 대하여 위 기사의 게재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그 다음호인 R잡지의 제10호에 本件에서 原告들이 다루고 있는 위 제목하에 게재된 本件記事가 발표되었던 것이었다. 原告들은 被告들에 대하여 그들을 연대채무자

로 하여 『N.N. 및 K는 R에게 사과하였다』라는 제목의 취소를 求하고 있다.

原告들은 위 취소신청의 근거로서 제1원고 및 제2원고에 의해서 발행되는 신문들이 R에게 사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反하여 허위라는 것이다. 즉 原告들은 한편으로는 被告들의 위와 같은 허위의 主張으로 인하여 이미 설립되고 수행된 원고들의 영업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허위의 主張은 惡意의 誹謗의 構成要件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原告들은 被告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取消請求權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原告들은, 被告들을 연대책무자로 하여 첫째, 1983년 3월 27일자 R잡지 제10호에 게재된 『N.N.과 K는 R에게 사과하였다』라는 주장이 허위로서 明示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둘째, 위 취소의 意思表示를 첨부된 별지의 활자 크기에 맞추어서 R잡지의 다음호의 表紙에 게재하여야 한다는 判決을 하여줄 것을 申請하였다.

이에 대하여 被告들은 이미 1983년 3월 31일 가치분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위 가치분에 의하여 被告들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N.N. 및 K는 R에게 사과하였다』라는 주장을 게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陳述하였다. 그리고 被告들은 현재까지의 假處分の 決定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原告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들의 訂正報道文을 게재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反하여 原告들의 취소신청은 위 申請의 목적이 침해하는 狀態의 除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損害의 賠償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 取消申請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리고 또한 원고들은 1983년 3월 31일자 假處분에 의해서 이미 그들의 中止請求權을 行使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 基해서도 原告들에게는 權利保護의 要件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서 피고들은 위와 같이 게재된 本件 主張에 의해서 原告들의 영업이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事實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위 게재된 主張은 단지 一回에 걸쳐서 侵害를 하였을 따름이고 더 이상은 게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侵害는 더 이상 계속적

으로 행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判決理由

本訴는 適法할 뿐만 아니라 本案에 있어서도 그 이유가 있다.

1. (1) 本訴에 있어서는 필요한 權利保護의 要件이 存在한다.

原告들의 權利保護의 이익은, 原告들이 1983년 3월 31일자 假處분에 의해서 『N.N. 및 K가 R에게 사과를 하였다』라는 主張에 關係해서 피고들에 대한 中止請求權을 行使하였다고 해서 이로써 소멸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더 이상 발표할 의사가 없고 또 原告들의 요청이 있으면 原告들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權利保護의 利益이 否定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中止請求權은 장애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의 현저한 侵害의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反하여, 眞實에 反하는 事實上的 主張의 取消에 의해서 이미 발생하고 또한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侵害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反하여 眞實에 反하는 事實上的 主張의 取消에 의해서 이미 발생하고 또한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侵害의 제거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中止請求權과 取消請求權은 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中止請求權의 경우에 예방청구권이 문제로 됨에 反하여 取消請求權의 경우에는 除去請求權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그리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同一한 事案에 關係해서 假處分の 방법에 의해서 中止請求權을 주장하고 또한 行使하였다고 해서, 이로써 取消의 訴에 關係된 權利保護의 要件이 결코 소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被告들이 原告들의 요구가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사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에도 이로써 權利保護의 利益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즉 除去請求權으로서 事實상 주장의 取消請求權은 그 문제된 진술이 眞實에 反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성립될 수 있음에 反하여, 訂正報道請求權

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실의 眞實여부와는 상관없이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訂正報道請求權은 그 요건의 점에 있어서나 또는 나아가 독자들에 대한 그 효과의 점에 있어서나 모두 取消請求權에 비하여 덜 강력한 請求權으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正當한 權利를 가진 者는 문제된 主張이 객관적으로 보아 眞實에 反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으로 만족할 필요는 없고 원칙적으로 取消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件에 있어서 取消請求權의 訴에 對한 權利保護의 要件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하등의 의문도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2) 本件 訴는 本案에 關하여도 그 이유가 있다.

原告들은 『N.N.과 K는 R에게 사과했다』라는 제목하에 게재된 주장은 眞實에 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原告의 위 主張은 被告가 이를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다툼이 없는 사실로까지 인정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本件에서 문제로 된 게재된 主張이 단지 1회의 침해에 그쳤고 더우기 이와 같은 주장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고 하는 피고들의 主張 그 자체에서 이미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被告들이 R잡지 제10호에 게재하고 인용한 주장은 객관적으로 眞實에 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眞實에 反하는 주장 및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의문의 여지없이 추론할 수 있는 원고들을 해치는 폭로의 효과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부정적으로 作用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關係人의 명예나 신용이 言論機關의 보도에 의해서 침해된 때에 있어서는 이미 行해진 公的인 폭로의 부정적인 효과가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다고 하는(반복될 수 있는)推定이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BGH in GRUR69, 236ff, zu 2b.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推定을 被告들은 반박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러한 반박을 시도하지도 아니하였다.

끝으로, 原告들이 구하는 取消가 현존하는 侵害狀態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써 正當치 못한 目的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을 被告들이 주장하지도 않았고, 또한 객관적으로 분명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本訴에서 주장되는 취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음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

誹謗禁止에 대한 違反

Hamburg 高等法院 1983. 10. 10자 決定  
- 3W 122/83사건 -

適用法條

Hamburg州 言論法 第11條 3項

判示事項

출판사가 訂正報道文의 앞부분에 원래기사의

제목을 게재하였는 바, 위 원래기사의 제목이 구체적인 관계에서 판단해 보면 정정보도신청인 개인 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불리한 가치판단을 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즉 정정보도문의 앞에 원래기사의 제목을 게재하는 것)은 Hamburg州 言論法 제11조 제3항의 정정보도문에 대한 비방금지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事實概要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집행절차에 있어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執行力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을 재차 주장하였다. 즉 왜냐하면, 요구된 정정보도문이 게재되기는 하였지만, 위 게재에 있어서 첫번째 기사의 제목을 다시 게재함으로 인하여 정정보도문의 효력이 감퇴되어 버렸다. 그리고, 위 제목에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왔기 때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할 채무자가 비방금지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정정보도신청인이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第1審인 地方法院은 정정보도신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신청인은 即時抗告를 제기하였다.

決定理由

獨逸民事訴訟法 제793조의 규정에 따라서 本件 即時抗告는 適法하고 또한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當院에 의해서 취소된 地方法院의 決定의 견해와는 반대로, 채무자는 Hamburg 地方法院의 假處分決定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부과된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채무자가 발간하는 「S」잡지의 35권에 채권자에 의해서 작성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를 적법하게 履行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獨逸民事訴訟法 제8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다시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Hamburg 州 言論法 第11條 第3項 第1文의 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문은 이에 다른 말을 삽입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일부라도 삭제함이 없이 그대로 게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言論社는 위 法 第11條 第3項 第4文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정정보도문이 게재되는 號와 동일한 前註나 또는 後註를 붙임으로써 그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事實上的 陳述」에 국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즉 가치판

단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판단은 그 이후의 號에 있어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Löffler, presserecht 1968, Bd. II, §11 Anm. 135, § 22 Anm.53, Lö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1978. 27. Kapitel, Anm. &, S, 126 : Seitz/Schmidt/Schöner,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1980, Anm.225/236).

그런데 債務者는, 채무자가 발간하는 「S」잡지의 제35권에 인쇄된 정정보도문에 있어서, 위 정정보도문의 앞 부분에, 채권자를 해하는 또는 적어도 채권자를 비방하거나 나아가서 위신을 실추시키는 결과로 되는 『유쾌해 하는 어리석은 者』라는 제목을 기재해 넣음으로써, 소위 비방금지의 조항에 위배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독자의 견지에서 보면 첫번째의 기사에서 취급된 사건을 요약하고 채권자를 헐뜯는 평가와 이와 동시에 채권자의 정정보도문에 대한 不法한 비방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위 제목은 첫번째의 보도에 있어서 채권자가 진술하였다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자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기초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제목은 따로 독립하여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즉 앞뒤의 내용이 모두 빠진 채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나 또는 채권자와 同一한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의 성격을 규정해 버리는 결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제목이 정정보도문에 관해서 使用되게 되면 그 근본적으로 내부적인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독자나 또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은 效果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제목은 평균적인 독자들에게 대하여 정정보도신청인을 비꼬아서 그 체면을 손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쾌해 하는 어리석은 者』라는 제목은 첫번째 보도의 제목으로서 정정보도문과의 내용적인 연결작용만을 하고 있다고 하는 地方法院의 견해에 當院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하여 첫번째 보도의 제목이 타인을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은 정정보도청구의 기능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인쇄기술적으로 특별히 눈에 띄게 정정보도문에 앞서서 인쇄한,

위 첫번째 기사제목의 반복은 그 성격상으로 보아서, 채권자를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議會會議報道에 있어서 「眞實에 부합하는」것의 意味

Karlsruhe 高等法院 1984. 2. 3자 決定 - 13W 20/84事件 -

參照條文

Baden-Württemberg 州 言論法 第11條 第5項

判示要旨

1. 州言論法 제11조 제5항의 의미에 있어서의 公的인 集會에 관한 보도는 완전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그 보도가 공개되지 아니한 회의 주제에 관계되는 것일 때에는 그 本質的인 點에 있어서는 完全하고 正當한 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어떤 표결에 참여한 정치단체를 나열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정당의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회의에 관한 보도는 州言論法 제5조의 의미에 있어서 진실에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事實概要

신청인은 F市的 지방회의의 공적 회의에 관한 기사와 관련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청하고 있다. 위 정정보도문은 위 F市的 예산확정에 있어서 소위 군소정당들이 참여하였음을 보충적

로 언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는 社民黨, 自民黨, 綠色黨 및 基民黨만이 言及되어 있었다. 그러나 被申請인은 그의 견해에 의하면 公的인 의회에 관한 진실에 부합하는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反하여 정정보도신청인은 정정보도신청인에 관하여는 위 기사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決定理由

정정보도신청인은 B신문의 지방판의 책임편집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위 기사는 F市的 지방회의의 公的인 집회에 관한 보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회의에 관한 보도는 州言論法 제11조 제5항의 의미에 있어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정정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보도자는 이러한 종류의 기사를 어느 범위에서 보도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유로운 재량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그 보도가 반드시 完全할 필요도 없는